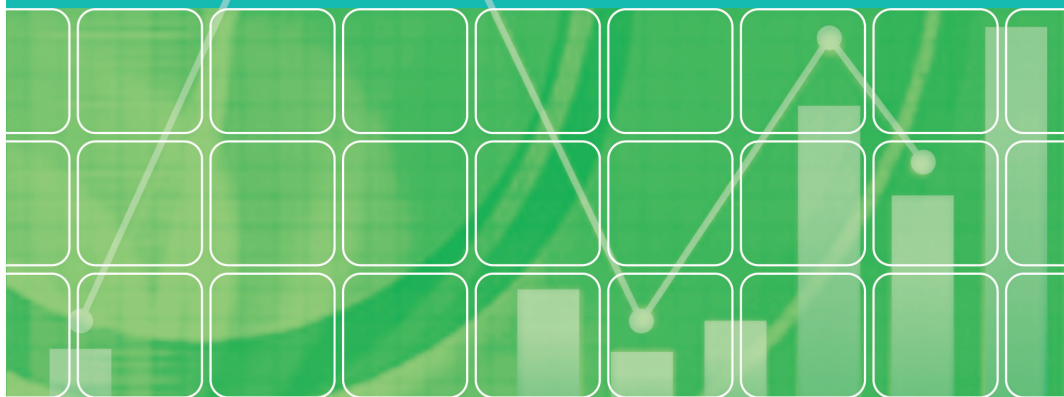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2012. 3

라영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2012. 3

라영재

서 언

1990년대 이전까지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생산요소의 투입을 강조하여 외자 유치와 산업시설 확충을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생각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의 정책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자본과 노동력 같은 단순한 생산요소의 투입보다는 사회와 문화적 요인이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정책에서 사회와 문화적 요인들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박준(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27%를 사회갈등비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더 높아지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근로환경이 더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GDP가 20% 이상 향상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도 단순한 자본과 노동의 투입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행위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부부처별로 정책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정부부처가 정책적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용에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의 예산배분과 공공기관의 관리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해당 공공기관도 사회적 자본의 육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정부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 2010년 ‘공정한 사회’, 2011년 ‘공생발전’ 등을 후반기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 정부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으로 불리는 ISO 26000이 2010년 11월에 발표되면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도 단순히 경제적·산업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관의 역량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련된 민간기업과 함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도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즉 공공성의 강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스스로도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종종 이해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도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객이나 국민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이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은 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간기업보다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위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의 국제적인 추세와 이론적 배경을 분석한 다음 ISO 26000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측정을 시도하였고, 공공기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연구 주제로 확장하는 데 자문과 심사를 기꺼이 맡아 주신 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조택 교수, 고려대 조은경 교수, 익명의 평가자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에 성실하게 응답해 준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설문 조사지를 제공해주신 한국표준협회·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인터뷰에 응해주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공운수노조, 전국건설노조, 함께하는시민행동, 여성민우회, 박선숙 의원, 이종걸 의원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 하태욱 연구원과, 인터뷰 정리 및 교정을 도와 준 홍영주 인턴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기하는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제언들은 연구자의 개인적·학문적 소신과 학술적 분석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2012년 3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배경

공공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정, 지배구조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시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제적, 정책적 역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2011년 10월 발표되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ISO 26000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제시된 항목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라영재·윤테범(2010)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정의, 이론적 논의, 국제적 추세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계를 대상으로 한 총론적 성격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거나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ISO 26000 이행수준을

파악하고 적용이 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2. 국제적 추세와 이론적 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유럽에서 노동자의 소외와 사회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투자기관과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각 국가마다 경제 및 재정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오래전부터 각 시마다 국제 사회에서 문제화된 인권·노동·보건·안전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규범화를 시도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주요한 요소들이 통합되는 추세이다. UN Global Compact, GRI, ISO 26000에서는 그간 논의되고 발전시켜 온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NGO), 비영리단체(NPO)의 사회적 책임의 요소들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키고 통합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 경영은 국제적 관심만이 아니라 이론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rundtland(1985)과 Elkington(2006)은 기업의 경제적 개선과 사회적 책임, 환경적 보전이 균형을 갖도록 하는 ‘Triple bottom line’은 기업의 경쟁적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pstein(2008)은 ① 윤리 성과, ② 지배구조, ③ 투명성, ④ 공급망 관계, ⑤ 재무적 이익, ⑥ 지역공동체 기여, ⑦ 생산과 서비스의 가치추구, ⑧ 종업원 관계, ⑨ 환경 보호 등 9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pstein & Birchard(1999)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하려면 지배 구조·성과측정·보고·경영시스템의 4가지 요소에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라영재·윤태범(2010)은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를 작은 범주에서 주무부처나 예산부처만을 상정하는 경영, 즉 수직적 책무성만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환경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공공기관 존립의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erther & Chandler(2009)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즉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① 사회적 책임 활동 관점, ② 핵심 과제로 수행, ③ 이해관계자 관점, 장기에서 중단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egel et al.(2007)과 Epstein(2008)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은 이론적·경험적 근거로서 'Triple bottom line'인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따른다고 분석했다. Epstein(2008)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였다.

3.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공공기관 전체 평균은 82.88%로 나왔는데 이 수준의 의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관 구성원의 인식 수준이 높으며, 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관 활동의 전 단계에 사회적 책임 활동이 통합 운영되어 성과관리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여 시장형 공기업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타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시장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에 민감하고 정부의 사업을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낮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핵심 주제 중에서도 노동이나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는 점수가 높았지만 환경의 점수는 유독 낮게 나왔다. 이는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목표인 녹색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가 낮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조사결과이다. 특히 프로세스 진단결과를 보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으나 개선·검증·의사소통·실행 등이 공공기관의 경영에 내재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그 사회적 책임경영의 성과도 환경·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인권 부문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특징적이다.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른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조직 규모가 클수록 높은 득점률을 보였고 조직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규모에 따라 득점률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모델 개발 시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 결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건설업’ 등의 충족률이 90점 이상

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80점 이하로 낮게 나왔다. 2010년 발표한 국제적으로 상위 20개 산업부문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CorporateRegister.com 참조; 라영재 외, 2010 재인용)을 보면 전기·화학·은행·운송·광업·석유가스·건설건축 순인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산업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무부처별 공공기관의 이행수준 분석결과를 보면,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의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는 각각 ‘공정운영 관행’과 ‘소비자 이슈’, ‘인권’, ‘노동’ 지표와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이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의 중요한 공공기관에서의 응답률이 낮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앞서 이루어진 ISO 26000 이행수준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측정하여 공공기관의 유형·규모·산업 분류에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공공기관 유형과 조직 규모에 따라 달성 가능한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의 적용모델을

제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 대표성 있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선정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공공기관 개별적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주요 요인 또는 동기로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는 데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기관장의 잦은 교체, 인력·예산상의 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소관 정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추진과 의지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 3사인 SKT, KT, LG U+ 등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의 수준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지속가능경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통신회사들에 대해 산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횟수나 기부금액 등만을 물어보기보다는 전사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을 조사하고 권장,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 조사 결과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기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력사와의 인권을 실사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계약조건에 넣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그러므로 공운법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8월 1일 이종걸 국회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운법 제48조에 공공성을 측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이보다는 제15조 제1항의 경영혁신을 지속가능경영으로 바꾸고,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2항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추가하는 입법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것이 PSO(public service obligation)와 공공재 요금과 같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의 손실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업 성격이 국가 정책적으로 재정 확보가 목적이거나 국방과 같이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경영진의 대리인 행위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직접 통제와 경영진의 자율적 책임경영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사업적 수익성 추구하고 수단적 가치로서의 경영효율화에만 집중하도록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율적 책임경영 모델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지속가능경영을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보듯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영리조직까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게 경제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하도록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공기관 법·제도 중에서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통합적·균형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공운법에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정사회추진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가 균형적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상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항목의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에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25
II.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이론적 논의	29
1. 국제적 추세	29
가. GRI	30
나. Global Compact	34
다. DJSI	38
라. ISO 26000	42
2. 지속가능경영의 원칙	43
가. 지속가능경영의 접근법	43
나. 지속가능경영 모델	57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 수준	68
1. 공공기관의 특성	68
2.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 분석	73
가. ISO 26000 개요	73
나. 조사 설계	78
다.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 분석	87
3. 소결	191

IV.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193
1. 조사 배경과 면접 조사의 설계	193
2. 공공기관 면접 조사 결과	195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195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196
다. 한국조폐공사	199
라. 한국예탁결제원	202
마. 한국광해관리공단	205
3. 민간기업 면접 조사	207
가. SKT	207
나. KT	209
4.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211
가. 공공운수노동조합	211
나. 전국건설노동조합	217
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19
라. 한국여성민우회	223
마. 중소기업연구원	226
바. 국회의원(1)	228
사. 국회의원(2)	229
5. 소결	231
V. 공공기관 경영의 통합적 접근	235
1.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현황과 단계별 추진	235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39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242
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49

라.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251
2.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통합 모델	255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258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259
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개선	265
라.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정책 방향	269
VII. 결 론	271
참고문헌	273
〈부록 1〉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77
〈부록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	348

표 목 차

〈표 II-1〉 UN Global Compact의 10개 원칙	35
〈표 II-2〉 DSJI Korea 평가항목	40
〈표 II-3〉 지속가능성 성과 원칙	44
〈표 II-4〉 지속가능성을 위한 BSC 접근	54
〈표 II-5〉 지속가능경영 내·외부 프로그램	64
〈표 II-6〉 지속가능경영의 성공조치	65
〈표 II-7〉 지속가능경영의 성공요인	67
〈표 III-1〉 ISO 26000의 핵심 주제와 쟁점	76
〈표 III-2〉 ISO 26000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설문 문항과의 관계 - 프로세스	81
〈표 III-3〉 ISO 26000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설문 문항과의 관계 - 성과	82
〈표 III-4〉 ISO 26000 이행수준 미응답 공공기관	85
〈표 III-5〉 공공기관 유형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89
〈표 III-6〉 공공기관 규모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90
〈표 III-7〉 공공기관 산업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91
〈표 III-8〉 공공기관 주무부처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94
〈표 III-9〉 공공기관 유형별 프로세스 충족률	97
〈표 III-10〉 공공기관 규모별 프로세스 충족률	99
〈표 III-11〉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인식 충족률	101
〈표 III-12〉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충족률 ..	102
〈표 III-13〉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충족률 ..	103

〈표 III-14〉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총족률	104
〈표 III-15〉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실행 총족률	105
〈표 III-16〉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의사소통 총족률	106
〈표 III-17〉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검증 총족률	107
〈표 III-18〉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개선 총족률	108
〈표 III-19〉 공공기관 유형별 조직 거버넌스 총족률	109
〈표 III-20〉 공공기관 규모별 조직 거버넌스 총족률	109
〈표 III-21〉 공공기관 산업별 조직 거버넌스 총족률	110
〈표 III-22〉 공공기관 유형별 인권 총족률	112
〈표 III-23〉 공공기관 규모별 인권 총족률	113
〈표 III-24〉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6~12) 총족률	115
〈표 III-25〉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13~19) 총족률	116
〈표 III-26〉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20~26) 총족률	117
〈표 III-27〉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27~34) 총족률	118
〈표 III-28〉 공공기관 인권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19
〈표 III-29〉 공공기관 규모별 인권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21
〈표 III-30〉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6~12) 해당사항 없음 비율	122
〈표 III-31〉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13~19) 해당사항 없음 비율	123
〈표 III-32〉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20~26) 해당사항 없음 비율	124
〈표 III-33〉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27~34) 해당사항 없음 비율	125
〈표 III-34〉 공공기관 유형별 노동관행 총족률	126
〈표 III-35〉 공공기관 규모별 노동관행 총족률	128
〈표 III-36〉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35~40) 총족률	129
〈표 III-37〉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41~50) 총족률	130
〈표 III-38〉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1~53) 총족률	131
〈표 III-39〉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4~63) 총족률	132
〈표 III-40〉 공공기관 유형별 노동관행 해당사항 없음 비율	133

〈표 III-41〉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64~66) 충족률	134
〈표 III-42〉 공공기관 규모별 노동관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35
〈표 III-43〉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35~40) 해당사항 없음 비율	137
〈표 III-44〉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41~50) 해당사항 없음 비율	138
〈표 III-45〉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1~53) 해당사항 없음 비율	139
〈표 III-46〉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4~63) 해당사항 없음 비율	140
〈표 III-47〉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64~66) 해당사항 없음 비율	141
〈표 III-48〉 공공기관 유형별 환경 성과 충족률	143
〈표 III-49〉 공공기관 규모별 환경 성과 충족률	144
〈표 III-50〉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67~76) 충족률	146
〈표 III-51〉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77~87) 충족률	147
〈표 III-52〉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88~92) 충족률	148
〈표 III-53〉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93~101) 충족률	149
〈표 III-54〉 공공기관 환경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50
〈표 III-55〉 공공기관 규모별 환경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52
〈표 III-56〉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67~76) 해당사항 없음 비율	154
〈표 III-57〉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77~87) 해당사항 없음 비율	155
〈표 III-58〉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88~92) 해당사항 없음 비율	156
〈표 III-59〉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93~101) 해당사항 없음 비율	157
〈표 III-60〉 공공기관 공정운영관행 성과 충족률	158
〈표 III-61〉 공공기관 규모별 공정운영관행 성과 충족률	160
〈표 III-62〉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02~108) 충족률	161
〈표 III-63〉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09~114) 충족률	162
〈표 III-64〉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15~120) 충족률	163
〈표 III-65〉 공공기관 공정운영관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64
〈표 III-66〉 공공기관 규모별 공정운영관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65
〈표 III-67〉 공공기관 산업별(102~108) 해당사항 없음 비율	166

〈표 III-68〉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09~114) 해당사항 없음 비율	167
〈표 III-69〉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15~120) 해당사항 없음 비율	168
〈표 III-70〉 공공기관 유형별 소비자 이슈 성과 충족률	169
〈표 III-71〉 공공기관 규모별 소비자 이슈 성과 충족률	171
〈표 III-72〉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21~127) 충족률	172
〈표 III-73〉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28~133) 충족률	173
〈표 III-74〉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34~140) 충족률	174
〈표 III-75〉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41~144) 충족률	175
〈표 III-76〉 공공기관 소비자 이슈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77
〈표 III-77〉 공공기관 규모별 소비자 이슈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78
〈표 III-78〉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21~127) 해당사항 없음 비율	179
〈표 III-79〉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34~140) 해당사항 없음 비율	180
〈표 III-80〉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41~144) 해당사항 없음 비율	181
〈표 III-81〉 공공기관 유형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충족률	182
〈표 III-82〉 공공기관 규모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충족률	183
〈표 III-83〉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28~133) 해당사항 없음 비율	184
〈표 III-84〉 공공기관 산업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145~150) 충족률	185
〈표 III-85〉 공공기관 산업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151~160) 충족률	186
〈표 III-86〉 공공기관 유형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87
〈표 III-87〉 공공기관 규모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188

〈표 III-88〉 공공기관 산업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145~150)	
해당사항 없음 비율	189
〈표 III-89〉 공공기관 산업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151~160)	
해당사항 없음 비율	190
〈표 IV-1〉 이해관계자 면담 요약	234
〈표 V-1〉 2011년 정부관장정책 지표와 ISO 26000 체크리스트와의 관계 ·	249
〈표 V-2〉 나눔 문화 확산 제도 현황	253
〈표 V-3〉 공공성 모델 평가 강화방안 제1안	261
〈표 V-4〉 공공성 모델 평가 강화방안 제2안	262
〈표 V-5〉 공공기관 유형별 지속가능경영 목표 수준	264
〈표 V-6〉 공공기관 유형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가이드라인 ·	266
〈표 V-7〉 사회적 책임 성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267
〈표 V-8〉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단계별 이해관계자 참여단계안 ···	270
〈표 부록-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348

그림 목 차

[그림 II-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관 수	31
[그림 II-2] 대륙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32
[그림 II-3] 상위 20개 산업부문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32
[그림 II-4] 각종 사회적 책임 보고서 형태	33
[그림 II-5]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34
[그림 II-6] UN GC 운영 모델	36
[그림 II-7] UN GC 가입 기관 수	37
[그림 II-8] UN GC 리더십	38
[그림 II-9] ISO 26000 주요 주제	42
[그림 II-10] 지속가능경영의 요인	43
[그림 II-11] Vodafone Group 지속가능경영 가치	45
[그림 II-12] ALCOA 지속가능경영 접근	46
[그림 II-13] British Land 지속가능경영 접근	47
[그림 II-14] 이해관계자 접근 모델	49
[그림 II-15]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지속가능경영 단계	50
[그림 II-16] ExxonMobil 이해관계자 관여 과정	51
[그림 II-17] 기업 신뢰의 요소	52
[그림 II-18] 기업의 책무성 관계	53
[그림 II-19] 이해관계자의 요구	55
[그림 II-20]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모델(수직적)	57
[그림 II-2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과정	59
[그림 II-22] 기관의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방안	60

[그림 II-2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단계	61
[그림 II-24] 리더십과 지속가능경영 점검	63
[그림 III-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무성 관계	73
[그림 III-2] ISO 26000 구성 개요	75
[그림 III-3] ISO 26000 이행수준 체크리스트 구성	79
[그림 III-4] ISO 26000 체크리스트 구성 체계	80
[그림 III-5] 프로세스 진단 현황	88
[그림 III-6] 성과 진단 현황	88
[그림 V-1] 공공기관 책임경영 범위	236
[그림 V-2] 공공기관 경영추구 방향	237
[그림 V-3] 공공기관 성과관리 접근방식	238
[그림 V-4] G3 지표와 공운법과의 관계	240
[그림 V-5] ISO 26000 성과와 공운법과의 관계	241
[그림 V-6] 유럽품질재단 모형(EFQM) 2010	243
[그림 V-7]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 범주 및 구성 체계	243
[그림 V-8]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 범주 및 구성 체계	244
[그림 V-9] GRI G3 지표와 2011 경영평가 지표와의 관계	245
[그림 V-10] GRI G3 지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의 관계	251
[그림 V-11]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252
[그림 V-12] 공공기관 공정사회 추진전략	254
[그림 V-13] 공정사회 실천협의회의 정책 방향	255
[그림 V-14]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통합 방향	255
[그림 V-15]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통합 모델	257
[그림 V-16] 공공기관 유형별 ISO 26000 가이드라인	265
[그림 V-17] 공공기관 유형별 공시 수준	269
[그림 V-18]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구성	270

I. 서론

정부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대행하거나 혹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재들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공공기관들이 설립,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약 25만명, 자산 900조원, 그리고 매출액은 250조원(국내총산출 대비 약 9.5% 정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서 정부도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정, 지배구조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시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제적·정책적 역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여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 기업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장애인 및 여성 고용과 더 나아가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 관련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이 있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설립 자체가, 현재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무슨 사회적 책임을 더 지라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들은 과거에는

국제기구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것들이 UN이나 국제표준화 기구(ISO)와 같은 기구에서 하나의 표준이나 기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와 같은 논의의 핵심을 차지하는 가치들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인권·노동·윤리·환경적 가치에까지 이르고 있고, 이들 가치를 현장 경영에서 실천하는 것을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지난 1960년대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한때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기준인 ISO 26000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기존의 환경·윤리·인권·노동 등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 모델은 민간기업만이 준수하거나 실천해야 하는 경영가치와 모델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07년 UN 글로벌 정상회의에서는 그것이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모두가 실천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기업만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중 상당수는 그 동안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는데, ISO 26000의 발효를 계기로 이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이 사실상의 인증제도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제시된 항목들 중 우리나라 공공기관

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준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항목들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SO 26000 이 합의과정에서 기존의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적용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았던 GRI 기준보다는 다소 좁은 의미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보다 국가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경제적 책임 항목들이 덜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한다.

라영재·윤태범(2010)의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한계』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정의, 이론적 논의, 국제적 추세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계를 대상으로 한 총론적 성격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연구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조만 해도 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더 포괄적인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1세기 국제적 추세인 지속가능경영의 흐름에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실태가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로부터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고 비효율경영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식과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신공공관리주의에서 주장하는 ‘경영효율화’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수용하여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정도가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2010년 11월 ISO 26000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적용이 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이행하거나 실천하지도 않는 경영체계나 윤곽만 그럴 듯한 지속가능한 전략체계보다는, 이행 가능하고 이해관계자 관점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가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공공기관의 조직구조·업무특성·문화의 경영혁신이 공공기관의 단순한 재무적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또한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지속가능경영 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한 현 시점에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정립해 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이론적 논의

1. 국제적 추세

유럽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노동자의 소외와 사회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투자기관과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각 국가마다 경제 및 재정위기로 인하여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재정위기는 기업의 극단적인 주주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Werther & Chandler, 2009; 라영재·윤탤편, 2010). 이렇게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는 기업들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생태계(ecosystem)에 관여하면서도 서로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충관계만을 설정하였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표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관계적 작업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안정적 수익성도 보장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더불어 고객만족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Eco Research, 2010).

UN 등 국제기구는 오래전부터 각 시기마다 국제 사회에서 문제화된

인권·노동·보건·안전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규범화를 시도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 헌장의 취지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와 UN이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의 규범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가치는 1987년 국제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천명한 이래 동일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국제기구들이 받아들여서 통합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요한 요소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UN Global Compact, GRI, ISO 26000에서는 그간 논의되고 발전시켜 온 민간기업뿐만이 아닌, 정부기관·공공기관·비정부기구(NGO)·비영리단체(NPO)의 사회적 책임 요소들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통합하고 있다(라영재·윤태범, 2010).

가. G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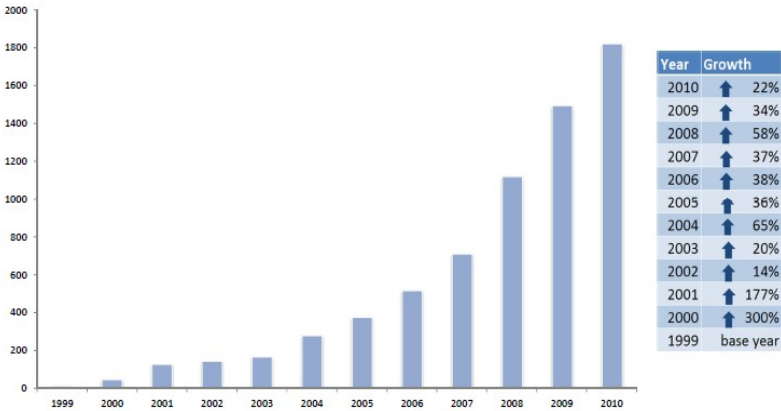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지침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로서 노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GRI 보고 프레임워크는 기업, 투자자, 노동자, 시민사회, 회계법인,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합의 과정에 의해 개발되고 모든 보고는 문서 검증 및 지속적인 개선의 대상이 되고 있다(GRI Version 3.0).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이 늘어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II.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이론적 논의 31

책임 경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투명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등에 대한 논의의 확산뿐만 아니라 윤리라운드, 환경라운드의 확산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대해 기업이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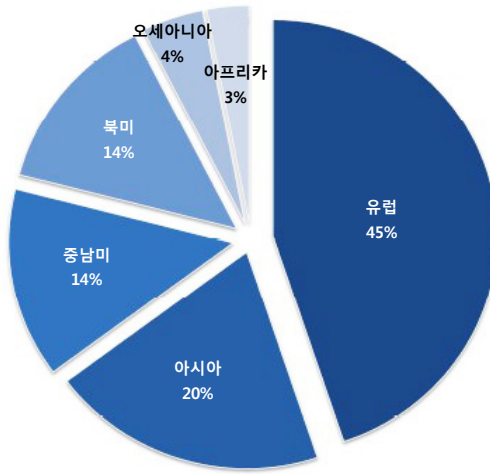
[그림 II-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관 수



자료: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tistics Publication year 2010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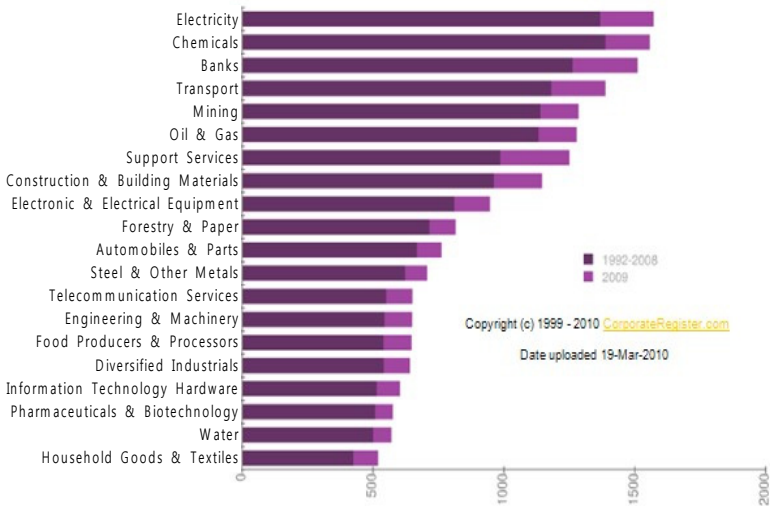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국가별 발간 현황과 UN Global Compact(UN GC)의 국가별 가입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은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았고, UN GC는 일부 개발도상국가의 기업 및 단체에서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결과는 유럽의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오랜 정치·사회적 배경과 맥락에서 GRI보고를 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가입 절차와 보고(COP; Communication on Progress)에 용이한 UN GC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의 수보다는 UN GC 가입 기업 수가 월등하게 많다.

[그림 II-2] 대륙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자료: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tistics Publication year 2010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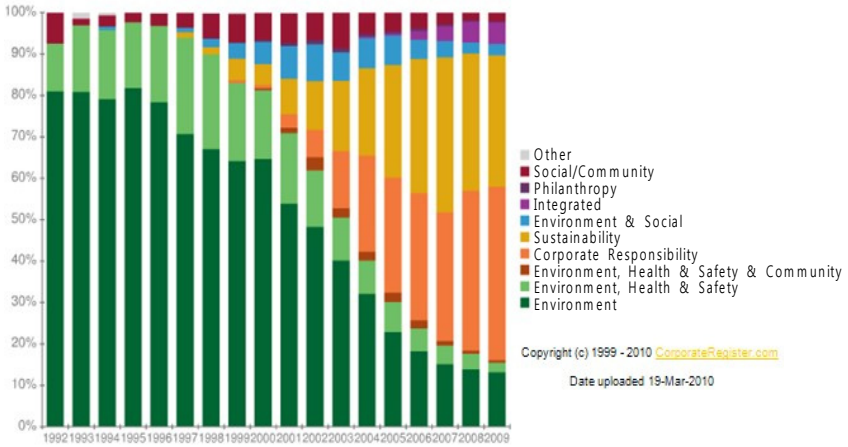
[그림 II-3] 상위 20개 산업부문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료: CorporateRegister.com; 지속가능경영원, 2010 인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형태는 2000년 이전에는 주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GRI 등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보고하는 'Triple Bottom Line' 영향으로 인하여 통합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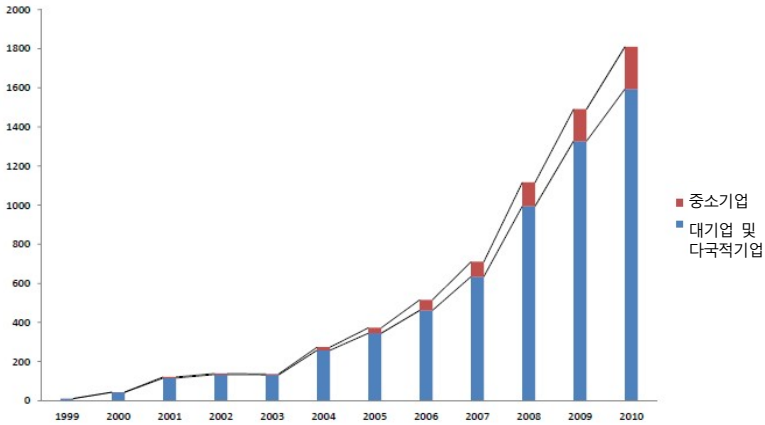
[그림 II-4] 각종 사회적 책임 보고서 형태



자료: CorporateRegister.com; 지속가능경영원, 2010 인용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간의 실천 프레임워크·모델이나 리더십·전략·과정 등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날 수 없지만, 조직의 규모가 다르면 조직구조·문화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나 조직 관리자의 입장에서 장기의 사회·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당장 당면한 경제적 문제 및 조직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략적·통합적인 지속가능경영을 할 여력이 없으므로 참여 기업과 기관의 숫자가 대형 기업이나 기관보다는 적을 수 있다(Epstein & Roy, 2000).

[그림 II-5]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자료: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tistics Publication year 2010 인용

나. Global Compact

1999년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Capitalism with a human face)’를 구현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선언하였다. 2000년 7월 UN 본부에서 UN Global Compact 발족식을 거행하였고, 기업이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보편적 원칙을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사회적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표 II-1〉 UN Global Compact의 10개 원칙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의 효력 인정을 지지해야 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압적, 강제 노동 제거를 지지해야 한다. 5. 기업은 어린이 노동의 효과적 폐지를 지지해야 한다. 6. 기업은 고용과 직업 선택의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환경
7. 기업은 환경의 도전에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8. 기업은 더 큰 환경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9.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토록 장려해야 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취득과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UN GC는 10개 원칙을 지킬 것을 약속한 것에 대하여 위험과 기회요인 평가·목표·전략·효과의 정의, 조직과 조직 외의 협력 업체와 실행, 성과 모니터링과 측정, 개선정도의 보고 등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운영 모델로 하고 있다.

[그림 11-6] UN GC 운영 모델



UN Global Compact는 10여 년간 이러한 UN GC의 운영 원칙을 준수한 기업 경영 성과의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 유형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an, 2010). UN GC에 가입한 기업 및 단체는 주로 민간기업이지만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7] UN GC 가입 기관 수



UN GC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의 해결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 아니라 UN GC 10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조직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조직의 관리자는 지속가능경영의 리더십으로 반드시 10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보전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UN GC의 지속가능경영 리더십은 개선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투자자·교육자·시민사회·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UN GC, 2010).

[그림 11-8] UN GC 리더십



다. DJSI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와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선도기업인 SAM사가 개발하여 지난 1999년부터 전 세계 2,500개 기업(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평가기법으로, 재무적 정보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성과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 모형이다. 이곳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상위 10%인 기업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여 DJSI를 발표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POSCO,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전기, SK Telecom, 롯데쇼핑의 6개 기업만이 DJSI에 편입되어 있다. DJSI는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이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를 운용할 때 벤치마크로 삼는 지수 중 하나로서 2009년 말 현재 16개국 120여개 펀드가 이 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펀드 금액은 90억\$에 이르고 있다.

DJSI Korea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의 Dow Jones Indexes,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 글로벌 선진기관인 스위스 SAM이 공동으로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분석하여 발표하는 국가 지수이다. 지수 구성을 위한 기업 평가는 스위스 SAM사가 전담하여 글로벌 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 회사발간자료, 미디어 및 이해관계자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주요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속가능 이슈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다.

DJSI Korea 평가 항목은 공통 항목 43%와 산업별 항목 57%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 항목을 통해서 각 기업의 산업 이슈를 파악하고 기업의 대응 역량을 평가할 수 있으며,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슈는 9개의 공통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항목별 이슈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표 II-2〉 DSI Korea 평가항목

분류	항목(가중치)	세부 항목
경제 (4개 항목)	기업지배구조 (6.0%)	- 이사회 규모 / 이사회 구조
		-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여부
		- 이사회 의 책임 /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 이해관계의 충돌 / 이사회 다양성
		- 이사회 효율성 / 스톡옵션 제도
	리스크 및 위기관리(6.0%)	- 리스크 및 위기관리의 책임
		- 리스크 평가 / 리스크 정의 / 리스크 파악
		- 스트레스 민감도 분석 / 리스크 대응 전략
	윤리강령 / 반부패(6.0%)	- 윤리강령 / 윤리강령 시스템 및 프로시저
		- 반부패, 반뇌물 정책 / 윤리강령에 대한 공표
산업별항목 (산업별로 상이)	- 브랜드 관리, 고객 관리, 공급망 관리	
	- 마케팅 활용, R&D 혁신, 재생 에너지	
환경 (2개 항목)	환경보고서 (3.0%)	- 간접 및 직접 환경 이슈 / 주요 환경 성과, 목표 및 범위
		- 환경관리시스템 / 기후변화 대응 전략
	산업별 항목 (산업별로 상이)	- 생물 다양성 활동 / 제품 책임 활동 등
사회 (6개 항목)	인적 자원 개발 (5.5%)	- 인적 자원 기술 개발 전략 / 인적 자원 성과 지표
		- 개인 및 조직 교육 훈련 및 발전
	인적 자원 보유 (5.5%)	- 성과 보상 체계에 해당되는 직원 비율
		- 보상과 연계되는 성과 비율 / 직원 만족도 운영
		- 개인 및 집단성과의 균형 / 다양한 보상 체계 운영
		- 보상과 연계된 기업 성과 지표
		- 개인 성과와 팀 성과의 연계 방안
		- 개인 성과를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
- 보상과 연계된 총 지불 금액 / 추가적인 복리 후생 제공		

〈표 II-2〉 DSJ Korea 평가항목(계속)

분류	항목(가중치)	세부 항목
사회 (6개 항목)	노동지표 (5.0%)	- 고충처리 방안 / 다양성 / 차별방지 정책
		- 동등보상 / 집회 및 검사의 자유 / 해고 / 보건
		- 안전 / 환경 / 공공 선언문
	기업 시민 의식 (3.0%)	- 사회 공헌 활동 결과 측정 / 사회 공헌 투자 금액
	사회보고서 (3.0%)	- 노동과 관련된 지표 보고
		- 임직원, 근로자, 지역사회 관련 노동 이슈
산업별 항목 (산업별로 상이)	- 제품 정보 공개 / 품질 / 리콜	
	- 다국적 아웃소싱, 작업장 안전 및 보건 / 생물 윤리	

라. ISO 26000

ISO 26000의 구조는 다음 [그림 II-9]와 같이 7개의 사회적 책임의 원칙, 사회적 책임성을 위한 두 가지 기본적 실행(사회적 책임성의 인식, 이해관계자의 확인과 참여), 7가지의 사회적 책임성의 핵심 주제, 조직을 통한 사회적 책임성 이행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ISO 26000의 핵심인 사회적 책임성의 정의에서부터 기본적인 원칙·구성요소·실행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SO 26000의 핵심 주제는 인권 등 총 7개이며, [그림 II-9]에서는 각 주제별로 각각의 핵심적인 이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9] ISO 26000 주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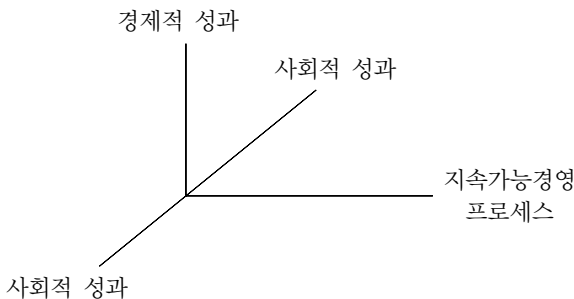
2. 지속가능경영의 원칙

가. 지속가능경영의 접근법

국제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인인 시민과 같이 기업들도 더 좋은 ‘기업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 개선과 사회적 책임, 환경적 보전이 균형을 갖도록 하는 ‘Triple bottom line’은 기업의 경쟁적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Brundtland, 1985; Elkington, 2006),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기업들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 있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이 개선되는 상호성과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기업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전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는 것과 경영전반에 걸친 투입·과정·산출·결과까지의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II-10] 지속가능경영의 요인



1) 지속가능성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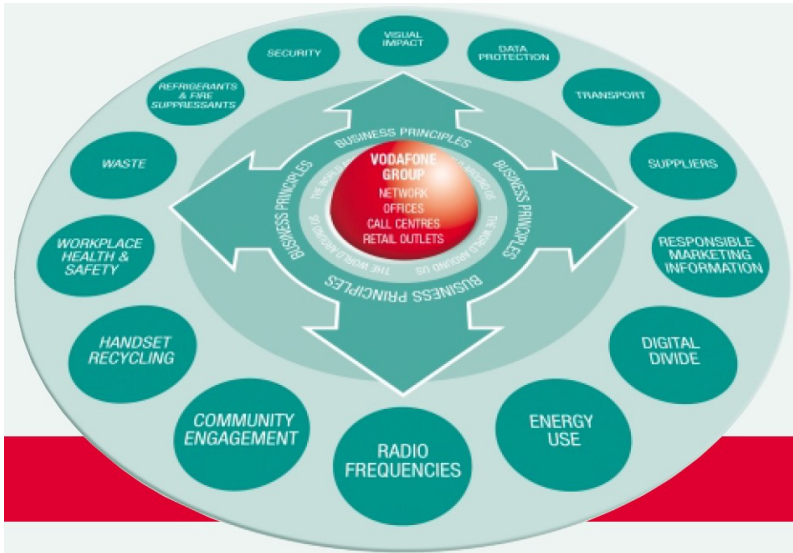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속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의 정교성, 경영관리나 투자 결정에서의 활용성, 계량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Epstein(2008, p. 36)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① 윤리성(ethics), ② 지배구조(governance), ③ 투명성(transparency), ④ 공급망 관계(business relationships), ⑤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 ⑥ 지역공동체 기여(community involvement), ⑦ 생산과 서비스의 가치추구(value of products and services), ⑧ 종업원 관계(employment practices), ⑨ 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의 9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3〉 지속가능성 성과 원칙

원칙	주요 내용
윤리성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는 데 윤리적 기준과 실천을 위하여 제정, 촉진, 점검, 유지의 활동이 있어야 함
지배구조	관리자가 이해관계자 이익에 집중, 이사회에 신탁의무를 인정하는 모든 자원을 신의성실, 효과적 관리
투명성	제품, 서비스, 경영활동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진 의사 결정에 대한 적시 정보공개
공급망 관계	공급자, 협력사와 공정거래
재무적 수익	투자에 대한 경쟁적 보상과 자산의 보전
지역공동체 기여	지역공동체와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 증진
생산과 서비스 가치추구	고객의 수요와 권리 존중,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제공 노력
종업원 관계	종업원의 발전, 다양성, 권한위임이 증진되도록 인적자원관리
환경 보호	제품, 서비스, 경영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노력

자료: J. Epstein, M. J. Roy, "Improving Sustainability Performance,"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vol. 29(1), 2003, pp. 1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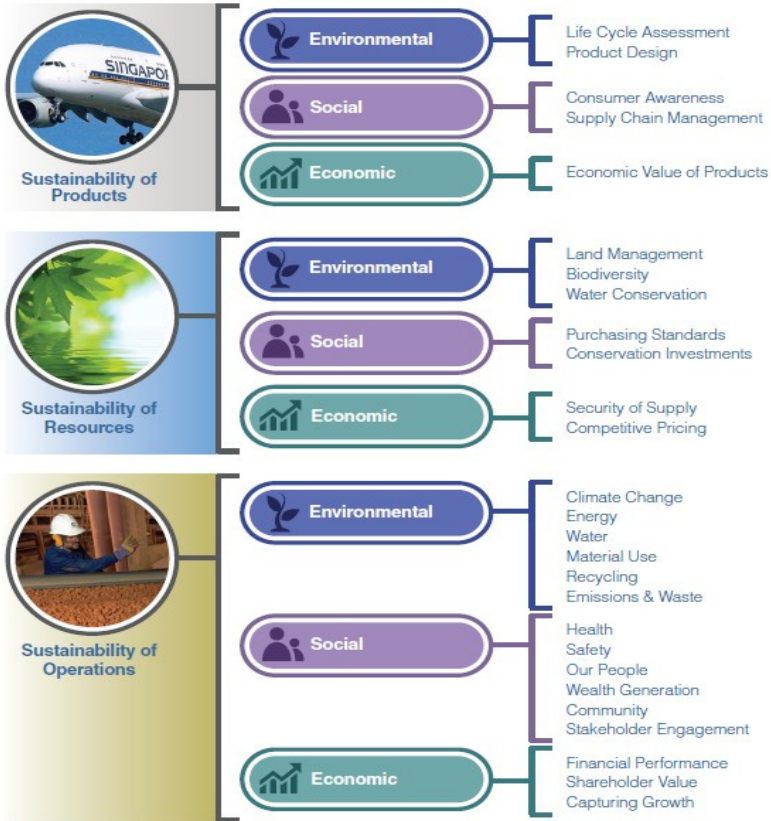
[그림 II-11] Vodafone Group 지속가능경영 가치



자료: "The world around us," Vodafone Sustainability Report 2009/2010, p. 5. 인용

Vodafone 기업 가치와 비전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달성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공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기업은 국제적 수준과 환경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Vodafone, 2010).

[그림 II-12] ALCOA 지속가능경영 접근



자료: ALCOA, 2009 Sustainability Highlights, p. 3 인용

Alcoa사는 지속가능성을 주주·종업원·고객·공급자·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순수한 장기적 이익이 되도록 협력을 통해서 재무적 성공, 환경적 우수성,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 가는 기업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ALCOA, 2009:3).

영국 British Land는 부동산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의 선택받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지향점으로 사회적 책임을

II.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이론적 논의 47

수행한다고 한다. 기업은 기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추구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민원에 대한 대응 및 그 방법을 관리하거나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항상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앞으로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림 II-13] British Land 지속가능경영 접근



Our approach to corporate responsibility

The key material issues managed and monitored through our partnership approach to corporate responsibility are:

NATURAL RESOURCES

We aim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reduce water use and cut waste to landfill. This reduces our costs and those of our occupiers, as well as conserving precious natural resources.

CUSTOMERS

We aim to build closer relationships with our customers to help them to achieve their goals, and to help us to achieve ours.

COMMUNITIES

We aim to foster economic regeneration and to demonstrate the highest standards of ethical behaviour in our dealings with communities and the built environment.

STAFF AND SUPPLIERS

We aim to treat our suppliers and staff as members of a single team who work together to ensure the success of our business and delivery of excellent service to our custo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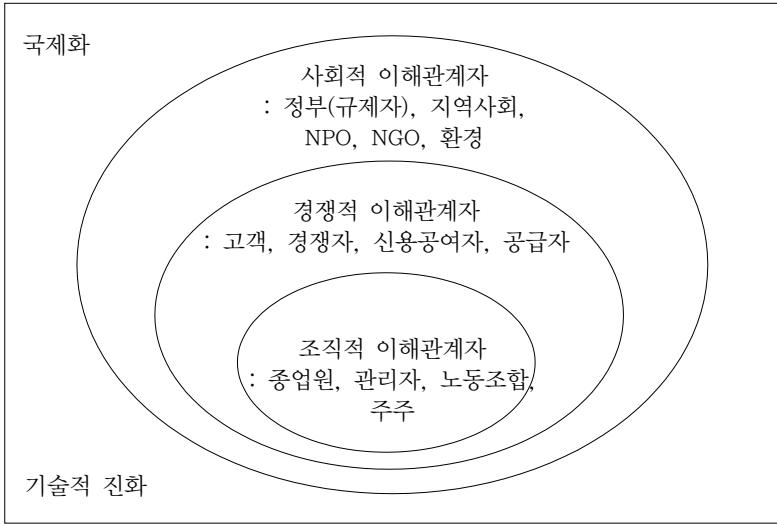
자료: British Land CR Report, 2010, p. 2.

2) 주요 이해관계자 관계 정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하는 데는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경영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어떻게 고려되는가와 이해관계자의 반응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관리되는가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Epstein, 2008). 주요한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부가적인 이해관계자는 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주주·고객·공급자·종업원·정부·지역공동체 등이 전형적인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¹⁾

1) 이해관계자 유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이행관계자, 사업파트너, 소비자, 정부, 외부영향자로 규정하는 연구(Dowing, 2001; 산업연구원, 2005)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해관계자 유형분류보다는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직접 고객보다 광범위한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성과 지역성이라는 특성상 내부적 이해관계자보다는 외부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림 II-14] 이해관계자 접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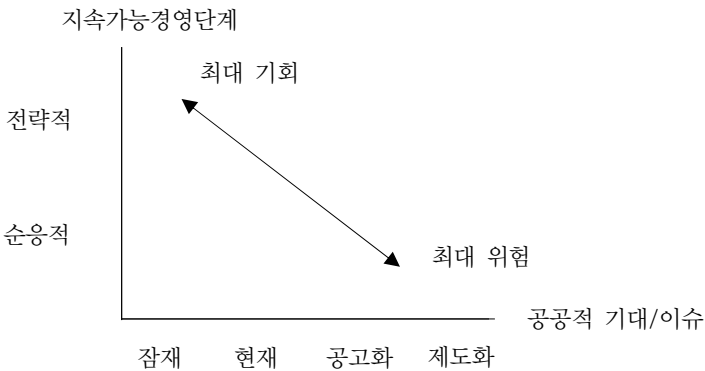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는 기업 행위의 이해에 따라서 개인일 수도 집단일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해관계자를 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영 전략상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전략적 기획과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과 같은 전략적 고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업은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의 영향력에 순응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적 시각에서 지속가능경영과 전략이 통합되는 것이다.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은 곧 경영의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II-15]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가와 사회적 이슈나 공공의 기대가 얼마나 제도화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들이 기업에게는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와 사회적 이슈는 동시에 기업의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파악해야 한다 (Zadek, 2004).

[그림 II-15]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지속가능경영 단계



ExxonMobil은 39개 국가에 생산과 개발을 하고 있으며 526개 지역공동체와 비정부기구(NGO)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약 2억 5천만명의 개인과 2천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인적·사회적·경제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ExxonMobil, 2010: 12).

[그림 II-16] ExxonMobil 이해관계자 관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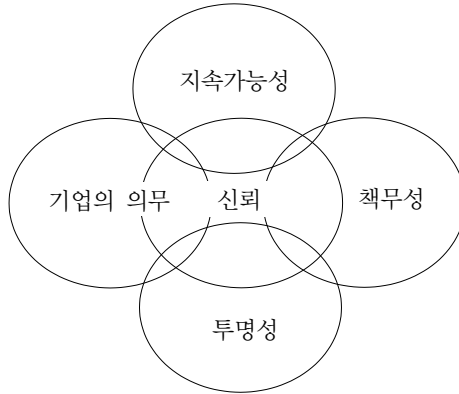
자료: ExxonMobil 2009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p. 11. 인용

3) 지속가능경영의 책임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요인이 기관을 신뢰하는 데 근간이 된다. 특히 최근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모두가 사회적 신뢰의 저하와 상실의 시대에 직면하면서 이들 기관이 다른 사람, 기관의 무관심 속에 계속 노출된다면 기관의 신뢰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속가능경영이나 활동만이 잃어버린 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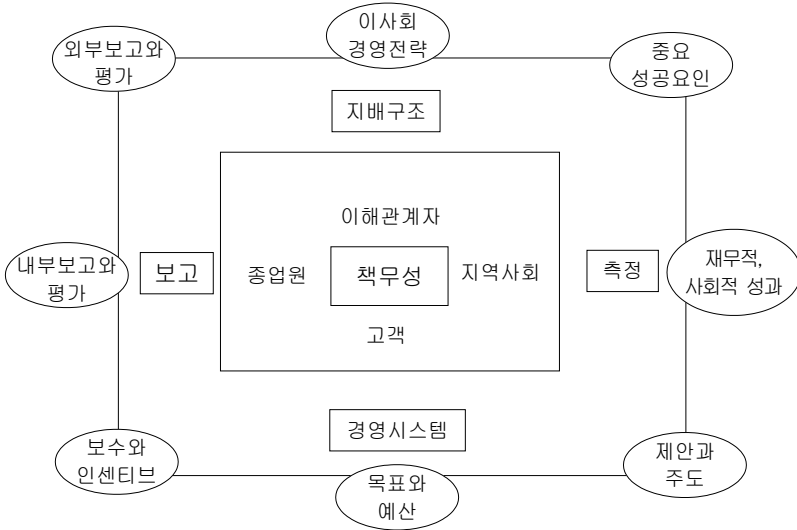
신뢰를 회복시키고 사회와 가교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림 11-17] 기업 신뢰의 요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서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경영의 책임성의 영향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하려면 지배구조·성과측정·보고·경영시스템의 4가지 요소에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Epstein & Birchard, 1999). 첫째, 지배구조의 개선은 이사의 독립성과 이사회 의 경영성과에 기여라는 요건을 의미한다. 둘째, 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경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측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정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하는 것이다. 넷째, 기업 관리자가 기업의 책임성과 성과를 개선 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변화를 추동 하는 것이다.

[그림 II-18] 기업의 책무성 관계



4)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조직의 의사결정과 성과관리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접근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균형성과표(BSC)와 이해관계자 분석이 현재 기업의 전략을 실천하는 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Epstein, 2008, 137). 지속가능경영모델이 확산되기 전에 Kaplan 외(1992)는 매출이나 순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쳤던 성과측정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프로세스, 고객 및 학습·성장 관점을 추가하여 균형 있는 성과측정을 통한 기업의 전략과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시스템으로서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반영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다(금명기, 2011). 이러한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성과관리를 중요시하는 평가시스템으로서, BSC는 도입 초기에 조직·사업 평가결과를 보상에 연계하기 위한 측정시스템과 경영혁신체계로 이해되었다(김완희·

김현철, 2006; 353-358).

최근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BSC에 근거하여 조직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영재, 2011). 민간기업보다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기관의 전략과 비전을 반영한 전사적 성과관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지속가능경영모델을 도입하는 데도 일부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²⁾

〈표 II-4〉 지속가능성을 위한 BSC 접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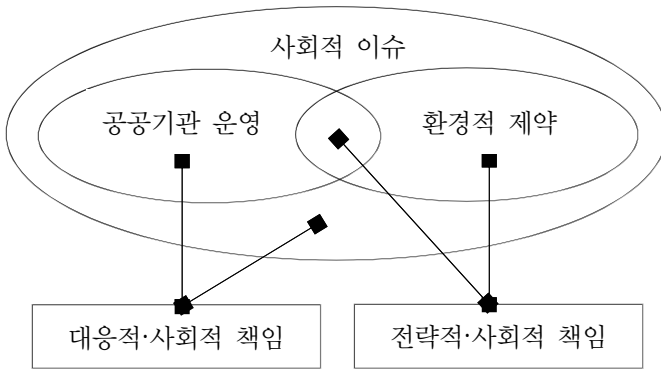
BSC	지속가능성
재무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생산의 매출액 비율 · 재활용수익 · 에너지사용 비용 · 환경오염 벌금, 과태료, 부과금
이해관계자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수상 · 지역공동체지원 펀드 · 지역공동체 고충처리 · 직원 만족
내부과정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받은 공급자비율 · 유해물질량 · 포장량 · 소수자 구매비용 · 제품 리콜수
학습과 성장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의 다양성 관리 · 시간외 근무 · 근로자 혜택 비용 · 교육 및 훈련 비용

주 1): Epstein & Wisner(2006) "Actions and Measures to Improve Sustainability,"
Epstein(2008; 138) 재인용

2)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의 범위를 출자사 외에 주요 협력사·공급사·고객사까지 확대하여 지속가능경영이 효과적인 체계를 구성하도록 했다. 회사 각 부문들이 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의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를 개발해 BSC 경영관리체계에 포함시켰다(포스코 지속가능경영, 2007.8.29).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를 작은 범주에서 고객이나 협력업체, 더 나아가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주무부처나 예산부처만을 상징하는 경영, 즉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만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환경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공공기관 존립의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라영재·윤태범, 2010).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즉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① 사회적 책임 활동 관점, ② 핵심 과제로 수행, ③ 이해관계자 관점, ④ 장기에서 중단기로 전환이 필요하다(Werther & Chandler, 2009;39).

[그림 II-19] 이해관계자의 요구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의 이행과 정책적·도구적 수단성을 가진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공익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성(publicness)을 가지고 있는 공공조직³⁾으로서 국민적·사회적 정당성을

3)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의적 개념으로서 공공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① 정부에 관계되는 것들, ② 정치성, ③ 공개성, ④ 공익성, ⑤ 공유성, ⑥ 공정성, ⑦ 인권을 들고 있다(백완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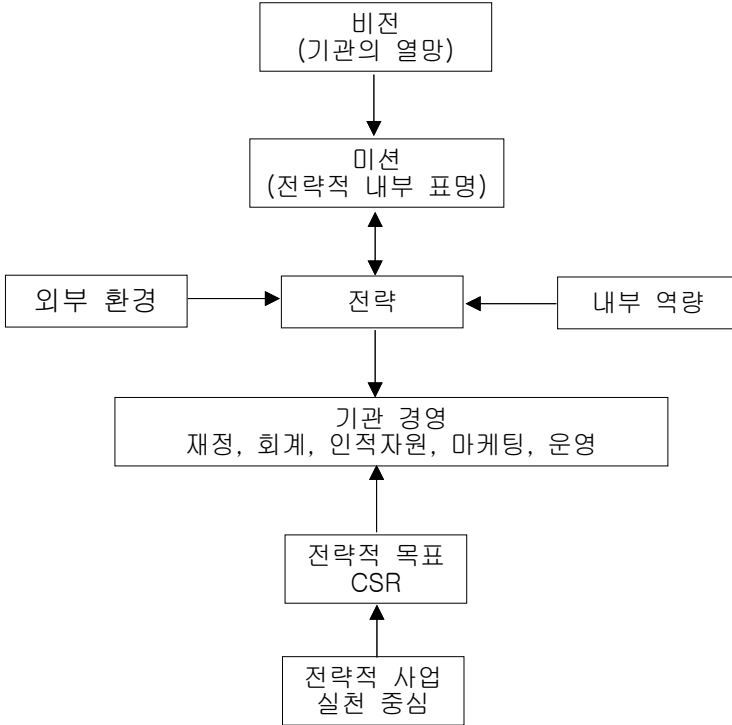
얻기 위하여 전략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최근 지속가능경영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이나 Global Compact의 가입이 이해관계자나 국민에게 보고하거나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직의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마치 지속가능경영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주된 기관의 존립과 고유한 사업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경영 전략적 개념을 외부 환경적 제약 아래에서 내부 역량과 일치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책임성이고 정당성의 근원이다. 전략적 지속가능경영은 기관의 리더십을 통해서 기업과 기관의 비전과 미션에 하향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전략적 목표와 사업이 사회적 책임 관점, 이해관계자 중심적 관점에서 실천적인 사업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이나 기관의 장기적 재무성과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산출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조직 내·외부에 인식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전략과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관점과,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중시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경영의 결과는 초라할 것이고 결국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II-20]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모델(수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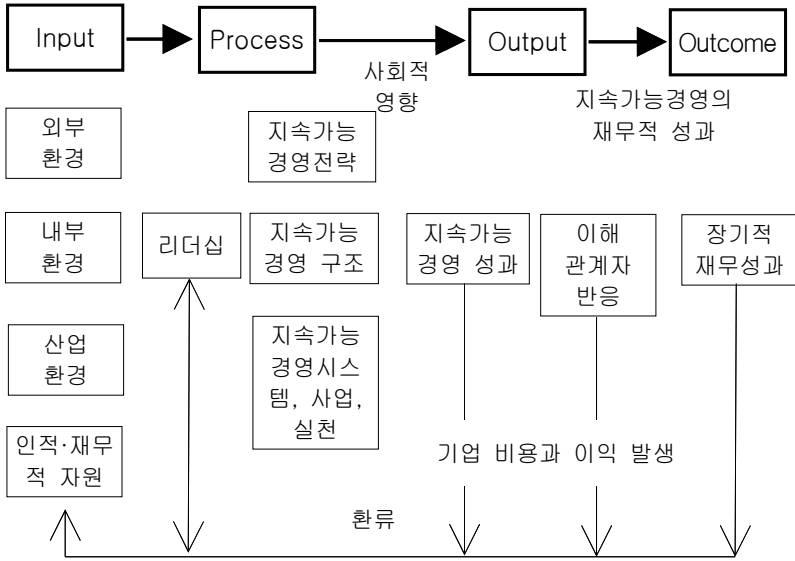
나. 지속가능경영 모델

지속가능경영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첫째로,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가 다양한 기업운영방안이나 실천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둘째로,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위한 실천들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며, 셋째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잠재적

이고 실제적인 재무적 성과가 있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Epstein, 2008, 4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은 이론적·경험적 근거로서 ‘Triple bottom line’인 사회적·환경적·재무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따른다(Segel et al., 2007; Epstein, 2008). 이 모델에 의하면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자와 이해관계자의 성과를 동시에 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통합하기 편리한 이점이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장기적인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얻으려면 중간에 확실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는 데는 다양한 투입과 과정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Epstein, 2008, p. 47). 지속가능경영의 프레임워크나 모델은 국제적 논의에서 발전해 온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들 가치가 경영전략으로 기업 조직구조와 경영과정에 투입되고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2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과정



1) 환경

외부적 환경으로 기업이 처하고 있는 국제적, 지역적 환경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형성과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기업의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위험물질과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방지, 차별금지법, 근로조건 등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있다. 정부의 규제 정도는 지역적으로 다른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강력하다.

또 다른 외부적 환경으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환경이다. 국가의 지형 및 기후에 따라서 환경오염의 규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전략도 달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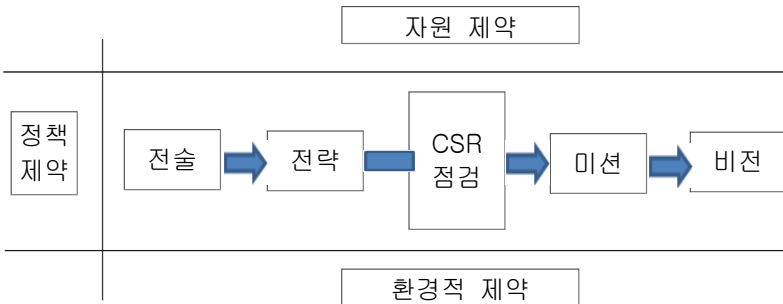
내부적 환경으로 기업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속가능 성과가 발생

하는 데 이행한 미션·전략·구조·시스템이 다르다. 개별 기업이 어떻게 전략적 차원에서 인권, 종업원의 권리, 환경보호 같은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영전략과 평가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의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적 환경과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석유, 석탄 개발 등과 같은 에너지 산업은 환경 및 건강 문제에 더 많은 경영 및 관리적 실천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반면에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측면에서 역점을 둔 경영과 관리가 필요하다.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하려면 훈련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전문성 차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량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II-22] 기관의 전략적 지속가능경영 방안



4) 소비재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고, 제조업은 환경영향, 농수산물은 자연자원의존성, 위험물질은 정부의 강한 규제, 발전산업은 잠재적 규제의 증가, 서비스 산업은 시장 경쟁 증가, 소매업은 저가시장 증가의 위험 요인이 있다 (Epstein, 2008, p. 48).

2) 과정

① 리더십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관리자가 가장 중요하다.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가 위에서 아래로 명백한 권한 위임을 해주어야 그것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Winsner et al., 2006). 최고 조직관리자는 경영전반의 다방면에서 박학다식해야 하며, 기업 조직을 지원해야 하고, 조직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미션·비전·전략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나 조직의 최고관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림 II-2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단계

1 단계	규제력이 있는 감사자 제도 관리
2 단계	경쟁력이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3 단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통합을 달성하기

1단계에서 기업은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재무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규제력이 있는 감사자를 두는 전략은 잠재적인 경영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감사자 전략은 먼저 최고 조직관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확고한 권한 위임과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 사회적·환경적 실천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환경적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한다.

2단계에서 기업은 생애비용분석과 환경디자인과 같은 비용회피 전략을 취한다. 이를 통하여 잠재적인 경쟁력을 갖는 장점이 개선된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생산량 증가, 상품의 질 제고를 추구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결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균형적인 고려를 해야 하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균형적인 고려와 지속가능경영 제도화를 통해서 경영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가 활성화되면 더 시스템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조직의 사회적·환경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⁵⁾

3단계에서 기업은 기업 활동에서 완벽하게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경영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기업의 정책, 기업 문화의 변화,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 영향을 통합한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감시보다는 지속가능성의 기획(sustainability planning)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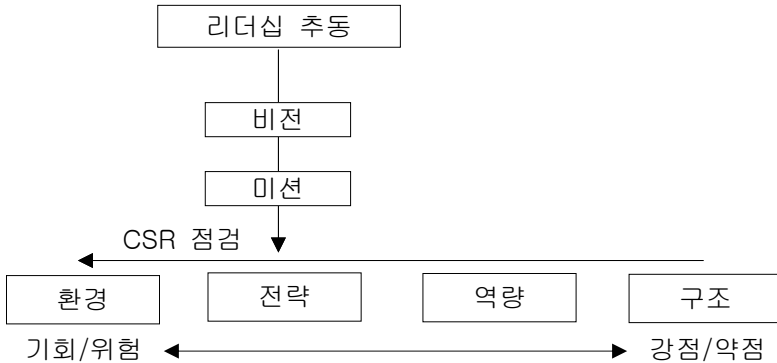
② 지속가능경영 전략

최고관리자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전략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의 평가와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최소한의 규제, 순응을 요구하는 법·정책적 기준 또는 다른 기업의 우수사례와 같은 것으로 도출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지속가능경영의 기준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수이며, 특히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제조 회사는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종업원에 대한 공평한 대우나 환경보호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처한 지역적·산업적

5) 환경오염, 안전, 응급대응과 같은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미국 화학산업의 책임 조치(Responsible Care)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환경관리시스템(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제안했다.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II-24] 리더십과 지속가능경영 점검



③ 지속가능경영 구조

기업은 경영효율성, 환경성과, 인적 자원의 노동성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을 정부의 규제와 법적 통제의 법적 책임성 측면에서만 좁게 보려고 한다. 이러한 법적 책임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기업의 운영에서 나오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⁶⁾ 기업은 조직으로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조직구조를 통해서 다른 가치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천할 수 있다.

④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사업

기업의 조직구조를 통해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행하려면 생산

6) 법적 책임을 포함한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과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은 조직의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전통적인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무성이 통합되고 있다.

비용, 자본예산, 정보 관리 및 성과평가와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서 활용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SC(Balance Score Cards, 균형성과표)와 같은 성과평가지시스템을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관련, 이익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전략, 조직구조,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설정하고 배분하는 것은 종업원의 활동과 동기부여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표 II-5〉 지속가능경영 내·외부 프로그램

구분	사업
내부 프로그램	노동 관행,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주기분석, 공장인증프로그램, 사회적, 환경적 기준 준수 감독, 종업원의 자발적 프로그램, 지속가능경영 훈련과 역량개선 훈련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	자선활동, 공급자 인증요건, 작업환경에 대한 공급자 감독,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공개적 보고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이나 실행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고려해서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대부분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 시도들은 지속가능경영·조직성과 측면에서 단순하게 반응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경영의 성과가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대응적 조치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표 II-6〉 지속가능경영의 성공조치

리더십	전략
① 최고관리자로부터 권한위임 ② 잠재적 위험과 기회관리를 위한 환경평가 ③ 문화적 전환 유도	① 미션 전파 ② 자발적 기준과 국제적·지역적 규제 고려 ③ 사회적 투자자의 영향 고려
조직구조	시스템
① 조직통합 ②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③ 최고관리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④ 전략의 배분	① 비용과 자본투자 시스템 ② 리스크관리시스템 ③ 성과평가 보상시스템 ④ 측정시스템 ⑤ 환류시스템 ⑥ 보고 및 검증시스템

3) 산출

① 지속가능성 성과

지속가능경영성과는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이므로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중요한 목적과 관계가 깊다. 기업의 성과 목적과 목표는 조직이 전략으로 명백하게 인정한 후에 결정된다. 사회적·환경적 성과 목표들은 경제적 성과 목표가 가시적인 반면에 광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업의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중간적 산출로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인정하며, 셋째, 기업이 사회와 기업에 기여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이해관계자의 반응

지속가능경영의 성과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매일매일 의사결정과 관리단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자들은 주요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전략적인 경제적 장점을 제공토록 이해관계자 관계를 구조화한다면 지속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① 고객으로부터 충성도와 장기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고, ② 종업원은 서비스의 혁신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고, ③ 정부 규제자와 지역사회는 규제, 감독, 이행강화 조치를 감소시킬 것이고, ④ 주주의 장기적 자본 제공과 잠재적 투자자가 증가할 것이다.

4) 결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전략 초점은 장·단기 모두 재무적 성과에 맞추어져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개선을 통해 수입이 개선되고 낮은 비용으로 재무성과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Epstein, 1996).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으로 고객의 사회적 평판이 개선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개선되고 있다(Cone, 2007). 일례로 기업의 수익은 녹색 마케팅과 같은 효과적인 평판관리를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비용도 지속가능경영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기업 과정의 개선만으로 낮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물 사용량 절감, 재활용과 같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조직관리에서 종업원의 결근율·지각율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자 퇴직·생산성 감소·산업안전 비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므로, 기업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차원에서 종업원과의

의사소통을 하며 성과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때 조직관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즉 조직은 종업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조직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7〉 지속가능경영의 성공요인

투입	과정
① 외부적 환경 ② 내부적 환경 ③ 산업적 환경 ④ 인적, 재무적 자원	① 리더십 ② 지속가능경영 전략 ③ 지속가능경영 조직구조 ④ 지속가능경영시스템, 사업, 실행
산출	결과
① 지속가능경영 성과 ② 이해관계자 반응	① 지속가능경영 성과 ② 장기적·재무적 성과

5) 환류

지속가능경영 성과과정은 단순 재무적 성과만을 위하여 환류되지 않는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이해관계자 반응, 재무적 성과 등이 미래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집행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각각의 과정에서 환류가 일어난다. 이러한 환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통제시스템이 사회적·환경적 영향정보의 환류, 지속가능성 성과의 환류, 지속가능경영 조치들, 이해관계자의 반응, 재무적 성과의 환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Ⅲ.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 수준

1. 공공기관⁷⁾의 특성

공공기관의 특성을 사기업과 비교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고, 사업목표의 수도 다수이고, 산출물의 성격도 공공재와 사적재가 섞여 있고, 활동의 준칙도 정치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운영의 자율성이 민간기업보다 낮고, 이윤은 국민에게 귀속되고, 소유의 주체가 정부가 되며,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정치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한다(이승배, 1995; 이상철, 2007).

그래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목적으로서 공공성과 수단으로서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Dimock, 1949; Robinson, 1970; 이상철, 2007; 유훈 외, 2010).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같은 조직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의 문제와 동시에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차원에서 공적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가진다. 또한 공공기관이 단순히 정부의 위탁, 대행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특히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도 일반주주와 같이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

7) 민간기관과 비교하는 공공기관은 광의의 개념보다는 대부분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위탁받거나 집행하는 기관들은 선진국가에서처럼 행정기관(agency)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Mazzolini, 1979; 유훈, 2010 재인용). 다만 공공기관은 이윤추구와 사회경제적 정책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쪽 비중이 더 무거운냐는 그 나라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유훈, 2010; 49). 또한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공공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민간기업화가 나타나고 있다(이상철, 2007).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고(Robinson, 1970), 성제성장의 촉진, 독과점 억제, 공공의 수요 충족, 낙후지역과 같은 특정지역 개발, 국가안보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유훈 외, 2010).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이윤추구 목표는 정치사회경제적 목표의 제한을 받거나 조화되어야 한다(Mazzolini, 1979; 유훈, 2010 재인용).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과 소유구조의 특성 때문에 공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경영의 자율성의 보장, 시장에서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에 근거해서 공적 책임성과 시장에서의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⁸⁾은 무엇인가? Accountability가 자기의 행위, 부작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Finer, 1941, 라영재, 2009 재인용)이라고 규정한다면 사회적 책무성이란 사회적으로 행위를

8) Responsibility는 우리말로 책임(성)으로 번역하고 주로 동의적 책임을 의미하며, Accountability는 책무(성)로 번역하며 법적 책무를 의미한다(Presthus, 196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라영재, 2009). Howard(1982)이 굳이 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앞에서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관이 하는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설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적 책무성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앞에서 최근 UN이나 GRI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책임성은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공적 책무성에서 공적이라는 것은 공공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국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공적이라는 접두어를 국민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공공기관의 주인으로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라는 것이 공적 책무성의 본질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것을 최근 사회적·환경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까지 의미한다면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공공성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적 통제를 해야 하고, 기업성이라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시장적 통제를 해야 한다면 두 가지 개념은 일부는 중첩되지만 다른 통제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책임(responsibility) 또는 책무(accountability)는 선언적 수식어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투명성(transparency), 형평성(equity), 민주주의(democracy), 효율성(efficiency), 청렴성(integrity)과 같은 가치·지향점을 이행하는 장치·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Mulgan, 2000; Behn, 2001; Dubnick, 2002). 어찌 되었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적 책무성 문제는 모두 통제로 환원되는데, 공공기관의 책임성 문제는 시장과 정부의 통제를 모두 받는다는 것이다(Howard, 2009). 그래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란 내부 관리적 목적과 외부 정부의 책무성 확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통제시스템에 의존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제시스템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들(social goals)과 국가 정책적 목적 때문에 민간기업과 다르다. 특히 개도국의 공공기관은 국가 정책적 발전 전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법규범을 준수하고 국가·시장·지역공동체가 공공기관의 사회적·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시장의 통제가 작동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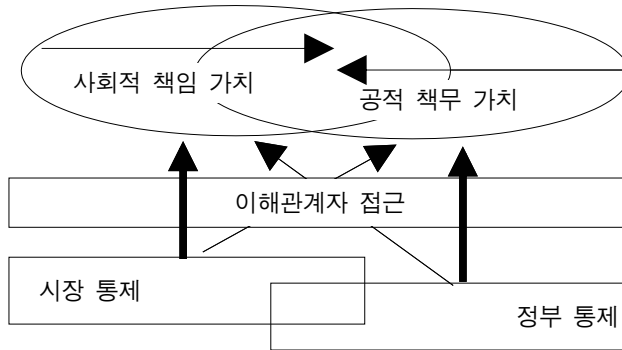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무성의 가치와 내용은 무엇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무성은 무엇인가? 앞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최근 논의되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그 대상이 누구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정부가 정한 법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율적 이행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반면 공적 책무성에서는 법적·조직적·정치적·성과 및 시민적 책무성 유형에 따른 책무성 통제와의 직접적·유기적 관계가 주를 형성한다(Bovens, 2005).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공적 책무성에 대한 차이를 보면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과 방법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ISO 26000). 다만 공적 책무성에 대하여는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규범이 많고 국민들과 정부에 설명해야 할 내용과 가치, 절차가 더 많고 복잡하다.

공공기관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통제하는 데에는 장애요인이 있는데, 첫째로 공공기관은 정직했지만 정책실패의 경우, 또는 신중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위의 경우에 면책을 받는다는 점, 둘째로 국가의 도구로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복잡한 복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Jones, 2009). 셋째로 국가가 법규를 통한 사회적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 권위주의 정부가 법규를 통해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것이 사회적 통제 수단

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Howard, 2009; 86). 넷째로 공공기관은 국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정부로부터 위계적인 공적 책임성 관계에 있는데, 재량권, 감독, 협력관계, 내부 구조, 부적절한 인사의 선임과 해임, 예산과 조절의 간섭 등에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수탁자로서 정부와의 관계도 있지만, 기업 조직으로서 시장의 가격통제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적용뿐만이 아닌 종업원의 임금·비용 등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효율성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영향, 근로조건의 준수, 생산물과 서비스의 질, 환경적·경제적 안전, 고용기회 창출과 훈련 등은 지역공동체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민간기업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사회적 책임의 효과를 얻기가 쉽다는 것이다(Howard, 2009; 92). 그 이유는 공공기관은 국가·시장·지역공동체 모두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일 것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동시에 공적 책무성으로 환원되어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III-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무성 관계



2.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 분석

가. ISO 26000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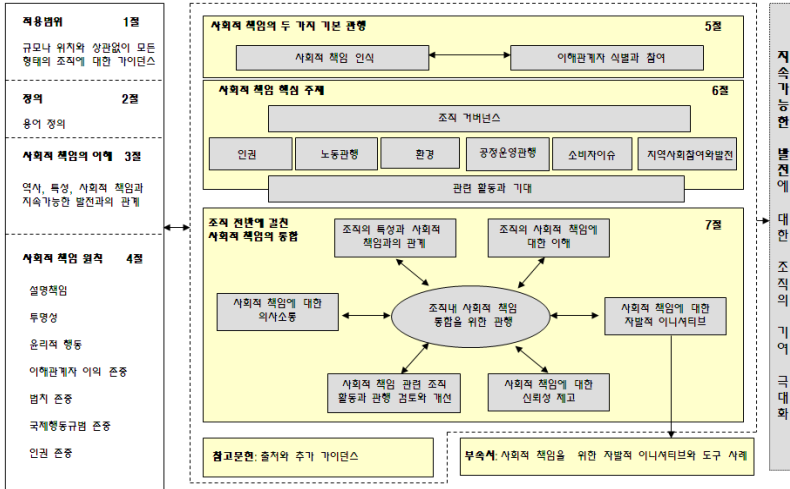
ISO 26000은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2010년 11월에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지침이다. 전 세계의 조직과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합의한 표준이기에 기존의 GRI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RI와는 다르게 ISO 26000은 경영시스템 표준이 아니므로 인증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가 검증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ISO 26000에서는 지속 가능경영 성과인 경제와 환경, 사회적 성과 중에서 경제적 성과가 빠지고 환경과 사회적 성과가 강조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 점도 있다. 또한 GRI가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ISO 26000의 적용 범위는 규모나 위치에 상관 없이 모든 형태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SO 26000은 ① 설명책임, ② 투명성, ③ 윤리적 행동, ④ 이해관계자 이익 존중, ⑤ 법치 존중, ⑥ 국제행동규범 존중, ⑦ 인권 존중 등 7개의 사회적 책임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의 두 가지 기본 요소로는 ① 사회적 책임 인식과 ②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이다. 그리고 ISO 26000은 조직·인권·노동 관행·환경·공정운영관행·소비자 이슈·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사회적 책임의 7가지 핵심주제를 다루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속가능경영은 경제와 환경, 사회적 성과의 'Triple Bottom Line'으로 구성되는데 ISO 26000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빠지고 환경과 사회적 성과가 강조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한정된 모델로 볼 수 있다. 기존 공공기관 경영 모델은 주요사업과 경영 효율화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어 지속가능경영에서 경제적 성과가 강조된 모델이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평가단이 구성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따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성과 수준을 측정할 실익은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족하였던 사회적 책임의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 주요사업과 경영효율화, 사회적 책임이 통합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75

[그림 III-2] ISO 26000 구성 개요



자료: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7가지 핵심 주제는 세부 쟁점 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권에서는 8가지 쟁점 사항을 다루고 있고 노동관행에서는 5가지 쟁점 사항, 환경에서는 4가지 쟁점 사항, 공정운영관행에서는 5가지 쟁점 사항, 소비자 이슈는 7가지 쟁점 사항, 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은 7가지 쟁점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 ISO 26000의 핵심 주제와 쟁점

핵심 주제		쟁 점	
1	기관 거버넌스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	
2	인권	1	실사
		2	인권 위협상황
		3	공모회피
		4	고충처리
		5	차별과 취약그룹
		6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7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8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3	노동관행	1	고용과 고용관계
		2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3	사회적 대화
		4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5	근로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4	환경	1	오염 방지
		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3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4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5	공정운영관행	1	반부패
		2	책임 있는 정치 참여
		3	공정 경쟁
		4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5	재산권 존중
6	소비자 이슈	1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와 계약관행
		2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3	지속가능소비
		4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5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6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7	교육과 인식

〈표 III-1〉 ISO 26000의 핵심 주제와 쟁점(계속)

핵심 주제		쟁 점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	지역사회 참여
		2	교육과 문화
		3	고용 창출과 기능 개발
		4	기술 개발과 접근성
		5	부와 소득 창출
		6	보건
		7	사회적 투자

자료: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7가지 핵심주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와도 연관성이 있다. 우선 ISO 26000의 환경은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목표였던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ISO 26000의 인권과 노동 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후기 국정 목표인 공정한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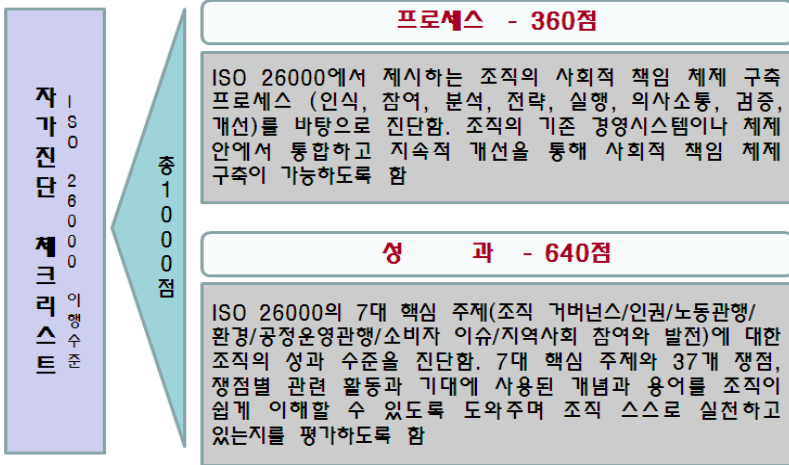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고 정부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민간기업과 달리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서도 개별적인 노력과 활동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파악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취합하여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공기업을 중심으로만

그것을 발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아직 발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낮아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은 높으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인식시키는 것도 이번 설문조사의 목표였다.

나. 조사 설계

설문조사는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지는 자체적인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작성한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작성하였지만, 현재 국가 표준기관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자료이기에 기술표준원의 사용 승인을 받고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그림 III-3] ISO 26000 이행수준 체크리스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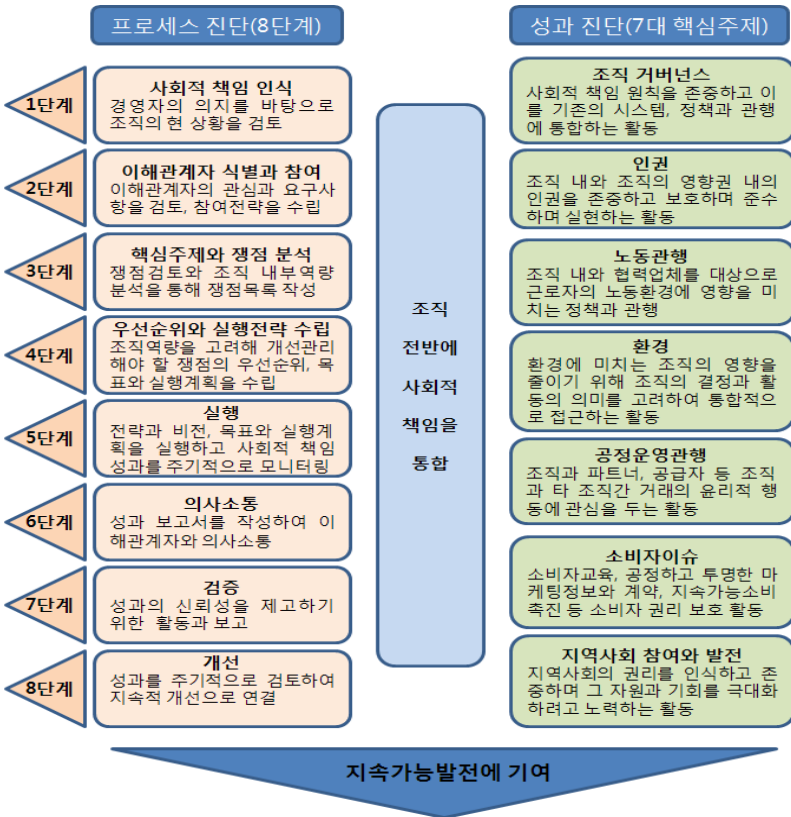
자료: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크게 프로세스와 성과로 구분되어지는데, 프로세스에서는 기관의 기존 경영시스템이나 체제 안에서 사회적 책임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총 8단계로 ① 사회적 책임 인식, ②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③ 핵심 주제와 쟁점 분석, ④ 우선순위와 실행전략 수립, ⑤ 실행, ⑥ 의사소통, ⑦ 검증, ⑧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에서는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조직의 성과 수준을 진단한다. 조직 거버넌스에서는 기관이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정책과 관행에 통합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인권에서는 기관만이 아닌 조직의 1차 협력사와 같이 공급망 사슬(supply chain)에 영향을 받는 조직까지 포함하여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노동관행에서도 기관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을 진단한다. 환경에서는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환경 기술투자와 보호 활동 등에 대해 진단한다. 공정운영 관행에서는 기관이 협력업체나 경쟁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거래와 공정거래, 공정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소비자 이슈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도록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서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그림 III-4] ISO 26000 체크리스트 구성 체계



자료: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Ⅲ.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81

전체 점수를 1,000점으로 했을 때 프로세스가 360점이고 성과가 640점으로 가중치가 구성되어 있다. 프로세스와 성과에 관한 설문 문항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양이 많기에 본문에 실기는 어려워 부록에 첨부한다. 대신 ISO 26000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설문 문항과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2〉 ISO 26000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설문 문항과의 관계
- 프로세스

단계	활 동 내 용	문항수	문제번호	ISO 26000 조항
1단계	사회적 책임 인식	5	Q1~Q5	3.3.1, 3.3.2, 5.1, 5.2
2단계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6	Q6~Q11	5.3.1, 5.3.2, 5.3.3, 3.3.3
3단계	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3	Q12~Q14	5.2.2, 5.2.3, 7.1, 7.2, 4.1~4.8
4단계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계획 수립	6	Q15~Q20	5.2.2, 5.2.3, 7.3.1~7.3.4
5단계	실행	4	Q21~Q24	7.4.1~7.4.3, 3.3.4
6단계	의사소통	4	Q25~Q28	7.5.1~7.5.4
7단계	검증	3	Q29~Q31	7.6.1~7.6.3
8단계	개선	5	Q32~Q36	7.7.1~7.7.5
계 : 36개 문항 (360점)				문항별 10점 만점

자료: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표 III-3〉 ISO 26000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설문 문항과의 관계
- 성과

핵심주제	쟁점	문항수	문제번호	ISO 26000 조항
기관 거버넌스		5	Q1~Q5	6.2
	소계	5문항	20점	
인권	실사	7	Q6~Q12	6.3.3
	인권 위협상황	2	Q13~Q14	6.3.4
	공모회피	2	Q15~Q16	6.3.5
	고충처리	3	Q17~Q19	6.3.6
	차별과 취약그룹	3	Q20~Q22	6.3.7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	Q23~Q26	6.3.8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2	Q27~Q28	6.3.9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6	Q29~Q34	6.3.10
	소계	29문항	116점	
노동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6	Q35~Q40	6.4.3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10	Q41~Q50	6.4.4
	사회적 대화	3	Q51~Q53	6.4.5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10	Q54~Q63	6.4.6
	근로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3	Q64~Q66	6.4.7
	소계	32문항	128점	
환경	오염 방지	10	Q67~Q76	6.5.3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11	Q77~Q87	6.5.4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5	Q88~Q92	6.5.5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9	Q93~Q101	6.5.6
	소계	35문항	140점	
공정운영 관행	반부패	5	Q102~Q106	6.6.3
	책임 있는 정치 참여	2	Q107~Q108	6.6.4
	공정 경쟁	6	Q109~Q114	6.6.5

〈표 III-3〉 ISO 26000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설문 문항과의 관계
- 성과(계속)

핵심주제	쟁점	문항수	문제번호	ISO 26000 조항
공정운영 관행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3	Q115~Q117	6.6.6
	재산권 존중	3	Q118~Q120	6.6.7
소계		19문항	76점	
소비자 이슈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와 계약관행	7	Q121~Q127	6.7.3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5	Q128~Q132	6.7.4
	지속가능소비	1	Q133	6.7.5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3	Q134~Q136	6.7.6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4	Q137~Q140	6.7.7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2	Q141~Q142	6.7.8
	교육과 인식	2	Q143~Q144	6.7.9
소계		24문항	96점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	2	Q145~Q146	6.8.3
	교육과 문화	4	Q147~Q150	6.8.4
	고용 창출과 기능 개발	4	Q151~Q154	6.8.5
	기술 개발과 접근성	2	Q155~Q156	6.8.6
	부와 소득 창출	1	Q157	6.8.7
	보건	1	Q158	6.8.8
	사회적 투자	2	Q159~Q160	6.8.9
소계		16문항	64점	
계 : 160개 문항 (640점)			문항별 4점 만점	

자료: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2011년 5월

1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자가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이론적 배경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실태를 발표하였고 동반성장위원회 정영태 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표준협회 정은주 팀장은 ISO 26000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당하였고 한국전력 김만철 부장은 한국전력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또는 유관 부서의 담당자 15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을 실시한 후, 2011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위하여 교육 자료를 이메일과 책자를 통하여 배포하였고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도 PDF로 게시하였다. 설문응답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담당자나 기관장 평가 담당자, 기획부서에서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없을 수도 있기에 기관장 평가 담당자나 기획 부서에 설문 응답을 요청했다. 설문응답자를 정한 것은 각 공공기관에서 기관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관리를 알 수 있는 담당자로 응답자를 한정하기 위해서였다.

285개 공공기관 설문회신 결과 공기업에서 응답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으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곳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46곳이 응답하지 않았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응답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있었고 전략적으로 거절한 기관도 있었다. 주무부처별로 보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공공기관들이 14기관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공공기관들이 각각 5기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들이 4기관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요 공공기관임에도 전략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중에서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담당하는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주무부처인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것은 향후 부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표 III-4〉 ISO 26000 이행수준 미응답 공공기관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 유형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토해양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경북대학교병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기초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한국고전번역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기타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기타공공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총리실	기타공공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총리실	기타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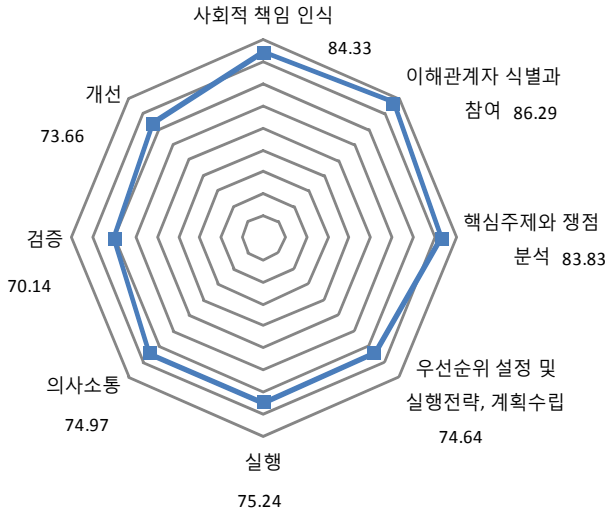
〈표 III-4〉 ISO 26000 이행수준 미응답 공공기관(계속)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 유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총리실	기타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기타공공기관
호국장학재단	국방부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국토해양부	기타공공기관
코레일로지스(주)	국토해양부	기타공공기관
코레일테크(주)	국토해양부	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토해양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	노동부	기타공공기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재)명동·정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기타공공기관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녹색사업단	산림청	기타공공기관
한국회귀의약품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공공기관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청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기타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청	기타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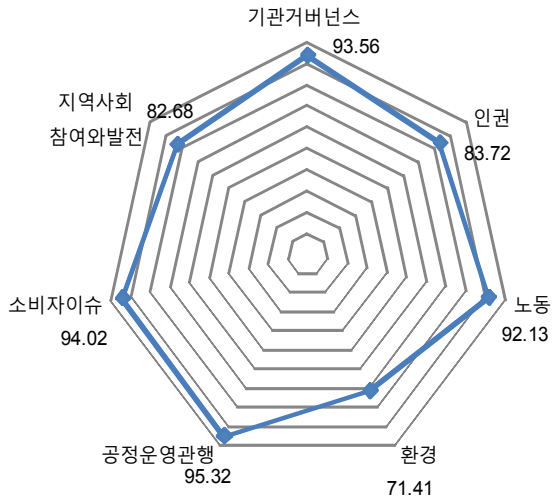
다.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 분석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공공기관 전체 평균은 82.88점으로 나왔는데 이 수준의 의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관 구성원의 인식 수준이 높고 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 활동의 전 단계에 사회적 책임 활동이 통합 운영되어 성과관리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여 시장형 공기업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타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시장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에 민감하고 정부의 사업을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낮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핵심 주제 중에서도 노동이나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는 점수가 높았지만 환경의 점수는 유독 낮게 나왔다. 이는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목표인 녹색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가 낮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조사결과이다. 특히 프로세스 진단결과를 보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으나 개선·검증·의사소통·실행 등 공공기관의 경영에 내재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그 성과도 환경·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인권 부문의 성과가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III-5] 프로세스 진단 현황



[그림 III-6] 성과 진단 현황



〈표 III-5〉 공공기관 유형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단위: %)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공공 기관
프로세스		92.46	87.52	81.01	80.66	73.25	77.64
성 과	기관거버 넌스	97.14	96.92	93.75	96.17	91.62	93.56
	인권	89.72	88.59	85.87	84.98	81.73	83.72
	노동	95.73	94.51	93.75	93.14	90.84	92.13
	환경	92.58	85.55	71.28	76.20	65.51	71.41
	공정운영 관행	96.61	97.73	96.85	96.00	94.43	95.32
	소비자이슈	95.14	96.03	95.81	95.19	92.94	94.02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94.06	94.19	82.20	85.61	79.01	82.68
평균점수		93.35	90.47	84.80	85.32	79.64	82.88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른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분류 기준으로 정원 500명 이상과 총수입 1천억원 이상을 사용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의 정원 500명 기준과 총수입 1천억원 기준은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므로 그것을 사용하였다. 결과에서는 기관의 조직 규모가 클수록 높은 득점률을 보였고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조직 규모에 따라 득점률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모델 개발 시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I-6〉 공공기관 규모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단위: %)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프로세스		83.06	77.30	81.85	72.55
성과	기관거버 넌스	95.51	90.00	95.00	91.98
	인권	89.35	83.88	84.14	80.03
	노동	94.95	91.63	93.06	90.02
	환경	83.86	71.81	74.06	62.54
	공정운영 관행	97.24	98.71	96.07	93.59
	소비자 이슈	94.15	97.05	94.06	93.73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90.63	83.13	85.17	76.68
평균점수		88.30	83.28	85.19	78.54

사업 특성에 따른 충족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별 분석 결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건설업’ 등의 충족률이 90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80점 이하로 낮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에너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의 충족률이 낮게 나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로 추정된다. 선진국에서 환경이나 노동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발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91

도상국가로 이전하는 산업이 제조업이나 에너지 분야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아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서비스업 등이 비교적 환경이나 노동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환경성과에서 ‘광업’과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이 90점 이상의 높은 충족률을 보였기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0년 발표한 국제적 상위 20개 산업부문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CorporateRegister.com 참조; 라영재 외, 2010 재인용) 순위를 볼 때 전기·화학·은행·운송·광업·석유가스·건설건축 순으로 나타남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산업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II-7〉 공공기관 산업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프로 세스	성과							총점
		기관 거버 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	
농업	82.50	100.00	79.24	93.55	85.75	92.72	87.78	90.63	86.14
광업	86.67	96.67	92.39	95.31	95.14	99.07	96.30	100.00	92.54
제조업	95.00	91.14	98.44	90.83	98.68	100.00	98.44	80.00	89.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27	95.00	88.65	95.05	91.77	96.05	95.64	91.13	90.9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2.59	96.67	86.70	94.76	92.02	96.35	97.92	100.00	89.86
건설업	84.56	98.00	94.49	96.50	86.38	97.78	94.52	93.75	90.31
도매 및 소매업	76.30	93.33	86.53	94.71	69.02	96.24	95.39	94.16	83.65
운수업	86.00	96.00	89.62	94.60	89.76	97.89	95.83	96.04	90.74

〈표 III-7〉 공공기관 산업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계속)

산업별 충족률	프로 세스	성과							총점
		기관 거버 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50	96.25	82.32	94.25	63.42	95.90	92.45	76.23	81.36
금융 및 보험업	77.20	92.17	86.40	95.27	71.05	95.93	94.24	84.07	83.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56	100.00	88.92	95.25	89.77	99.34	96.32	94.40	94.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02	90.59	82.06	92.16	69.41	94.98	92.59	80.69	81.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00	92.50	82.93	87.24	54.28	95.70	72.66	73.90	76.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29	95.80	80.46	89.23	63.67	93.79	95.76	76.69	79.92
교육 서비스업	77.04	100.00	81.13	92.19	54.86	94.41	98.82	80.97	80.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79	93.64	84.62	90.50	77.66	96.02	93.69	87.98	84.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3.43	91.67	85.79	90.64	73.77	94.63	93.51	85.16	81.7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1.11	85.00	74.10	83.41	44.87	93.11	94.84	66.71	76.90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적인 경영감시를 받지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정부부처로부터 사업관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무부처별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주무부처별 공공기관의 이해수준 분석결과를 보면,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의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방위사업청·특허청의 충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의 충족률은 낮지 않으나, 이번 설문 조사에 미응답한 공공기관이 많기에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정운영 관행’과 ‘소비자 이슈’, ‘인권’, ‘노동’,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지표와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이지만 사업관리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반면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로부터 사업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환경’ 성과에서 평균 이상의 충족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소관 주무부처의 정책을 위하여 다른 부처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공기관에서 해당 지표의 점수가 타 부처 공공기관보다 낮게 나온다면 타 부처 공공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담당 정책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 기관들에서는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표 III-8〉 공공기관 주무부처별 ISO 26000 이행수준 충족률

(단위: %)

	프로세스	성과							총점
		기관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	
경찰청	72.22	100.00	85.42	90.63	90.32	100.00	100.00	96.88	85.55
공정거래위원회	58.33	100.00	77.08	89.06	65.15	94.74	90.91	71.43	72.96
교육과학기술부	80.88	95.77	83.21	92.74	76.02	96.07	91.96	85.26	84.78
국가보훈처	57.22	90.00	86.21	93.75	83.33	94.74	96.67	92.86	78.49
국무총리실	69.39	86.84	79.97	89.85	53.77	91.82	91.65	68.10	75.15
국방부	54.44	40.00	58.33	77.42	63.16	86.84	83.33	78.57	65.55
국토해양부	84.10	94.23	88.22	93.21	77.73	97.67	95.91	90.11	87.61
금융위원회	79.49	92.73	87.68	95.52	67.07	95.75	93.78	84.44	83.94
기획재정부	61.85	83.33	91.29	98.29	61.45	93.06	83.33	86.67	76.33
노동부	77.39	93.00	82.67	89.72	71.48	96.52	97.42	87.95	83.12
농림부	75.74	96.67	84.74	92.56	73.71	97.49	96.94	81.88	83.15
농촌진흥청	77.78	100.00	84.48	93.55	82.86	92.11	93.75	84.38	84.77
문화재청	90.00	100.00	94.00	87.50	88.33	89.29	89.29	73.33	88.92
문화체육관광부	76.26	96.33	81.88	91.48	65.66	95.33	95.65	81.20	81.40
방통위	78.89	95.00	85.57	91.28	58.52	91.49	90.77	62.50	79.77
방위사업청	63.33	70.00	79.63	95.31	81.25	100.00	100.00	80.00	79.33
법무부	88.33	100.00	88.17	90.49	70.14	96.15	95.77	87.22	87.51
보건복지부	80.89	94.00	84.29	91.25	59.40	94.00	95.63	73.91	81.83

〈표 III-8〉 공공기관 주무부처별 ISO 26000 이행수준 총족률(계속)

	프로세스	성과							총점
		기관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	
여성 가족부	78.33	100.00	86.26	87.92	58.90	95.81	100.00	95.00	82.67
외교 통상부	74.81	76.67	81.64	86.30	56.35	97.32	96.15	74.81	78.29
중소 기업청	80.32	98.57	76.67	86.89	58.36	91.47	94.37	74.80	79.87
지식 경제부	78.56	93.45	84.14	93.52	81.49	95.29	92.69	85.45	84.90
특허청	61.67	100.00	77.31	92.81	47.31	96.05	98.21	78.33	73.41
행정 안전부	74.17	100.00	81.19	91.10	67.43	94.08	96.89	76.20	80.55
환경부	72.50	90.00	85.13	93.51	82.74	97.37	93.19	91.88	83.55
평균	77.64	93.56	83.72	92.13	71.41	95.32	94.02	82.68	82.88

1) 프로세스

설문문항은 크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프로세스와 성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프로세스 결과부터 분석을 하겠다.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성과에 비해서 프로세스 점수가 77.64로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이 평소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을 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공공기관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자선이나 봉사 활동 수준으로 좁게 해석하여 설문에 답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개별 지표별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 수립’과 ‘실행’, ‘의사소통’ ‘검증’, ‘개선’ 등에서 점수가 낮았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행이나 검증이 약하다는

의미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무부처의 통제에 의해서만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경영이 기관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경영모델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개별 설문 문항을 보게 되면 사회적 책임 인식에서는 4번 “기관은 업무 관련 사회적 책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족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현재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 수립’에서는 15번 “기관은 실사를 할 때,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역의 맥락을 고려하는가?”와 16번 “기관은 실사 프로세스에 다음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17번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관련성 있는 사회적 책임 쟁점을 정하는가?” 등에 대한 충족률이 낮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행’에서는 22번 “기관은 사회적 책임 실행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와 23번 “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기관 내에 통합하는가?”, 24번 “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등에서 그 충족률이 낮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 실행방법을 정교하게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기관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전담 부서를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는 26번 “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 활동을 보고하고 있는가?”에서 충족률이 낮게 나왔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구체적으로 단지 수행을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추진 예산 및 비용상의 문제로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검증’에서 30번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 보고서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충족률이 낮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 인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환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차이를 보게 되면, 시장형 공기업의 충족률이 그 중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에 있어서 높은 득점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의 특성상 이 곳은 주무부처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의사소통이나 검증에서도 공기업의 점수가 높게 나오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낮게 나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공공기관 유형별 프로세스 충족률

(단위: %)

지표 충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 형 공기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공공 기관	
사회적 책임 인식	1	94.29	95.38	86.25	93.33	85.74	88.79
	2	100.00	96.92	93.75	92.67	91.94	93.02
	3	98.57	95.38	85.00	91.00	88.22	89.74
	4	90.00	84.62	75.00	70.33	64.81	69.57
	5	94.29	95.38	88.75	85.67	74.11	80.52

〈표 III-9〉 공공기관 유형별 프로세스 충족률(계속)

지표 충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 형 공기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공공 기관
이해 관계자 식별과 참여	6	98.57	100.00	95.00	96.67	90.71	93.57
	7	92.86	92.31	88.75	91.67	82.66	86.58
	8	90.00	90.77	82.50	83.33	77.50	80.87
	9	95.71	93.85	88.75	94.67	83.28	87.97
	10	90.00	87.69	82.50	89.00	78.28	82.60
	11	94.29	96.92	93.75	89.00	81.88	86.15
핵심주제 와 쟁점 분석	12	98.57	95.38	80.00	89.67	78.45	83.62
	13	92.86	90.77	80.00	81.67	76.59	79.91
	14	95.71	93.85	88.75	91.00	85.00	87.97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15	92.86	72.31	68.75	75.33	70.00	72.81
	16	90.00	69.23	66.25	70.67	65.98	68.87
	17	87.14	78.46	71.25	71.00	70.63	72.21
	18	92.86	89.23	81.25	80.67	74.38	78.44
	19	87.14	83.08	81.25	77.67	71.56	75.41
	20	87.14	86.15	81.25	78.67	79.22	80.09
실행	21	90.00	90.77	83.75	81.33	71.47	77.07
	22	91.43	89.23	78.75	77.33	69.30	74.48
	23	92.86	84.62	77.50	76.67	72.87	76.03
	24	91.43	81.54	77.50	74.67	69.46	73.36
의사소통	25	92.86	90.77	90.00	86.00	78.29	82.67
	26	91.43	75.38	73.75	69.00	61.86	67.07
	27	90.00	81.54	82.50	74.67	68.59	73.16
	28	91.43	86.15	85.00	80.67	71.78	76.98
검증	29	90.00	86.15	77.50	77.33	69.30	74.14
	30	88.57	75.38	61.25	58.67	59.69	62.17
	31	87.14	87.69	80.00	76.33	69.53	74.11
개선	32	92.86	81.54	75.00	73.67	65.20	70.70
	33	92.86	80.00	72.50	67.67	64.44	68.47
	34	92.86	87.69	83.75	78.33	76.83	79.30
	35	92.86	93.85	77.50	77.67	71.90	76.33
	36	97.14	90.77	81.25	80.00	64.96	73.51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99

공공기관 조직 규모별로 프로세스 충족률을 분석하면 조직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충족률이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충족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총수입이 높은 기관이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앞서 분석했던 유형별 차이에 비하여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아, 시장성에 따라서 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프로세스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0〉 공공기관 규모별 프로세스 충족률

(단위: %)

지표 충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사회적 책임 인식	1	90.14	88.57
	2	93.91	85.71	95.22	92.00
	3	91.01	82.86	90.87	88.91
	4	74.20	68.57	76.09	64.00
	5	85.80	74.29	90.00	73.64
이해 관계자 식별과 참여	6	96.81	94.29	94.78	90.93
	7	89.86	77.14	90.87	83.30
	8	84.35	68.57	87.83	76.51
	9	91.30	94.29	90.43	84.40
	10	86.67	80.00	85.22	79.08
	11	90.14	94.29	86.09	83.12
핵심 주제와 쟁점 분석	12	89.57	91.43	84.78	78.91
	13	82.03	82.86	84.78	76.36
	14	91.88	88.57	91.74	83.85

〈표 III-10〉 공공기관 규모별 프로세스 총족률(계속)

지표 총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15	76,81	80,00	75,65	68,62
	16	73,91	68,57	70,00	65,19
	17	73,91	77,14	74,78	69,72
	18	80,87	74,29	84,78	74,50
	19	78,84	80,00	81,74	70,28
	20	79,71	80,00	88,70	76,70
실행	21	84,93	68,57	82,61	70,36
	22	80,58	62,86	79,13	69,45
	23	79,71	77,14	81,30	71,45
	24	77,97	68,57	77,83	68,91
의사소통	25	87,25	82,86	86,96	78,00
	26	72,17	57,14	73,04	62,00
	27	79,13	62,86	75,65	68,99
	28	83,48	80,00	80,43	71,27
검증	29	80,29	71,43	76,09	69,64
	30	72,17	74,29	61,30	55,37
	31	80,87	82,86	78,70	67,34
개선	32	78,55	74,29	73,48	64,26
	33	79,42	71,43	67,83	61,50
	34	84,35	82,86	80,87	75,14
	35	86,09	77,14	77,39	69,53
	36	81,45	57,14	77,83	67,55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충족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주로 공해 산업 또는 토목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프로세스 충족률이 높게 나온 것은 사업수행에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했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표 III-11〉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인식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	2	3	4	5
농업	90.00	100.00	100.00	3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73.33	93.33
제조업	90.00	70.00	80.00	50.00	8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5.00	100.00	98.33	83.33	86.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86.67	86.67	93.33
건설업	88.00	92.00	88.00	88.00	92.00
도매 및 소매업	86.67	93.33	73.33	66.67	93.33
운수업	92.00	96.00	92.00	88.00	88.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50	82.50	87.50	72.50	87.50
금융 및 보험업	80.00	92.17	86.09	70.43	76.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7.5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8.82	93.53	88.24	67.06	77.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5.00	100.00	75.00	70.00	6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0.00	90.00	88.40	61.20	78.00
교육 서비스업	86.67	100.00	100.00	80.00	8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36	94.55	96.36	63.64	81.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1.82	90.91	90.91	72.73	81.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0.00	80.00	80.00	60.00	60.00

〈표 Ⅲ-12〉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6	7	8	9	10	11
농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광업	100.00	93.33	66.67	93.33	86.67	100.00
제조업	90.00	90.00	90.00	70.00	8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91.67	90.00	90.00	88.33	98.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93.33	100.00	93.33	100.00	73.33
건설업	100.00	84.00	80.00	88.00	84.00	84.00
도매 및 소매업	80.00	93.33	80.00	73.33	80.00	66.67
운수업	96.00	88.00	96.00	96.00	80.00	92.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5.00	90.00	77.50	92.50	77.50	82.50
금융 및 보험업	93.91	86.96	80.87	86.96	81.74	84.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7.50	100.00	100.00	97.50	95.00	9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2.42	87.46	81.49	84.48	82.09	81.4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0.00	60.00	60.00	90.00	65.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2.00	83.20	77.20	91.60	82.80	88.40
교육 서비스업	93.33	86.67	83.33	96.67	83.33	9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36	85.45	76.36	83.64	80.00	98.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6.36	87.27	83.64	96.36	85.45	92.7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0.00	100.00	70.00	70.00	90.00	40.00

〈표 III-13〉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총족률

(단위: %)

산업별 총족률	12	13	14
농업	100.00	80.00	100.00
광업	93.33	93.33	93.33
제조업	80.00	80.00	8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3.33	88.33	95.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6.67	80.00	86.67
건설업	88.00	92.00	92.00
도매 및 소매업	93.33	80.00	100.00
운수업	96.00	88.00	92.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5.00	75.00	85.00
금융 및 보험업	79.13	76.52	85.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7.50	95.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9.41	78.24	84.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0.00	80.00	8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8.80	78.00	87.60
교육 서비스업	86.67	83.33	9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4.55	76.36	92.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27	81.82	8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70.00	90.00

〈표 III-14〉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총족률

(단위: %)

산업별 총족률	15	16	17	18	19	20
농업	90.00	90.00	80.00	100.00	90.00	90.00
광업	86.67	73.33	66.67	86.67	80.00	73.33
제조업	70.00	70.00	70.00	80.00	80.00	9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5.00	80.00	81.67	83.33	81.67	85.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3.33	73.33	73.33	93.33	93.33	93.33
건설업	72.00	68.00	84.00	84.00	80.00	88.00
도매 및 소매업	73.33	60.00	86.67	86.67	66.67	66.67
운수업	80.00	80.00	72.00	88.00	80.00	88.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2.50	62.50	67.50	77.50	67.50	77.50
금융 및 보험업	70.43	69.57	66.09	74.78	75.65	76.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00	95.00	95.00	97.50	95.00	9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54	68.96	72.84	77.31	73.43	78.5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00	65.00	70.00	80.00	80.00	8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9.20	66.12	68.40	75.20	73.60	76.80
교육 서비스업	43.33	40.00	53.33	80.00	70.00	8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4.55	61.82	70.91	67.27	65.45	83.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2.73	70.91	78.18	80.00	76.36	8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0.00	70.00	80.00	90.00	80.00	90.00

〈표 III-15〉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실행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21	22	23	24
농업	90.00	80.00	90.00	70.00
광업	93.33	86.67	86.67	80.00
제조업	80.00	80.00	80.00	8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1.67	83.33	86.67	83.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0.00	73.33	73.33	66.67
건설업	84.00	76.00	80.00	84.00
도매 및 소매업	80.00	73.33	93.33	86.67
운수업	88.00	92.00	84.00	84.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2.50	82.50	67.50	72.50
금융 및 보험업	80.00	74.78	75.65	74.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2.50	90.00	92.50	9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65	72.65	74.41	71.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00	75.00	75.00	7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3.60	66.40	71.20	67.60
교육 서비스업	76.67	76.67	76.67	7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00	74.55	80.00	72.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1.82	78.18	72.73	76.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0.00	90.00	90.00	90.00

〈표 III-16〉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의사소통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25	26	27	28
농업	80.00	70.00	80.00	90.00
광업	100.00	80.00	93.33	93.33
제조업	80.00	80.00	80.00	8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5.00	85.00	86.67	88.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3.33	66.67	66.67	86.67
건설업	76.00	68.00	84.00	84.00
도매 및 소매업	80.00	93.33	73.33	86.67
운수업	88.00	80.00	76.00	8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0.00	67.50	70.00	77.50
금융 및 보험업	86.96	67.83	74.78	78.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92.50	95.00	92.50	9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9.41	60.59	71.04	74.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0.00	40.00	50.00	7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0.80	64.40	68.40	71.60
교육 서비스업	83.33	63.33	76.67	7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82	65.45	74.55	78.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9.09	72.73	76.36	8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00	100.00	80.00	80.00

〈표 III-17〉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검증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29	30	31
농업	80.00	30.00	70.00
광업	80.00	80.00	80.00
제조업	80.00	80.00	8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6.67	78.33	85.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6.67	46.67	66.67
건설업	88.00	88.00	84.00
도매 및 소매업	73.33	60.00	73.33
운수업	80.00	80.00	8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50	62.50	77.50
금융 및 보험업	73.91	59.13	78.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00	92.50	9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8.24	55.82	69.8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5.00	65.00	7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2.80	59.59	71.20
교육 서비스업	80.00	53.33	7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18	60.00	72.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0.91	65.45	74.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0.00	80.00	90.00

〈표 III-18〉 공공기관 산업별 프로세스-개선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32	33	34	35	36
농업	90.00	50.00	70.00	60.00	30.00
광업	80.00	80.00	86.67	86.67	80.00
제조업	70.00	90.00	90.00	80.00	8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5.00	78.33	83.33	81.67	88.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6.67	53.33	73.33	66.67	86.67
건설업	76.00	80.00	88.00	88.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60.00	26.67	73.33	60.00	53.33
운수업	88.00	80.00	84.00	84.00	8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2.50	65.00	80.00	82.50	80.00
금융 및 보험업	72.17	67.83	74.78	77.39	68.7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2.50	97.50	100.0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5.97	64.55	77.27	71.21	69.8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5.00	80.00	80.00	85.00	9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8.57	64.49	76.33	73.47	73.06
교육 서비스업	56.67	70.00	83.33	73.33	6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91	83.64	89.09	81.82	52.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7.27	69.09	76.36	85.45	7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0.00	60.00	90.00	80.00	100.00

2) 성과

가) 조직 거버넌스

조직 거버넌스는 총 5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충족률은 전부 80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프로세스의

충족률이 낮게 나온 데 반하여 조직 거버넌스 성과가 높게 나왔다는 의미는 기관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전반적인 충족률이 높게 나왔기에 유형별 분석이나 규모별 분석·산업별 분석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공공기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적 성과를 주로 평가하는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 거버넌스는 구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9〉 공공기관 유형별 조직 거버넌스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	100.00	96.15	93.75	98.33	96.54	97.00
2	100.00	96.15	96.88	97.50	96.15	96.78
3	89.29	96.15	93.75	93.33	87.31	89.91
4	96.43	96.15	90.63	93.33	86.54	89.70
5	100.00	100.00	93.75	98.33	91.54	94.42

〈표 III-20〉 공공기관 규모별 조직 거버넌스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1	97.10	100.00	97.83	96.40
2	96.38	100.00	95.65	97.30
3	92.03	71.43	92.39	88.74
4	94.20	92.86	92.39	85.59
5	97.83	85.71	96.74	91.89

〈표 III-21〉 공공기관 산업별 조직 거버넌스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	2	3	4	5
농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95.83	87.50	91.67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건설업	100.00	100.00	100.00	9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83.33	100.00	83.33
운수업	100.00	100.00	80.0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100.00	81.25	100.00	100.00
금융 및 보험업	91.30	93.48	93.48	89.13	93.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32	94.85	86.03	86.03	89.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87.50	75.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8.00	99.00	95.00	91.00	96.00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5.45	95.45	86.36	95.45	95.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83	95.83	87.50	83.33	95.8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75.00	75.00	75.00

나) 인권

인권은 총 29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설문 중에서는 9번 “기관의 실사관리 수준은 어떠한가?”와 10번 “기관은 실사를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가?”, 11번 기관은 협력업체 선정과 관리 시 “인권기준을 반영하고 활용하는가?”, 12번 기관은 협력사 등 다른

기관이 인권 존중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도록 있는가?”, 14번 “기관은 인권 위험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에서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10번과 11번, 12번 질문은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들 질문에 대한 충족률이 낮다는 것은 그 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였으나, 하청업체·외주업체 등 협력사에 대한 인권보호의 문제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수성, 공적 책임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관리는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차이에 있어 14번 “기관은 인권 위험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하여 시장형 공기업은 80점 이상의 충족률을 보였지만 다른 유형의 기관들은 낮은 충족률을 보여 시장성에 따라 실사 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평판을 의식하여 시장형 공기업들이 인권 실사 정책을 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19번 “기관은 인권 고충처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와 22번 “기관은 다음 사항을 차별금지 규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33번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충족률이 낮게 나오는데 공공기관 규모가 작아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III-22〉 공공기관 유형별 인권 충족률

(단위: %)

총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6	100.00	96.15	100.00	95.83	93.85	95.28
7	96.43	88.89	84.62	82.00	83.33	84.34
8	92.86	100.00	86.36	82.22	85.63	85.99
9	89.29	75.00	75.00	67.44	65.63	69.35
10	16.67	56.25	0.00	20.31	11.21	16.39
11	50.00	72.22	33.33	32.81	41.67	41.87
12	71.43	61.54	56.25	63.56	65.12	64.29
13	92.86	88.46	87.50	85.00	75.38	80.47
14	85.71	65.38	59.38	60.83	57.69	60.73
15	96.43	92.31	87.50	93.33	83.08	87.34
16	89.29	84.62	84.38	79.17	73.85	77.47
17	89.29	84.62	75.00	80.51	74.23	77.37
18	100.00	92.31	93.75	95.83	92.69	93.99
19	82.14	92.31	84.38	85.83	77.31	81.12
20	100.00	100.00	100.00	100.00	97.69	98.71
21	96.43	96.15	90.63	91.67	85.00	88.41
22	85.71	92.31	81.25	80.83	74.42	78.23
23	96.43	92.31	96.88	95.00	92.31	93.56
24	96.43	92.31	96.88	91.67	88.85	90.77
25	92.86	100.00	100.00	98.33	98.46	98.28
26	92.86	84.62	81.25	83.33	79.62	81.76
27	92.86	88.46	100.00	95.00	90.38	92.27
28	100.00	88.46	93.75	85.83	83.85	86.27
29	96.43	96.15	84.38	90.00	91.15	90.99
30	96.43	100.00	100.00	94.17	95.00	95.49
31	100.00	92.31	96.88	95.00	91.86	93.13
32	100.00	100.00	100.00	99.17	92.69	95.71
33	89.29	92.31	96.88	85.83	74.62	80.90
34	100.00	100.00	100.00	95.83	96.54	97.00

조직 규모별 분석에서는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권 성과의 충족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인권 성과의 충족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의 22번과 33번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충족률이 낮게 나왔는데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도 두 설문문의 충족률이 낮게 나왔다.

〈표 Ⅲ-23〉 공공기관 규모별 인권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6	97.83	100.00	95.65	93.24
7	95.61	100.00	84.72	75.30
8	97.17	100.00	85.71	77.08
9	88.68	100.00	69.35	51.52
10	21.74	0.00	11.36	14.89
11	50.00	0.00	38.00	38.04
12	67.65	64.29	60.87	63.64
13	91.30	71.43	83.70	72.97
14	76.09	57.14	58.70	52.25
15	93.48	92.86	89.13	82.43
16	88.41	64.29	79.35	70.72
17	83.82	78.57	75.00	74.32
18	97.83	92.86	94.57	91.44
19	91.30	71.43	86.96	72.97
20	100.00	92.86	97.83	98.65
21	94.20	92.86	88.04	84.68
22	83.33	85.71	85.56	71.62
23	97.83	100.00	90.22	91.89
24	95.65	92.86	92.39	86.94
25	98.55	100.00	97.83	98.20
26	90.58	71.43	79.35	77.93
27	95.65	92.86	91.30	90.54
28	94.93	92.86	85.87	80.63
29	90.58	78.57	94.57	90.54
30	98.55	85.71	95.65	94.14
31	97.10	78.57	93.48	91.44
32	97.83	100.00	95.65	94.14
33	89.86	85.71	85.87	72.97
34	97.10	100.00	95.65	97.30

산업별 분석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충족률이 낮게 분석되었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의 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보건과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인권 성과 충족률이 낮게 나온 것은 인식 수준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인권 인식 수준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I-24〉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6~12)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6	7	8	9	10	11	12
농업	100.00	75.00	100.00	100.00	0.00	50.00	50.00
광업	100.00	83.33	100.00	33.33	33.33	100.00	66.67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75.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95.83	91.67	83.33	16.67	45.00	70.8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66.67	0.00	0.00	66.67
건설업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62.50	8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50.00	0.00	25.00	50.00
운수업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40.00	9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75.00	75.00	37.50	0.00	21.43	50.00
금융 및 보험업	97.83	88.24	96.15	88.46	7.14	43.75	67.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92.86	83.33	83.33	16.67	58.33	7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38	86.27	88.04	67.39	20.00	48.44	63.4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83.33	100.00	75.00	0.00	25.00	5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2.00	73.75	75.00	60.34	15.63	29.55	61.22
교육 서비스업	100.00	90.00	80.00	50.00	0.00	25.00	6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5.45	86.36	87.50	70.00	0.00	33.33	63.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50	83.33	90.00	80.00	33.33	50.00	62.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50.00	50.00	50.00	0.00	25.00	50.00

〈표 III-25〉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13~19)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3	14	15	16	17	18	19
농업	50.00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광업	100.00	66.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75.00	75.00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1.67	83.33	91.67	87.50	87.50	100.00	83.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66.67	100.00	83.33	66.67	83.33	33.33
건설업	100.00	60.00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83.33	50.00	66.67	83.33	83.33	100.00	100.00
운수업	90.00	80.00	100.00	80.00	80.00	90.00	7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00	56.25	93.75	93.75	81.25	100.00	87.50
금융 및 보험업	86.96	63.04	84.78	84.78	76.09	93.48	82.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3.75	75.00	93.75	93.75	87.5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15	61.76	84.56	73.53	71.32	94.85	83.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2.50	50.00	87.50	75.00	100.00	87.50	87.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1.00	51.00	85.00	67.00	72.45	91.00	75.00
교육 서비스업	83.33	66.67	83.33	50.00	83.33	91.67	9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7.27	50.00	86.36	81.82	72.73	100.00	86.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33	58.33	87.50	83.33	83.33	91.67	70.8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00	50.00	100.00	75.00	100.00	75.00	50.00

〈표 III-26〉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20~26)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20	21	22	23	24	25	26
농업	100.00	75.00	25.00	75.00	75.00	75.00	75.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95.83	87.50	95.83	87.50	91.67	87.5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66.67
운수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9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100.00	93.75	100.00	93.75	100.00	75.00
금융 및 보험업	100.00	86.96	82.61	95.65	91.30	97.83	82.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81.25	100.00	93.75	100.00	93.75	87.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79	86.03	66.91	91.18	88.97	100.00	81.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75.00	75.00	100.00	100.00	100.00	87.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7.00	84.00	80.61	91.00	87.00	98.00	77.00
교육 서비스업	100.00	75.00	66.67	91.67	91.67	91.67	6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95.45	77.27	100.00	100.00	100.00	86.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95.83	87.50	95.83	87.50	100.00	83.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75.00	50.00	75.00	75.00	100.00	75.00

〈표 III-27〉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27~34)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27	28	29	30	31	32	33	34
농업	100.00	75.00	75.00	75.00	100.00	100.00	75.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1.67	100.00	100.00	95.83	95.83	100.00	87.50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건설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운수업	100.00	100.00	80.00	90.00	80.00	100.00	9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81.25	87.50	100.00	93.75	100.00	87.50	100.00
금융 및 보험업	93.48	84.78	86.96	100.00	95.65	100.00	97.83	97.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93.75	93.75	100.00	87.50	93.75	87.50	93.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7.50	83.09	94.12	95.59	92.65	93.38	72.06	95.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62.50	87.50	100.00	100.00	87.50	75.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0.00	82.00	90.00	94.00	94.00	95.00	78.00	97.00
교육 서비스업	91.67	83.33	91.67	91.67	83.33	100.00	83.33	9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5.45	100.00	86.36	90.91	90.91	95.45	90.91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83	95.83	91.67	95.83	91.67	91.67	79.17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75.00	75.00	100.00	100.00	50.00	100.00

인권의 성과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된 문항은 7번과 8번, 9번, 10번, 11번 문항인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협력업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공공기관 스스로가 실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차이에 있어 7번과 8번, 9번, 11번 문항에서 시장형 공기업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지 않았지만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있다. 시장성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시장형 공기업은 필수적으로 인권에 대한 구체적 실사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수입이 아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일수록 정부의 관련 지침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III-28〉 공공기관 인권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6	0.00	0.00	0.00	0.00	0.00	0.00
7	0.00	30.77	18.75	16.67	26.15	21.89
8	0.00	46.15	31.25	25.00	38.46	32.62
9	0.00	38.46	37.50	28.33	38.46	33.48
10	14.29	38.46	43.75	46.67	55.38	48.93
11	7.14	30.77	43.75	46.67	53.85	47.21
12	0.00	0.00	0.00	1.67	0.77	0.86
13	0.00	0.00	0.00	0.00	0.00	0.00
14	0.00	0.00	0.00	0.00	0.00	0.00
15	0.00	0.00	0.00	0.00	0.00	0.00
16	0.00	0.00	0.00	0.00	0.00	0.00
17	0.00	0.00	0.00	1.67	0.00	0.43

〈표 Ⅲ-28〉 공공기관 인권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계속)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8	0.00	0.00	0.00	0.00	0.00	0.00
19	0.00	0.00	0.00	0.00	0.00	0.00
20	0.00	0.00	0.00	0.00	0.00	0.00
21	0.00	0.00	0.00	0.00	0.00	0.00
22	0.00	0.00	0.00	0.00	0.77	0.43
23	0.00	0.00	0.00	0.00	0.00	0.00
24	0.00	0.00	0.00	0.00	0.00	0.00
25	0.00	0.00	0.00	0.00	0.00	0.00
26	0.00	0.00	0.00	0.00	0.00	0.00
27	0.00	0.00	0.00	0.00	0.00	0.00
28	0.00	0.00	0.00	0.00	0.00	0.00
29	0.00	0.00	0.00	0.00	0.00	0.00
30	0.00	0.00	0.00	0.00	0.00	0.00
31	0.00	0.00	0.00	0.00	0.77	0.43
32	0.00	0.00	0.00	0.00	0.00	0.00
33	0.00	0.00	0.00	0.00	0.00	0.00
34	0.00	0.00	0.00	0.00	0.00	0.00

조직 규모별 차이에 있어 규모가 클수록 인권 실사 수준이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인권 실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조직 규모에 따라서 인권실사 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I-29〉 공공기관 규모별 인권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6	0.00	0.00	0.00	0.00
7	17.39	14.29	21.74	25.23
8	23.19	42.86	39.13	35.14
9	23.19	28.57	32.61	40.54
10	33.33	42.86	52.17	57.66
11	28.99	57.14	45.65	58.56
12	1.45	0.00	0.00	0.90
13	0.00	0.00	0.00	0.00
14	0.00	0.00	0.00	0.00
15	0.00	0.00	0.00	0.00
16	0.00	0.00	0.00	0.00
17	1.45	0.00	0.00	0.00
18	0.00	0.00	0.00	0.00
19	0.00	0.00	0.00	0.00
20	0.00	0.00	0.00	0.00
21	0.00	0.00	0.00	0.00
22	0.00	0.00	2.17	0.00
23	0.00	0.00	0.00	0.00
24	0.00	0.00	0.00	0.00
25	0.00	0.00	0.00	0.00
26	0.00	0.00	0.00	0.00
27	0.00	0.00	0.00	0.00
28	0.00	0.00	0.00	0.00
29	0.00	0.00	0.00	0.00
30	0.00	0.00	0.00	0.00
31	0.00	14.29	0.00	0.00
32	0.00	0.00	0.00	0.00
33	0.00	0.00	0.00	0.00
34	0.00	0.00	0.00	0.00

산업별 분석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광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해당사항 없음 비율이 낮게 나왔다.

에너지 공기업이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대응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표 III-30〉 공공기관 산업별 인권(6~12)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6	7	8	9	10	11	12
농업	0.00	17.39	23.19	23.19	33.33	28.99	1.45
광업	0.00	0.00	33.33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50.00	50.00	50.00	5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0.00	0.00	0.00	25.00	16.67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33.33	33.33	0.00	33.33	66.67	0.00
건설업	0.00	40.00	40.00	40.00	40.00	20.00	0.00
도매 및 소매업	0.00	66.67	66.67	66.67	66.67	33.33	0.00
운수업	0.00	0.00	20.00	0.00	0.00	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	0.00	0.00	0.00	25.00	12.50	0.00
금융 및 보험업	0.00	26.09	43.48	43.48	39.13	65.22	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12.50	25.00	25.00	25.00	25.0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	25.00	32.35	32.35	48.53	52.94	1.4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25.00	50.00	50.00	50.00	50.00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20.00	32.00	42.00	68.00	56.00	2.00
교육 서비스업	0.00	16.67	16.67	33.33	50.00	66.67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0.00	27.27	9.09	36.36	45.45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50.00	58.33	58.33	75.00	41.67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50.00	50.00	50.00	50.00	0.00	0.00

다) 노동관행

노동관행은 32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1번 “최근 3년 동안 기관 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와 62번 “기관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는 어떤 경향인가?”의 충족률이 낮게 나와 기관의 안전관리 성과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63번 “기관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족률이 높게 나와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나,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는 64번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낮은 충족률을 보이는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도 공기업처럼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I-34〉 공공기관 유형별 노동관행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35	96.43	100.00	96.88	98.33	95.38	96.57
36	92.86	80.77	93.75	99.17	98.08	96.78
37	100.00	100.00	96.88	92.50	91.15	92.92
38	96.43	100.00	100.00	95.00	90.77	93.35
39	100.00	100.00	100.00	96.67	98.08	98.07
40	100.00	100.00	100.00	100.00	99.62	99.79
41	100.00	100.00	100.00	100.00	99.62	99.79
42	100.00	100.00	96.88	100.00	100.00	99.79
43	100.00	96.15	100.00	100.00	99.23	99.36
44	100.00	100.00	100.00	98.33	99.62	99.36
45	100.00	100.00	100.00	99.17	97.69	98.50
46	92.86	96.15	96.88	90.00	77.69	84.12
47	100.00	100.00	93.75	97.50	95.38	96.35

〈표 III-34〉 공공기관 유형별 노동관행 총족률(계속)

총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48	82.14	80.77	68.75	74.17	70.00	72.32
49	100.00	96.15	100.00	96.67	92.31	94.64
50	100.00	100.00	100.00	99.17	98.85	99.14
51	100.00	95.83	100.00	100.00	98.71	99.05
52	89.29	96.15	100.00	94.92	96.67	95.95
53	85.71	91.67	96.88	99.14	97.39	96.74
54	100.00	100.00	100.00	98.33	98.46	98.71
55	100.00	92.31	100.00	98.33	97.69	97.85
56	96.43	95.83	85.71	88.18	91.07	90.58
57	100.00	100.00	96.88	99.17	97.69	98.28
58	100.00	100.00	100.00	100.00	98.08	98.93
59	96.43	76.92	78.13	80.83	76.54	78.97
60	96.43	92.31	81.25	86.67	78.46	82.62
61	76.92	66.67	86.67	80.51	80.18	79.76
62	79.17	77.78	71.43	71.43	71.43	72.56
63	96.43	95.45	90.91	86.54	85.57	87.57
64	85.71	88.46	71.88	72.50	65.89	70.47
65	100.00	100.00	100.00	100.00	96.92	98.28
66	96.43	100.00	81.25	79.17	68.08	75.32

노동관행 성과 46번 “기관의 복지 운영 수준은 어떠한가?”와 59번 “기관은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가?”, 64번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66번 “기관은 개인의 역량 제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등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의 총족률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수입이 적어서 규모가 큰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III-35〉 공공기관 규모별 노동관행 총족률

(단위: %)

총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35	97.10	100.00	96.74	95.95
36	94.20	100.00	98.91	97.30
37	98.55	100.00	90.22	90.09
38	97.10	92.86	94.57	90.54
39	99.28	100.00	96.74	97.75
40	100.00	100.00	100.00	99.55
41	100.00	100.00	98.91	100.00
42	100.00	100.00	98.91	100.00
43	99.28	100.00	100.00	99.10
44	100.00	100.00	100.00	98.65
45	100.00	100.00	97.83	97.75
46	95.65	71.43	90.22	75.23
47	97.83	100.00	97.83	94.59
48	78.26	64.29	72.83	68.92
49	97.83	100.00	93.48	92.79
50	100.00	100.00	96.74	99.55
51	99.28	92.86	100.00	98.95
52	94.93	100.00	96.51	96.12
53	94.93	100.00	98.81	96.91
54	100.00	100.00	98.91	97.75
55	100.00	92.86	96.74	97.30
56	90.77	91.67	90.70	90.32
57	100.00	100.00	98.91	96.85
58	100.00	100.00	100.00	97.75
59	88.41	78.57	80.43	72.52
60	92.03	85.71	88.04	74.32
61	66.92	85.71	89.29	83.85
62	75.00	70.00	73.91	69.39
63	97.58	85.71	88.57	79.63
64	86.96	57.14	65.56	63.06
65	100.00	92.86	98.91	97.30
66	91.30	64.29	81.52	63.51

산업별로 비교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전반적인 충족률이 95% 이상으로 높으나 설문문항마다 차이가 있다. 근무환경과 안전사고 관련된 문항인 48번과 61번, 62번에 대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의 충족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산업 특성상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표 III-36〉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35~40)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35	36	37	38	39	40
농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91.67	100.00	95.83	100.00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운수업	90.00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50	100.00	100.00	93.75	100.00	100.00
금융 및 보험업	100.00	97.83	97.83	100.00	100.00	1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93.75	87.50	93.75	93.75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06	99.26	92.65	93.38	99.26	10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3.00	95.00	86.00	90.00	94.00	99.00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91.67	83.33	10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95.45	95.45	95.45	100.00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83	95.83	95.83	95.83	100.00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25.00	75.00	75.00	100.00

〈표 III-37〉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41~50)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농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66.67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5.83	100.00	79.17	100.00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6.67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66.67	100.00	100.00
운수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0.00	100.00	70.0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1.25	100.00	100.00
금융 및 보험업	100.00	97.83	100.00	100.00	100.00	91.30	95.65	80.43	100.00	1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3.75	100.00	87.5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98.53	98.53	86.03	98.53	72.06	88.97	98.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2.50	75.00	62.50	100.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9.00	100.00	98.00	99.00	96.00	74.00	92.00	65.00	93.00	98.00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1.67	100.00	75.00	91.67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8.18	100.00	68.18	95.45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95.83	83.33	87.50	66.67	100.00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50.00	100.00	100.00

〈표 III-38〉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1~53)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51	52	53
농업	100.00	100.00	100.00
광업	100.00	83.33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87.50	83.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건설업	100.00	9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83.33	100.00
운수업	100.00	100.00	9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93.75	93.75
금융 및 보험업	100.00	97.62	1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50	96.21	98.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87.50	87.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8.84	98.86	96.51
교육 서비스업	100.00	91.67	9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100.00	95.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95.83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표 III-39〉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4~63) 총족률

(단위: %)

산업별 총족률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농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6.67	100.00	83.33	83.33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7.50	95.83	75.00	79.17	91.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83.33	83.33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90.00	70.00	75.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83.33	50.00	83.33
운수업	100.00	100.00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62.50	87.5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93.75	100.00	87.50	37.50	81.25
금융 및 보험업	100.00	100.00	100.00	97.83	100.00	86.96	84.78	88.89	71.43	87.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3.75	93.75	81.25	66.67	93.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06	96.32	90.83	99.26	100.00	77.94	80.15	78.33	76.19	87.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62.50	75.00	66.67	83.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8.00	97.00	88.37	94.00	95.00	67.00	78.00	81.40	67.50	77.94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83.33	83.33	91.67	50.00	8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95.45	90.00	100.00	100.00	81.82	77.27	65.00	68.75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95.83	83.33	100.00	100.00	70.83	79.17	79.17	70.00	86.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50.00	50.00

노동관행 성과 설문 중 62번과 63번 설문의 해당사항 없음 비율이 높는데 안전 사고 관리 방지 노력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차후 사회적 책임 경영 모델을 만들 때 검토 대상이 될 필요도 있다.

〈표 III-40〉 공공기관 유형별 노동관행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35	0.00	0.00	0.00	0.00	0.00	0.00
36	0.00	0.00	0.00	0.00	0.00	0.00
37	0.00	0.00	0.00	0.00	0.00	0.00
38	0.00	0.00	0.00	0.00	0.00	0.00
39	0.00	0.00	0.00	0.00	0.00	0.00
40	0.00	0.00	0.00	0.00	0.00	0.00
41	0.00	0.00	0.00	0.00	0.00	0.00
42	0.00	0.00	0.00	0.00	0.00	0.00
43	0.00	0.00	0.00	0.00	0.00	0.00
44	0.00	0.00	0.00	0.00	0.00	0.00
45	0.00	0.00	0.00	0.00	0.00	0.00
46	0.00	0.00	0.00	0.00	0.00	0.00
47	0.00	0.00	0.00	0.00	0.00	0.00
48	0.00	0.00	0.00	0.00	0.00	0.00
49	0.00	0.00	0.00	0.00	0.00	0.00
50	0.00	0.00	0.00	0.00	0.00	0.00
51	0.00	7.69	0.00	13.33	10.77	9.87
52	0.00	0.00	0.00	1.67	7.69	4.72
53	0.00	7.69	0.00	3.33	11.54	7.73
54	0.00	0.00	0.00	0.00	0.00	0.00
55	0.00	0.00	0.00	0.00	0.00	0.00
56	0.00	7.69	12.50	8.33	13.85	11.16
57	0.00	0.00	0.00	0.00	0.00	0.00
58	0.00	0.00	0.00	0.00	0.00	0.00
59	0.00	0.00	0.00	0.00	0.00	0.00
6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III-40〉 공공기관 유형별 노동관행 해당사항 없음 비율(계속)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61	7.14	7.69	6.25	1.67	14.62	9.87
62	14.29	30.77	56.25	41.67	46.15	42.92
63	0.00	15.38	31.25	13.33	25.38	20.60
64	0.00	0.00	0.00	0.00	0.77	0.43
65	0.00	0.00	0.00	0.00	0.00	0.00
66	0.00	0.00	0.00	0.00	0.00	0.00

〈표 III-41〉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64~66)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64	65	66
농업	50.00	100.00	75.00
광업	83.33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50	100.00	91.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6.67	100.00	66.67
건설업	9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66.67	100.00	100.00
운수업	80.0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00	100.00	81.25
금융 및 보험업	76.09	100.00	82.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62.50	100.00	87.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32	100.00	75.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00	87.50	37.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9.00	99.00	69.00
교육 서비스업	66.67	100.00	75.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09	86.36	54.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9.09	91.67	66.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75.00	25.00

Ⅲ.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35

51번 “기관은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가?”와 53번 “기관은 최근 3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56번 “기관은 법이 정한 보건과 안전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 등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추진할 여력이 없어 못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경영모델을 만들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Ⅲ-42〉 공공기관 규모별 노동관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35	0.00	0.00	0.00	0.00
36	0.00	0.00	0.00	0.00
37	0.00	0.00	0.00	0.00
38	0.00	0.00	0.00	0.00
39	0.00	0.00	0.00	0.00
40	0.00	0.00	0.00	0.00
41	0.00	0.00	0.00	0.00
42	0.00	0.00	0.00	0.00
43	0.00	0.00	0.00	0.00
44	0.00	0.00	0.00	0.00
45	0.00	0.00	0.00	0.00
46	0.00	0.00	0.00	0.00
47	0.00	0.00	0.00	0.00
48	0.00	0.00	0.00	0.00
49	0.00	0.00	0.00	0.00
50	0.00	0.00	0.00	0.00
51	0.00	0.00	15.22	14.41

〈표 III-42〉 공공기관 규모별 노동관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계속)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52	0.00	0.00	6.52	7.21
53	0.00	0.00	8.70	12.61
54	0.00	0.00	0.00	0.00
55	0.00	0.00	0.00	0.00
56	5.80	14.29	6.52	16.22
57	0.00	0.00	0.00	0.00
58	0.00	0.00	0.00	0.00
59	0.00	0.00	0.00	0.00
60	0.00	0.00	0.00	0.00
61	5.80	0.00	8.70	13.51
62	18.84	28.57	50.00	55.86
63	10.14	0.00	23.91	27.03
64	0.00	0.00	2.17	0.00
65	0.00	0.00	0.00	0.00
66	0.00	0.00	0.00	0.00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도매 및 소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다수 공공기관들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데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특성상 ‘건설업’에 비해서는 안전사고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안전사고이므로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II-45〉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1~53)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51	52	53
농업	0.00	0.00	0.00
광업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0.00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0.00	0.00
건설업	20.00	0.00	20.00
도매 및 소매업	0.00	0.00	0.00
운수업	0.00	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13.04	8.70	8.7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0.0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76	2.94	7.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0.00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00	12.00	14.00
교육 서비스업	33.33	0.0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09	0.00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0.00	8.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0.00	0.00

〈표 III-46〉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54~63)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농업	0.00	0.00	5.80	0.00	0.00	0.00	0.00	5.80	18.84	10.14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3.33	0.0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0	0.00
도매 및 소매업	0.00	0.00	33.33	0.00	0.00	0.00	0.00	0.00	66.67	0.00
운수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0	2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	0.00	25.00	0.00	0.00	0.00	0.00	0.00	50.00	0.00
금융 및 보험업	0.00	0.00	13.04	0.00	0.00	0.00	0.00	21.74	69.57	30.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2.5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	0.00	11.76	0.00	0.00	0.00	0.00	11.76	38.24	26.4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0.00	25.00	0.00	0.00	0.00	0.00	0.00	25.00	2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0.00	14.00	0.00	0.00	0.00	0.00	14.00	60.00	32.00
교육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0	1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0.00	9.09	0.00	0.00	0.00	0.00	9.09	27.27	9.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6.67	8.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0.00	50.00	0.00	0.00	0.00	0.00	0.00	50.00	50.00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41

〈표 III-47〉 공공기관 산업별 노동관행(64~66)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64	65	66
농업	0.00	0.00	0.00
광업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0.00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0.00	0.00
건설업	0.00	0.00	0.00
도매 및 소매업	0.00	0.00	0.00
운수업	0.00	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0.00	0.00	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0.0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	0.00	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0.00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0.00	0.00
교육 서비스업	0.00	0.0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0.00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3	0.00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0.00	0.00

라) 환경

환경 성과는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성과’는 ‘조직 거버넌스’와 ‘인권’, ‘노동관행’ 등에 비해 충족률이 낮은 편이다. 74번 “기관의 최근 3년간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와 81번 “기관의 최근 3년간 에너지 효율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실적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83번 “기관의 최근 3년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85번 “기관의 최근 3년간 재활용 자원 활용률 또는 재활용 제품 구매율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91번 “기관의 최근 3년간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어떤 추세인가?”, 93번 “기관의 최근 3년간 환경관리 투자는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99번 “기관의 환경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01번 “기관의 자연서식지 보호 수준은 어떠한가?” 등 대부분 충족률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편이며, 기술개발이나 도입·투자·전파·확산 등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관리도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CO₂ 감축 등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분석하게 되면 환경 성과에 있어서 시장형 공기업의 충족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다. 94번 “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가?”와 101번 “기관의 자연서식지 보호 수준은 어떠한가?”에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충족률이 공기업에 비하여 낮게 나왔다. 조직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43

〈표 III-48〉 공공기관 유형별 환경 성과 총족률

(단위: %)

총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67	100.00	100.00	94.44	94.19	92.57	93.75
68	100.00	100.00	94.44	94.59	89.39	92.22
69	100.00	100.00	100.00	95.83	94.35	95.42
70	100.00	100.00	95.45	96.67	94.67	95.48
71	100.00	100.00	90.91	94.59	94.78	94.60
72	95.83	92.86	60.00	86.84	83.00	84.04
73	76.92	93.75	60.00	82.50	80.85	79.79
74	67.86	61.54	32.14	47.32	32.20	39.68
75	100.00	100.00	92.86	94.12	91.94	93.41
76	100.00	100.00	90.91	95.83	94.44	94.85
77	92.86	100.00	95.00	94.44	93.75	93.75
78	100.00	100.00	100.00	97.67	95.83	96.67
79	92.31	100.00	100.00	96.15	92.96	94.22
80	96.43	92.31	100.00	98.33	89.84	92.89
81	85.00	68.18	50.00	68.18	56.98	61.73
82	100.00	94.44	85.00	91.46	80.77	85.82
83	75.00	65.38	65.63	63.56	53.57	57.97
84	100.00	96.15	96.88	96.67	90.63	93.10
85	71.43	69.23	59.38	72.50	57.09	62.28
86	100.00	84.62	56.25	61.86	57.54	61.90
87	100.00	100.00	91.67	79.63	86.46	86.76
88	95.83	100.00	87.50	85.29	83.62	86.07
89	100.00	100.00	93.75	87.88	82.14	87.19
90	100.00	100.00	95.00	94.87	90.91	93.17
91	76.92	70.00	75.00	64.06	64.55	66.39
92	100.00	100.00	78.57	94.83	83.72	89.22
93	64.29	62.50	40.00	39.83	38.00	41.19
94	100.00	95.45	78.57	77.78	73.58	79.46
95	100.00	95.00	93.75	98.33	91.67	94.04
96	100.00	100.00	100.00	100.00	98.89	98.84
97	100.00	100.00	100.00	97.78	97.56	97.55
98	96.43	96.15	84.38	82.50	80.47	82.76
99	78.57	69.23	43.75	41.53	34.88	41.59
100	100.00	100.00	94.44	90.63	93.22	93.15
101	85.71	80.77	53.13	50.00	39.76	47.85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에서 94번과 101번의 충족률이 공기업은 높게 나오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낮게 나왔는데 규모별 분석에서는 94번만 차이가 있었다. 조직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따른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에 모델 개발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I-49〉 공공기관 규모별 환경 성과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67	97.46	100.00	94.83	88.98
68	98.25	87.50	94.23	84.38
69	99.12	100.00	98.00	89.13
70	99.19	100.00	94.83	91.67
71	97.50	100.00	98.00	89.22
72	92.86	66.67	91.67	69.35
73	82.98	75.00	87.50	70.37
74	56.82	66.67	34.09	29.41
75	97.17	100.00	96.43	86.96
76	96.61	83.33	98.15	91.49
77	93.86	100.00	96.43	91.67
78	99.18	100.00	96.67	93.64
79	95.61	100.00	98.44	89.81
80	97.83	100.00	94.57	88.64
81	64.00	90.00	69.44	54.23
82	89.29	75.00	84.85	83.33
83	65.94	50.00	58.70	53.18
84	95.65	92.86	93.48	91.36
85	66.67	71.43	65.22	57.73
86	73.91	50.00	61.11	55.45
87	94.68	83.33	88.89	75.00
88	91.35	100.00	86.36	79.79
89	92.45	75.00	93.18	78.41
90	96.49	100.00	96.43	87.25

〈표 III-49〉 공공기관 규모별 환경 성과 총족률(계속)

총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91	71.00	33.33	67.39	62.79
92	94.90	75.00	91.18	80.88
93	55.15	57.14	46.59	29.17
94	89.58	50.00	84.09	66.67
95	98.94	100.00	95.65	86.11
96	100.00	100.00	100.00	97.18
97	98.33	100.00	100.00	95.59
98	92.03	78.57	89.13	74.55
99	56.52	28.57	50.00	29.55
100	98.00	100.00	92.86	86.90
101	65.94	50.00	56.52	32.88

환경 성과를 산업별로 분석하게 되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전반적인 총족률이 높은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총족률이 낮게 조사되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대표적인 환경 산업으로 볼 수 있으나 74번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과 81번 에너지 효율 서비스 개발 실적, 83번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85번 재활용품 구매 실적, 93번 환경관리 투자, 99번 환경 교육 등에서 총족률이 낮았다. 다른 산업 분야도 아닌 환경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해당 성과 지표 총족률이 낮다고 조사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차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표 III-50〉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67~76)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농업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5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5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5.00	80.00	75.00	100.00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66.67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운수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62.5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00	75.00	87.50	87.50	87.50	62.50	50.00	28.57	62.50	87.50
금융 및 보험업	90.91	90.91	100.00	92.31	91.67	70.00	64.29	33.33	94.44	91.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2.5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0.22	90.24	91.25	92.55	91.67	81.48	76.67	41.41	88.46	94.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5.00	100.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3.75	86.11	94.74	96.15	95.00	63.64	71.43	23.86	94.44	92.50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95.00	100.00	100.00	100.00	92.86	87.50	45.45	93.75	87.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8.89	94.44	94.44	95.00	95.00	83.33	87.50	41.67	100.00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	50.00	50.00

주: 공란은 전부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충족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의미임.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47

<표 III-51>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77~87)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농업	100.00	100.00	50.00	75.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75.00	5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6.67	100.00	83.33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75.00	100.00	75.00	75.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1.67	100.00	91.67	95.83	81.25	95.83	70.83	100.00	75.00	91.67	95.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83.33	100.00
건설업	100.00	100.00	100.00	90.00	60.00	87.50	70.00	100.00	60.00	8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50.00	50.00	100.00
운수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0.00	100.00	70.00	9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67	75.00	100.00	81.25	25.00	100.00	62.50	81.25	43.75	57.14	83.33
금융 및 보험업	91.67	96.43	93.33	95.65	71.43	81.25	58.70	93.48	60.87	56.52	85.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92.86	100.00	75.00	75.00	62.50	93.75	81.25	75.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4.05	93.48	88.75	93.28	64.13	79.27	59.70	89.55	63.43	58.96	82.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87.50	100.00	100.00	50.00	75.00	50.00	62.5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2.50	100.00	100.00	90.00	50.00	92.50	54.00	93.00	61.00	54.00	77.27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41.67	100.00	66.67	5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4.44	100.00	95.00	90.91	55.56	71.43	36.36	95.45	63.64	54.55	81.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92.86	94.44	95.83	45.00	81.25	50.00	95.83	45.83	70.83	91.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100.00	100.00	75.00	50.00	50.00	50.00	100.00	25.00	50.00	50.00

〈표 III-52〉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88~92)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88	89	90	91	92
농업	100.00	50.00	100.00	5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5.45	100.00	100.00	75.00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100.00	7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운수업	100.00	100.00	100.00	87.5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33	66.67	75.00	80.00	62.50
금융 및 보험업	83.33	100.00	100.00	54.55	91.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80.00	100.00	91.67	92.8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95	75.00	82.05	60.94	82.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1.18	92.50	97.73	65.79	89.29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5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1.67	85.71	94.44	43.75	85.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75.00	9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50.00	100.00	50.00	50.00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49

〈표 III-53〉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93~101) 총족률

(단위: %)

산업별 총족률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농업	50.00	75.00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75.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0.83	100.00	100.00	100.00	100.00	95.83	75.00	100.00	70.8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3.3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건설업	10.00	100.00	100.00	100.00	80.00	100.00	80.00	100.00	90.00
도매 및 소매업	50.00	50.00	100.00	100.00	100.00	66.67	16.67		33.33
운수업	6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0.00	100.00	9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00	62.50	75.00	100.00	100.00	81.25	37.50	66.67	25.00
금융 및 보험업	38.64	71.43	92.86	100.00	100.00	82.61	39.13	95.83	41.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6.25	92.86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7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70	68.75	87.50	95.92	95.83	79.10	36.03	83.33	44.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50	50.00	100.00	100.00	75.00	62.50	25.00	100.00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57	71.88	97.06	100.00	98.15	77.00	29.59	92.86	37.00
교육 서비스업	33.33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33.33		25.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00	75.00	94.44	100.00	100.00	95.45	54.55	100.00	59.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50	90.00	100.00	100.00	100.00	79.17	20.83	100.00	54.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25.00	100.00	25.00

환경 성과 설문 중에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온다. 제조업이나 에너지 기업들이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는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나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많지 않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Ⅲ-54〉 공공기관 환경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67	0.00	15.38	43.75	28.33	43.08	35.19
68	7.14	30.77	43.75	38.33	49.23	42.49
69	7.14	23.08	43.75	40.00	52.31	44.21
70	7.14	23.08	31.25	25.00	42.31	33.91
71	7.14	23.08	31.25	38.33	48.46	40.77
72	14.29	46.15	68.75	68.33	61.54	60.09
73	7.14	38.46	68.75	66.67	63.85	60.09
74	0.00	0.00	12.50	6.67	9.23	7.73
75	0.00	15.38	56.25	43.33	52.31	45.06
76	0.00	15.38	31.25	40.00	51.54	42.06
77	0.00	15.38	37.50	40.00	50.77	42.06
78	7.14	15.38	37.50	28.33	44.62	36.05
79	7.14	23.08	18.75	35.00	45.38	37.34
80	0.00	0.00	0.00	0.00	1.54	0.86
81	28.57	15.38	37.50	26.67	33.85	30.90
82	0.00	30.77	37.50	31.67	50.00	40.34
83	0.00	0.00	0.00	1.67	3.08	2.15
84	0.00	0.00	0.00	0.00	1.54	0.86
85	0.00	0.00	0.00	0.00	2.31	1.29
86	0.00	0.00	0.00	1.67	3.08	2.15

〈표 III-54〉 공공기관 환경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계속)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87	21.43	30.77	62.50	55.00	63.08	56.65
88	14.29	30.77	50.00	43.33	55.38	48.07
89	14.29	15.38	50.00	45.00	56.92	48.50
90	7.14	23.08	37.50	35.00	49.23	40.77
91	7.14	23.08	50.00	46.67	57.69	49.36
92	14.29	23.08	56.25	51.67	66.92	56.65
93	0.00	7.69	6.25	1.67	3.85	3.43
94	7.14	15.38	56.25	55.00	59.23	52.36
95	14.29	23.08	50.00	50.00	63.08	53.65
96	0.00	7.69	31.25	25.00	30.77	26.18
97	7.14	7.69	37.50	25.00	36.92	30.47
98	0.00	0.00	0.00	0.00	1.54	0.86
99	0.00	0.00	0.00	1.67	0.77	0.86
100	14.29	15.38	43.75	46.67	54.62	47.21
101	0.00	0.00	0.00	0.00	2.31	1.29

조직 규모별 차이 분석에 있어 규모가 클수록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규모가 작을수록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 공공기관 유형별 기준에 비하여 차이가 크지는 않다. 환경 성과 지표 충족률 차이에 있어서 규모보다는 시장성이 더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

〈표 III-55〉 공공기관 규모별 환경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67	14.49	28.57	36.96	47.75
68	17.39	42.86	43.48	57.66
69	17.39	57.14	45.65	59.46
70	10.14	42.86	36.96	46.85
71	13.04	57.14	45.65	54.95
72	39.13	57.14	60.87	72.97
73	31.88	42.86	65.22	76.58
74	4.35	14.29	4.35	10.81
75	23.19	71.43	39.13	59.46
76	14.49	57.14	41.30	58.56
77	17.39	57.14	39.13	57.66
78	11.59	42.86	34.78	51.35
79	17.39	42.86	30.43	52.25
80	0.00	0.00	0.00	1.80
81	27.54	28.57	21.74	36.94
82	20.29	42.86	28.26	57.66
83	0.00	0.00	2.17	3.60
84	0.00	0.00	0.00	1.80
85	0.00	0.00	0.00	2.70
86	0.00	0.00	2.17	3.60
87	31.88	57.14	60.87	70.27
88	24.64	85.71	52.17	58.56
89	23.19	71.43	52.17	61.26
90	17.39	57.14	39.13	54.95
91	27.54	57.14	50.00	62.16
92	28.99	71.43	63.04	70.27
93	1.45	0.00	4.35	4.50

〈표 III-55〉 공공기관 규모별 환경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계속)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94	30.43	57.14	52.17	65.77
95	31.88	57.14	50.00	68.47
96	7.25	28.57	28.26	36.94
97	13.04	42.86	32.61	39.64
98	0.00	0.00	0.00	1.80
99	0.00	0.00	0.00	1.80
100	27.54	42.86	39.13	63.06
101	0.00	0.00	0.00	2.70

산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의 해당사항 없음 비율이 낮게 나오고 사회서비스업이나 협회 등의 해당사항 없음 비율이 높게 나왔다. 제조업이나 에너지 분야 기업들은 평상시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환경단체로부터 끊임 없이 지적을 받아 오고 있기에 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사회서비스업이나 협회 등은 외부로부터 환경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에너지 분야 업종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뿐이지 공공기관 운영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56〉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67~76)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농업	14.49	17.39	17.39	10.14	13.04	39.13	31.88	4.35	23.19	14.49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50.00	0.00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33	8.33	8.33	0.00	8.33	16.67	16.67	0.00	0.00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건설업	0.00	20.00	20.00	20.00	20.00	40.00	40.00	0.00	20.00	20.00
도매 및 소매업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운수업	0.00	20.00	20.00	20.00	20.00	40.00	20.00	20.00	20.00	2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12.50	50.00	50.00
금융 및 보험업	52.17	52.17	56.52	43.48	47.83	78.26	69.57	8.70	60.87	47.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25.00	25.00	25.00	25.00	37.50	37.50	0.00	0.00	1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82	41.18	42.65	32.35	39.71	61.76	57.35	7.35	44.12	38.2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00	75.00	75.00	50.00	75.00	75.00	75.00	0.00	75.00	7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00	64.00	62.00	48.00	60.00	78.00	86.00	12.00	64.00	60.00
교육 서비스업	66.67	83.33	83.33	66.67	83.33	100.00	100.00	0.00	10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18	9.09	27.27	9.09	18.18	36.36	27.27	0.00	27.27	27.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00	25.00	25.00	16.67	16.67	50.00	66.67	0.00	41.67	41.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100.00	0.00	50.00	50.00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55

〈표 III-57〉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77~87)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농업	17.39	11.59	17.39	0.00	27.54	20.29	0.00	0.00	0.00	0.00	31.88
광업	0.00	0.00	0.00	0.00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50.00	0.00	0.00	0.00	0.00	5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0.00	0.00	0.00	33.33	0.00	0.00	0.00	0.00	0.00	16.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0.00	0.00	0.00	33.33	33.33	33.33	0.00	0.00	0.00	33.33
건설업	20.00	20.00	20.00	0.00	0.00	20.00	0.00	0.00	0.00	0.00	20.00
도매 및 소매업	33.33	33.33	33.33	0.00	33.33	66.67	0.00	0.00	0.00	0.00	33.33
운수업	20.00	20.00	20.00	0.00	0.00	20.00	0.00	0.00	0.00	0.00	4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2.50	50.00	50.00	0.00	25.00	37.50	0.00	0.00	0.00	12.50	62.50
금융 및 보험업	47.83	39.13	34.78	0.00	39.13	30.43	0.00	0.00	0.00	0.00	69.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00	25.00	12.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7.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71	33.82	42.65	2.94	33.82	41.18	4.41	2.94	2.94	2.94	55.8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00	50.00	75.00	0.00	75.00	75.00	0.00	0.00	0.00	0.00	7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0.00	52.00	48.00	0.00	36.00	60.00	2.00	0.00	2.00	2.00	78.00
교육 서비스업	83.33	66.67	83.33	0.00	83.33	66.67	0.00	0.00	0.00	0.00	8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18	9.09	9.09	0.00	18.18	36.36	0.00	0.00	0.00	0.00	27.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00	41.67	25.00	0.00	16.67	41.67	0.00	0.00	0.00	0.00	5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50.00	50.00	0.00	50.00	50.00	0.00	0.00	0.00	0.00	50.00

〈표 III-58〉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88~92)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88	89	90	91	92
농업	24.64	23.19	17.39	27.54	28.99
광업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33	0.00	0.00	0.00	16.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3.33	66.67	0.00	66.67	0.00
건설업	20.00	0.00	0.00	0.00	40.00
도매 및 소매업	33.33	33.33	33.33	33.33	66.67
운수업	20.00	20.00	20.00	20.00	2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00	25.00	25.00	37.50	50.00
금융 및 보험업	47.83	52.17	43.48	52.17	73.9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7.50	37.50	25.00	25.00	1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59	51.47	44.12	54.41	63.2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00	50.00	75.00	50.00	7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6.00	60.00	56.00	62.00	72.00
교육 서비스업	83.33	100.00	66.67	66.67	8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45	36.36	18.18	27.27	36.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5.00	75.00	58.33	83.33	58.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50.00	50.00	50.00	50.00

<표 III-59> 공공기관 산업별 환경(93~101)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농업	1.45	30.43	31.88	7.25	13.04	0.00	0.00	27.54	0.00
광업	0.00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50.00	50.00	0.00	0.00	0.00	0.00	5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16.67	25.00	0.00	0.00	0.00	0.00	8.33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0.00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건설업	0.00	0.00	4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도매 및 소매업	33.33	66.67	66.67	33.33	33.33	0.00	0.00	100.00	0.00
운수업	0.00	20.00	20.00	20.00	20.00	0.00	0.00	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	50.00	50.00	25.00	25.00	0.00	0.00	62.50	0.00
금융 및 보험업	4.35	69.57	69.57	26.09	26.09	0.00	0.00	47.83	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12.50	0.00	0.00	12.50	0.00	0.00	12.5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1	54.41	60.29	29.41	30.88	2.94	1.47	52.94	1.4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75.00	75.00	50.00	50.00	0.00	0.00	75.00	2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0	68.00	66.00	38.00	46.00	0.00	2.00	58.00	0.00
교육 서비스업	0.00	83.33	83.33	50.00	83.33	0.00	0.00	100.0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27.27	18.18	9.09	9.09	0.00	0.00	36.36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58.33	50.00	16.67	33.33	0.00	0.00	41.67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50.00	50.00	50.00	50.00	0.00	0.00	50.00	0.00

마) 공정운영관행

공공기관의 공정운영관행 성과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성과 지표에 비해서 충족률이 높은 편이다. 117번 “기관의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수준은 어떠한가?” 설문이 비교적 낮은 충족률을 보이는데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는 공정운영관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협력사에게까지는 권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운영관행은 공공기관 스스로만 잘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만약 1차 협력업체에서 뇌물로 공사를 수주하고 2차 협력업체와 3차 협력업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공공기관이 청렴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지표 중 공정운영관행 충족률은 높더라도 유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Ⅲ-60〉 공공기관 공정운영관행 성과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02	100.00	100.00	100.00	100.00	99.62	99.79
103	96.43	100.00	100.00	100.00	99.23	99.36
104	89.29	96.15	96.88	91.67	79.62	85.41
105	96.43	100.00	100.00	98.33	94.23	96.14
106	96.43	100.00	100.00	99.17	97.69	98.28
107	96.43	96.15	90.63	95.83	96.54	95.92
108	100.00	100.00	100.00	94.17	96.92	96.78
10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	100.00	100.00	100.00	99.06	97.64	98.47

〈표 III-60〉 공공기관 공정운영관행 성과 총족률(계속)

총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11	92.86	88.46	86.67	88.14	93.80	91.03
112	96.43	100.00	100.00	97.12	98.95	98.41
113	96.43	100.00	100.00	99.09	99.06	99.01
114	96.43	96.15	96.67	97.96	94.23	95.64
115	100.00	100.00	100.00	99.17	96.54	97.85
116	100.00	100.00	100.00	98.00	97.12	97.95
117	89.29	88.46	81.25	75.83	71.92	75.54
118	92.86	92.31	93.75	96.67	94.23	94.64
119	96.43	100.00	100.00	98.33	98.46	98.50
12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조직 규모별 차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17번 “기관의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소규모 기관의 총족률이 낮게 나왔다.

〈표 III-61〉 공공기관 규모별 공정운영관행 성과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102	100.00	100.00	100.00	99.55
103	99.28	100.00	100.00	99.10
104	92.03	92.86	89.13	79.28
105	99.28	100.00	97.83	93.24
106	99.28	100.00	100.00	96.85
107	96.38	100.00	92.39	96.85
108	100.00	100.00	94.57	95.50
109	100.00	100.00	100.00	100.00
110	97.46	100.00	98.84	98.86
111	92.31	100.00	90.00	90.09
112	99.19	100.00	98.81	97.53
113	99.21	100.00	100.00	98.35
114	96.88	100.00	97.67	93.37
115	98.55	100.00	95.65	98.20
116	100.00	90.00	100.00	95.83
117	84.06	92.86	82.61	66.22
118	96.38	100.00	96.74	92.34
119	99.28	100.00	98.91	97.75
120	100.00	100.00	100.00	100.00

산업별 분석에서 117번 ‘기관의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충족률이 낮게 나온 산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었다.

Ⅲ.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61

〈표 Ⅲ-62〉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02~108)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02	103	104	105	106	107	108
농업	100.00	100.00	75.00	75.00	10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95.83	87.50	95.83	95.83	91.67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6.67	83.33
건설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83.33
운수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100.00	87.50	100.00	100.00	100.00	81.25
금융 및 보험업	100.00	100.00	97.83	100.00	100.00	89.13	1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93.75	100.00	100.0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26	99.26	83.09	95.59	95.59	98.53	98.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0	100.00	82.00	96.00	99.00	95.00	94.00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83.33	91.67	100.00	10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100.00	81.82	95.45	100.00	95.45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95.83	83.33	87.50	100.00	95.83	91.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50.00	75.00	100.00	100.00	100.00

〈표 III-64〉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15~120)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15	116	117	118	119	120
농업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100.00	83.33	91.67	100.00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90.00	9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운수업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3.75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금융 및 보험업	95.65	100.00	78.26	93.48	100.00	1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79	98.11	70.59	97.06	98.53	10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7.00	94.87	68.00	92.00	98.00	100.00
교육 서비스업	91.67	100.00	58.33	83.33	10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94.44	72.73	95.45	100.00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95.45	83.33	87.50	100.00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공정운영관행 설문 중 109번 “기관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와 110번 “기관은 3년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위반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기관이 다수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법적 독점인 기관이 많고 시장 경쟁이 많지 않기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65〉 공공기관 공정운영관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02	0.00	0.00	0.00	0.00	0.00	0.00
103	0.00	0.00	0.00	0.00	0.00	0.00
104	0.00	0.00	0.00	0.00	0.00	0.00
105	0.00	0.00	0.00	0.00	0.00	0.00
106	0.00	0.00	0.00	0.00	0.00	0.00
107	0.00	0.00	0.00	0.00	0.00	0.00
108	0.00	0.00	0.00	0.00	0.00	0.00
109	0.00	0.00	12.50	10.00	10.77	9.44
110	21.43	0.00	18.75	11.67	18.46	15.88
111	0.00	0.00	6.25	1.67	6.92	4.72
112	0.00	0.00	6.25	13.33	26.92	18.88
113	0.00	0.00	12.50	8.33	18.46	13.30
114	0.00	0.00	6.25	18.33	20.00	16.31
115	0.00	0.00	0.00	0.00	0.00	0.00
116	0.00	7.69	6.25	16.67	20.00	16.31
117	0.00	0.00	0.00	0.00	0.00	0.00
118	0.00	0.00	0.00	0.00	0.00	0.00
119	0.00	0.00	0.00	0.00	0.00	0.00
120	0.00	7.69	18.75	6.67	8.46	8.15

기관의 수입이 적을수록 “해당사항 없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단순히 정부의 자금을 받아 집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66〉 공공기관 규모별 공정운영관행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102	0.00	0.00	0.00	0.00
103	0.00	0.00	0.00	0.00
104	0.00	0.00	0.00	0.00
105	0.00	0.00	0.00	0.00
106	0.00	0.00	0.00	0.00
107	0.00	0.00	0.00	0.00
108	0.00	0.00	0.00	0.00
109	8.70	14.29	2.17	12.61
110	14.49	14.29	6.52	20.72
111	5.80	0.00	2.17	5.41
112	10.14	42.86	8.70	27.03
113	8.70	28.57	6.52	18.02
114	7.25	28.57	6.52	25.23
115	0.00	0.00	0.00	0.00
116	10.14	28.57	4.35	24.32
117	0.00	0.00	0.00	0.00
118	0.00	0.00	0.00	0.00
119	0.00	0.00	0.00	0.00
120	1.45	14.29	13.04	9.91

III.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67

〈표 III-68〉 공공기관 산업별 공정운영관행(109~114)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109	110	111	112	113	114
농업	8.70	14.49	5.80	10.14	8.70	7.25
광업	0.00	33.33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8.33	0.00	0.00	0.00	8.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33.33	0.00	0.00	0.00	33.33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도매 및 소매업	0.00	0.00	0.00	33.33	0.00	33.33
운수업	0.00	0.00	0.00	0.00	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12.50
금융 및 보험업	17.39	17.39	13.04	21.74	17.39	13.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12.50	0.00	0.00	0.0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8	11.76	1.47	23.53	22.06	19.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0.00	0.00	25.00	25.00	2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00	30.00	6.00	28.00	16.00	22.00
교육 서비스업	33.33	33.33	0.00	33.33	16.67	3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0.00	9.09	9.09	9.09	9.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3	16.67	16.67	25.00	8.33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50.00	0.00	0.00	0.00	0.00

바) 소비자 이슈

공공기관 소비자 이슈는 14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9번 “기관은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가?”, 144번 “기관은 소비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등의 충족률이 낮게 나왔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족률 분석에 있어서는 유형별 차이나 규모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III-70> 공공기관 유형별 소비자 이슈 성과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21	100.00	100.00	100.00	98.18	100.00	99.00
122	95.45	96.15	100.00	95.28	96.77	95.90
12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40
124	95.45	100.00	100.00	100.00	95.90	96.88
12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48
126	92.31	92.31	100.00	93.52	95.09	94.15
127	100.00	100.00	100.00	100.00	98.92	98.89
128	93.75	100.00	100.00	100.00	97.62	97.02
129	100.00	100.00	100.00	100.00	90.00	88.89
130	100.00	100.00	50.00	-	75.00	76.67
131	-	80.00	100.00	100.00	90.00	80.95
132	100.00	100.00	83.33	100.00	97.30	96.32
133	100.00	100.00	100.00	100.00	88.89	87.50
134	100.00	100.00	100.00	100.00	98.73	98.75

〈표 Ⅲ-70〉 공공기관 유형별 소비자 이슈 성과 총족률(계속)

총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35	100.00	100.00	100.00	90.00	82.81	86.11
136	100.00	100.00	100.00	100.00	95.00	93.75
137	100.00	100.00	100.00	100.00	98.75	98.76
138	100.00	100.00	100.00	100.00	97.40	98.13
139	66.67	83.33	71.43	73.96	78.40	75.76
140	92.31	92.31	100.00	94.92	90.55	92.14
141	100.00	100.00	-	100.00	94.44	94.59
142	94.44	100.00	100.00	100.00	97.41	97.27
143	92.86	91.67	100.00	94.00	96.34	94.25
144	58.33	60.00	71.43	74.14	67.39	68.09

〈표 III-71〉 공공기관 규모별 소비자 이슈 성과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121	100.00	100.00	100.00	97.80
122	96.43	100.00	97.50	94.44
123	100.00	100.00	100.00	98.59
124	97.62	100.00	100.00	94.55
125	100.00	100.00	100.00	98.89
126	94.35	100.00	95.24	93.23
127	98.21	100.00	100.00	98.77
128	98.15	100.00	100.00	95.00
129	100.00	100.00	100.00	75.00
130	100.00	-	50.00	58.33
131	90.00	-	100.00	66.67
132	100.00	100.00	100.00	89.13
133	100.00	-	100.00	75.00
134	100.00	100.00	100.00	96.92
135	96.00	-	87.50	76.00
136	100.00	-	100.00	86.67
137	100.00	100.00	100.00	97.06
138	99.09	100.00	100.00	96.09
139	71.82	75.00	75.00	79.17
140	96.27	92.86	90.22	90.37
141	100.00	-	100.00	86.67
142	98.68	100.00	100.00	94.68
143	96.88	100.00	91.18	93.06
144	65.15	100.00	72.22	67.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소비자 이슈 충족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어려울 수 있다.

〈표 III-73〉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28~133)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28	129	130	131	132	133
농업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0.00	100.00			100.00	10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운수업	100.00		100.00	0.00	10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금융 및 보험업	100.00			100.00	1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4.44	75.00	75.00	60.00	90.00	66.6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00	0.00	0.00	0.00	0.00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표 III-75〉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41~144)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41	142	143	144
농업	100.00	100.00	100.00	5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93.75	91.67	75.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100.00	100.00	100.00	5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운수업	100.00	100.00	100.00	66.6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80.00	37.50
금융 및 보험업		100.00	95.45	77.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100.00	100.00	6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71	96.15	92.11	72.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50.00	50.00	5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0	100.00	97.37	71.05
교육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6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0	91.67	100.00	5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0	100.00	100.00	50.00

소비자 이슈 성과의 충족률은 높은 편이나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많은 편이다. 140번을 제외한 전 설문문항에서 기관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는 공공기관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공기관은 독점적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 없이 정부의 주무부처 위탁과 보호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관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직접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사회기반시설 지원이나 검사·검증 서비스, 연구개발비 지원 등 간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이슈에 덜 민감하여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라 소비자 이슈가 비교적 덜 중요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를 직접 소비자에만 한정하기보다는 대상 범위를 일반 국민까지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공공기관의 특성과 ISO 26000 이행수준 177

〈표 Ⅲ-76〉 공공기관 소비자 이슈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21	14.29	0.00	18.75	8.33	18.46	14.59
122	21.43	0.00	25.00	11.67	28.46	21.89
123	21.43	0.00	31.25	20.00	36.15	28.76
124	21.43	15.38	50.00	40.00	53.08	45.49
125	14.29	0.00	18.75	11.67	21.54	17.17
126	7.14	0.00	25.00	10.00	13.85	12.45
127	14.29	0.00	31.25	16.67	28.46	23.18
128	42.86	61.54	75.00	60.00	67.69	64.38
129	92.86	92.31	93.75	93.33	92.31	92.70
130	92.86	69.23	93.75	100.00	93.85	93.99
131	100.00	61.54	87.50	96.67	92.31	91.85
132	35.71	53.85	81.25	80.00	71.54	71.24
133	92.86	76.92	93.75	98.33	93.08	93.56
134	14.29	7.69	25.00	26.67	39.23	31.76
135	71.43	53.85	93.75	83.33	75.38	77.25
136	92.86	69.23	87.50	93.33	84.62	86.70
137	35.71	7.69	31.25	20.00	38.46	31.33
138	28.57	15.38	12.50	21.67	40.77	31.76
139	35.71	7.69	12.50	20.00	37.69	29.61
140	7.14	0.00	0.00	1.67	2.31	2.15
141	64.29	76.92	100.00	83.33	86.15	84.55
142	35.71	61.54	43.75	53.33	55.38	53.22
143	50.00	53.85	56.25	58.33	68.46	63.09
144	57.14	61.54	56.25	51.67	64.62	60.09

〈표 III-77〉 공공기관 규모별 소비자 이슈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121	13,04	0,00	8,70	18,92
122	18,84	14,29	13,04	27,93
123	20,29	28,57	21,74	36,94
124	39,13	42,86	41,30	51,35
125	17,39	28,57	8,70	19,82
126	10,14	28,57	8,70	14,41
127	18,84	42,86	15,22	27,93
128	60,87	71,43	67,39	64,86
129	89,86	85,71	95,65	93,69
130	89,86	100,00	95,65	95,50
131	85,51	100,00	95,65	93,69
132	49,28	85,71	80,43	80,18
133	89,86	100,00	97,83	93,69
134	17,39	14,29	30,43	42,34
135	63,77	100,00	91,30	78,38
136	78,26	100,00	95,65	87,39
137	18,84	28,57	30,43	39,64
138	20,29	28,57	21,74	43,24
139	20,29	42,86	26,09	36,04
140	2,90	0,00	0,00	2,70
141	78,26	100,00	84,78	87,39
142	44,93	57,14	52,17	58,56
143	53,62	71,43	63,04	68,47
144	52,17	71,43	60,87	63,96

〈표 III-78〉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21~127)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121	122	123	124	125	126	127
농업	13.04	18.84	20.29	39.13	17.39	10.14	18.84
광업	0.00	33.33	33.33	33.33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3.33	33.33	16.67	16.67	25.00	16.67	16.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33.33	33.33	33.33	0.00	0.00	0.00
건설업	0.00	0.00	20.00	20.00	0.00	0.00	20.00
도매 및 소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운수업	0.00	0.00	0.00	20.00	20.00	20.00	2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50	12.50	25.00	50.00	25.00	12.50	12.50
금융 및 보험업	21.74	21.74	26.09	47.83	21.74	21.74	26.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0.00	12.50	12.50	0.00	0.00	12.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59	32.35	41.18	57.35	23.53	13.24	29.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00	14.00	26.00	48.00	6.00	12.00	24.00
교육 서비스업	0.00	0.00	0.00	50.00	16.67	0.00	3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18.18	27.27	36.36	18.18	18.18	27.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67	25.00	33.33	41.67	16.67	8.33	16.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0.00	0.00	50.00	0.00	0.00	0.00

〈표 III-80〉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41~144)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141	142	143	144
농업	78.26	44.93	53.62	52.17
광업	66.67	66.67	66.67	66.67
제조업	50.00	50.00	50.00	5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6.67	33.33	50.00	5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건설업	60.00	60.00	60.00	60.00
도매 및 소매업	33.33	33.33	66.67	66.67
운수업	60.00	40.00	60.00	4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00	37.50	37.50	50.00
금융 및 보험업	100.00	52.17	52.17	52.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00	25.00	12.5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9.71	61.76	72.06	67.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00	75.00	75.00	5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8.00	50.00	62.00	62.00
교육 서비스업	83.33	50.00	100.00	83.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0.91	54.55	45.45	54.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5.00	50.00	75.00	66.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0.00	50.00	50.00

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은 16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업에서는 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48번 “최근 3년간 기관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152번 “기관은 지역사회 내 기능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개선을 지원하는가?”, 154번 “최근 3년간 기관의 지역사회 내 투자와 구매는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158번 “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등에서 공기업은 충족률이 높으나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충족률이 낮게 나왔다. 지역사회의 소비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81〉 공공기관 유형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45	92.86	88.46	71.88	84.17	79.84	81.33
146	100.00	100.00	93.75	97.50	93.80	95.06
147	96.43	100.00	100.00	91.67	88.76	90.99
148	92.86	88.46	75.00	75.83	64.06	70.39
149	100.00	92.31	84.38	89.17	85.27	87.12
150	95.83	100.00	85.00	93.55	91.96	92.92
151	96.43	96.15	84.38	85.83	85.66	86.85
152	89.29	96.15	71.88	76.67	74.42	76.61
153	96.43	100.00	87.50	87.50	86.92	88.41
154	85.71	80.77	56.25	65.00	53.52	59.66
155	89.29	100.00	91.67	95.74	96.19	95.55
156	89.29	100.00	100.00	98.75	94.78	95.93
157	100.00	96.15	84.38	88.33	85.43	87.23
158	92.86	84.62	71.88	70.00	64.45	68.97
159	100.00	100.00	100.00	100.00	90.31	94.61
160	89.29	88.46	81.25	85.00	61.63	71.89

조직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보다 적극적이었고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표 III-82〉 공공기관 규모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충족률

(단위: %)

충족률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145	84.78	85.71	80.43	79.28
146	100.00	100.00	92.39	92.79
147	97.83	100.00	93.48	85.14
148	86.96	85.71	77.17	56.31
149	94.93	78.57	84.78	83.78
150	93.88	100.00	94.74	91.00
151	90.58	85.71	87.78	84.23
152	84.06	78.57	78.26	71.17
153	94.20	85.71	91.30	83.78
154	70.29	50.00	69.57	49.55
155	95.90	100.00	97.30	94.32
156	97.00	100.00	100.00	92.16
157	94.20	85.71	84.78	83.94
158	84.06	64.29	67.39	60.45
159	100.00	92.86	98.91	89.55
160	89.13	64.29	81.52	57.66

〈표 III-83〉 공공기관 산업별 소비자이슈(128~133)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128	129	130	131	132	133
농업	60.87	89.86	89.86	85.51	49.28	89.86
광업	66.67	66.67	66.67	66.67	66.67	66.67
제조업	0.00	50.00	50.00	50.00	0.00	5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8.33	91.67	100.00	100.00	50.00	91.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건설업	100.00	100.00	100.00	100.00	6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33.33	66.67	100.00	100.00	33.33	100.00
운수업	40.00	100.00	60.00	80.00	40.00	8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2.50	87.50	87.50	87.50	87.50	87.50
금융 및 보험업	78.26	100.00	100.00	91.30	78.26	1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00	75.00	75.00	62.50	12.50	7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53	94.12	94.12	94.12	85.29	95.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2.00	98.00	100.00	96.00	80.00	98.00
교육 서비스업	83.33	100.00	100.00	83.33	83.33	1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45	63.64	81.82	81.82	27.27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00	91.67	100.00	91.67	41.67	83.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표 III-84〉 공공기관 산업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145~150)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45	146	147	148	149	150
농업	100.00	100.00	75.00	5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50	100.00	95.83	95.83	95.83	95.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건설업	90.00	100.00	100.00	80.00	100.00	10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운수업	90.00	100.00	100.00	90.00	90.00	1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00	93.75	87.50	50.00	81.25	87.50
금융 및 보험업	76.09	97.83	97.83	80.43	84.78	83.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87.50	100.00	93.75	93.75	100.00	1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68	91.18	88.97	69.12	83.82	88.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00	87.50	87.50	50.00	75.00	1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8.00	94.00	84.00	53.00	82.00	95.24
교육 서비스업	83.33	91.67	91.67	58.33	91.67	75.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36	100.00	100.00	81.82	95.45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9.17	100.00	95.83	75.00	100.00	1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00	100.00	100.00	75.00	100.00	50.00

〈표 III-85〉 공공기관 산업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151~160) 충족률

(단위: %)

산업별 충족률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농업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100.00
광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100.00	1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0	83.33	95.83	75.00	83.33	86.36	100.00	83.33	100.00	83.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건설업	90.00	100.00	100.00	70.00	100.00	100.00	100.00	80.00	100.00	90.00
도매 및 소매업	100.00	100.00	100.00	83.33	100.00	100.00	100.00	66.67	100.00	83.33
운수업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0.00	100.00	9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50	81.25	75.00	43.75	100.00	100.00	81.25	50.00	100.00	62.50
금융 및 보험업	84.78	76.09	86.96	63.04	90.00	92.86	84.78	76.09	100.00	80.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0	93.75	100.00	75.00	100.00	100.00	100.00	87.50	100.00	81.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4.33	71.32	90.44	58.09	96.61	96.34	80.60	66.18	94.12	72.0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7.50	62.50	87.50	50.00	100.00	100.00	100.00	50.00	87.50	37.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1.00	71.00	82.00	50.00	96.15	97.92	83.67	58.16	91.84	63.00
교육 서비스업	91.67	75.00	91.67	50.00	83.33	90.00	83.33	75.00	100.00	6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36	81.82	90.91	59.09	100.00	100.00	90.91	90.91	90.91	72.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83	79.17	87.50	54.17	95.00	87.50	100.00	66.67	91.67	66.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00	50.00	50.00	25.00	100.00	50.00	75.00	50.00	75.00	25.00

〈표 III-86〉 공공기관 유형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계속)

해당사항 없음 비율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공공 기관
154	0.00	0.00	0.00	0.00	1.54	0.86
155	0.00	0.00	25.00	21.67	19.23	18.03
156	0.00	15.38	81.25	33.33	48.46	42.06
157	0.00	0.00	0.00	0.00	2.31	1.29
158	0.00	0.00	0.00	0.00	1.54	0.86
159	0.00	0.00	0.00	0.00	0.77	0.43
160	0.00	0.00	0.00	0.00	0.77	0.43

〈표 III-87〉 공공기관 규모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성과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이상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정원 500명 미만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145	0.00	0.00	0.00	0.90
146	0.00	0.00	0.00	0.90
147	0.00	0.00	0.00	0.90
148	0.00	0.00	0.00	1.80
149	0.00	0.00	0.00	0.90
150	28.99	71.43	58.70	54.95
151	0.00	0.00	2.17	0.00
152	0.00	0.00	0.00	0.90
153	0.00	0.00	0.00	0.00
154	0.00	0.00	0.00	1.80
155	11.59	28.57	19.57	20.72
156	27.54	57.14	32.61	54.05
157	0.00	0.00	0.00	2.70
158	0.00	0.00	0.00	1.80
159	0.00	0.00	0.00	0.90
160	0.00	0.00	0.00	0.90

〈표 III-89〉 공공기관 산업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151~160)
해당사항 없음 비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비율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농업	0.00	0.00	0.00	0.00	11.59	27.54	0.00	0.00	0.00	0.00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	0.00	0.00	0.00	0.00	8.33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	0.00	0.00	0.00	0.00	33.33	0.00	0.00	0.00	0.0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도매 및 소매업	0.00	0.00	0.00	0.00	66.67	66.67	0.00	0.00	0.00	0.00
운수업	0.00	0.00	0.00	0.00	20.00	0.00	0.00	0.00	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	0.00	0.00	0.00	37.50	50.00	0.00	0.00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0.00	0.00	0.00	0.00	34.78	69.57	0.00	0.00	0.00	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7	1.47	0.00	1.47	13.24	39.71	2.94	1.47	0.00	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50.00	75.00	0.00	0.00	0.00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0.00	0.00	2.00	22.00	52.00	2.00	2.00	2.00	2.00
교육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16.67	0.00	0.00	0.0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18.18	36.36	0.00	0.00	0.00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16.67	66.67	0.00	0.00	0.00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50.00	50.00	0.00	0.00	0.00	0.00

3. 소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을 분석하였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은 기관이 존재하여 2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공운법상 자체수입비율이 높은 시장형 공기업이 이행수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기관의 인력·예산 등 조직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작은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산업별로 에너지·제조업·운수업 유형의 공공기관이 다른 유형의 공공기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넷째, 공공기관의 소속 정부 주무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문체부 등이 주무부처 정책과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높지 않았으며, 교과부·보건복지부·금감위 등에 소속된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위 조사결과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 시장형 공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업성이 강하다는 의미여서 국제적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과 지표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준정부기관보다 인력과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단순히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나 자선과 같은 시혜성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담부서 설치 및 사업·예산의 구비 여부로만 그 책임경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작은 공공기관보다 인력과 예산이 많고 조직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구비하는 것 등에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민간기업과 같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유형인 에너지·제조업·운수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객이나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이 필요한 산업유형에서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부처의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정부정책을 대행하거나 위탁 집행하는 소관의 공공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의 고유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정책적 가치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복대리인 문제와 공적 책무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의 주무부처 관련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이라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것과 같은 애로사항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더라도 그 시장이나 국민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확장된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IV.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1. 조사 배경과 면접 조사의 설계

앞서 이루어진 ISO 26000 이행수준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측정하여 공공기관의 유형·규모·산업 분류에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기관 유형과 조직 규모에 따라 달성 가능한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의 적용모델을 제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같이 규모가 크며 시장성이 높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정원 50인 미만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제시하게 되면 시장성 또는 시장의 통제가능할 수도 있고 예산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이 예산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 본래의 고유 목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유형·조직 규모·산업 분류에 적합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 고찰과 실태 분석만으로는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대표성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관별 면접 조사는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되었다. 면접 조사 기관의 선정기준은 각 산업별 대표 공공기관이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높은 기관이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만을 조사하는 것은 피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다가 포기하게 된 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이유였다. 또한 공공기관만의 수준이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KT와 SKT를 대상으로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으로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건설노조, 시민단체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여성민우회,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중소기업연구원, 공공기관에 대한 입법이나 정책을 제시한 국회의원으로는 박선숙 의원, 이종걸 의원실에 대해서도 2011년 9월과 10월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면접 조사에서 주로 질문한 내용은 ①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 ②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때 어려웠던 점, ③ 지속가능경영에 투입된 인원과 예산, ④ 향후 지속가능경영 계획, ⑤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들 등이다. 그리고 개별 공공기관들이 ISO 26000 이행수준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취약했던 부분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다. 면접 조사를 요청한 부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부서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자 조사에서는 ①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② ISO 26000 지지여부, ③ 공공기관에서 취약한 지표에 대한 의견, ④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공기관과 같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등이었다.

2. 공공기관 면접 조사 결과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2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법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있다.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운수업에 속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과 주변지역 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 위탁사업, 공항건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조사, 기타 부대사업,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ASQ 6연패를 이룬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협력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은 872명이지만 공항운영과 관련된 협력사 직원만 6,500명에 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대면하게 되는 직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 직원이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업체와 서비스 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과 협력사 성과공유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협약에 따른 평가 결과를 협력사와 재계약시 활용하여 운영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사의 날과 하계 휴양소 운영 및 명절 등에 격려품 지원, 직원들의 해외 공항 견학 및 협력사 직원들의 자녀에게 해외 영어캠프 보내주기도 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활성화와 윤리경영 지원 및 우수협력사 포상 등을 통해 그리고

협력사 종사자 복지 강화를 위하여 연간 21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협력사 관리 수준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같은 협력사 관리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운용협력사에 대한 관리는 철저한 반면, 건설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관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사회공헌팀에서 작성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이 사회공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또한 있다.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한 ISO 26000 이행수준의 프로세스 충족률은 292점이었지만 사회공헌팀에서 응답한 수준은 350점이 넘었다.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획부서에서 작성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프로세스 충족률이 356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업체와 서비스 수준협약(SLA)과 협력사 성과 공유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전략·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전문조직이다. 설립법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있다.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건설업에 속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운영’,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등이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ISO 26000 이행수준의 충족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였기에, 면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년 처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2010년과 2011년에도 발간하였다. 2008년 처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때는 외부컨설팅 업체에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대부분의 보고서 작성을 맡겼고 기관 내에서 경영혁신단을 구성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는 기획만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기고 전략부서에서 내부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을 하였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사회공헌팀이 있으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담당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업에 속하기는 하지만 직접 시공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대기업에 하도급을 주면 대기업은 다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는 사업장에서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다. 협력사 관리가 중요한 기관이기에 윤리 경영의 실천의지가 강하였다. 현재 협약을 체결하여 뇌물 수수가 있으면 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나 노동·환경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을 해 왔다. 공운법과 국가계약법에 인권이나 노동·환경에 대한 지침이 없기에 협력사와의 계약 시 적용을 하면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의 관계에 있어 공법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유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공법개선이 이루어져 원가절감이 발생하면 건설회사가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공법개선에서 비용을 절감시켜도 건설사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지만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비용을 줄이게 되면 건설사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건설사는 공법개선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납품단가 인하와 하도급 비용 절감에 몰두하게 되어 공급망 생태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사의 공법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의 일부를 건설사에 돌려주고 하도급 인하와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이 일부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 공공기관에 적합한 모델을 정하기 위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하였다. 소비자 이슈의 128번 문항 “기관은 안전한 디자인, 이용자를 위한 보호장치나 정보 제공 등 제품 디자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는가?”에서 철도시설공단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이번 인터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예”로 응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30번 “기관은 자발적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하였기에 문항을 “기관은 환불이나 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로 수정하여 재질문한 결과 “아니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132번 “기관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재확인 결과 이것은 철도공사에서 추진할 부분이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는 철도시설공단의 특성이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33번 “기관은 소비자가 쉽게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포장을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기에 질문을 “기관은 최종 소비자가 쉽게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가?”로 바꾸어 재질문 한 결과 “예”라는 응답을 받았다. 136번 “기관은 제품의 기대수명에 따른 적합한 보증을 제공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 답하였기에 “기관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대수명에 따른 적합한 보증을 제공하는가?”로 수정하여 재질문하였고 “예”로 응답받았다. 143번 “기관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권리와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와 144번 “기관은 소비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범위를 철도공사만이 아닌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결과 143번은 “예”로 응답받았고 144번은 “필요시”로 응답받았다.

- 「공운법」과 「국가계약법」 등에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권·노동·환경에 대한 감독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사와 협력사와의 계약시 적용, 기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생발전 차원에서 하도급 업체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공유제 실시가 필요하다.

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1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다. 설립법으로는 한국조폐공사법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폐류 제조(은행권·주화)’, ‘보안인쇄제품 제조(수표·우표·상품권·증지·증채권 등)’, ‘보안용지 제조(은행권 및 유가증권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용지)’, ‘특수압인 제품 제조(기념주화·훈장·메달·금속공예품 등)’, ‘ID제품 제조·발급(주민등록증·여권·카드(발급·운영 시스템) 등)’, ‘위변조방지 관련제품 제조(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위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 등)’, ‘해외 수출(은행권용지·주화·잉크 및 ID 카드 등)’이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ISO 26000 충족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 직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에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2007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여 매년 발간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기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쇄만 외부에 맡기는 수준이 되었다.

한국조폐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것이 또한 국제표준화됨에 따라 경영성과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회적 책임 성과지표인 GRI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진단, 대내·외 공유를 목표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였다. 처음 한국조폐공사가 스스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컨설팅 업체에 4천7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4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① 공사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안 제시, ② 공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경영전략 및 활동방안 제시, ③ GRI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④ TF 팀 대상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 등 제반 사항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과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지속가능경영 TF팀을 혁신기획팀을 중심으로 22명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지속

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지속가능경영 추진반 회의를 2회 실시하였다. 공사 이해관계자 조사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조사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추진반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이 지속가능경영추진반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진단도구로는 KSA-SMI⁹⁾를 사용하였고 진단 결과 1,000점 만점에 499.5점으로 타 기관 대비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한국조폐공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그것이 UN으로부터 우수 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초기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내에서 업무중복성과 부담 등으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경영진의 강한 의지로 추진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더 큰 상황이 되었다.

한국조폐공사는 제조업에 적합한 모델을 정하기 위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하였다. 환경의 72번 “기관은 독성물질과 위험물질의 양과 종류를 공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하였지만 인터뷰 결과 독성 물질이나 위험 물질을 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화폐를 제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성분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이슈의 143번 “기관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권리와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와 144번 “기관은 소비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받았지만 소비자를

9) KSA-SMI는 Malcom Baldrige 모델을 지속가능경영에 적용한 것으로, 자기평가 방식의 평가모델이다.

국민으로 확대해서 질문한 결과 “예”로 재응답을 받았다.

- 초기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내에서 업무 중복 성과 부담 등으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나, 경영진의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중앙예탁결제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예탁업무’와 ‘결제업무’, ‘국제업무’, ‘담보·증거금관리업무’, ‘발행관련업무’ 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업에 속한 공공기관 중에서 중소형 기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규모가 큰 한국정책금융공사나 한국산업은행에서도 발행하지 않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중소규모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0년 5월에 발간되었고 2012년에도 발간계획이 있다고 한다. 처음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였다. 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많이 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다.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들어간

비용은 총 8천만원으로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 금융업에 속해 있기에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인원이 부족한 측면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이유로 신규 콘텐츠를 찾기 어려워서 2012년에 발간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새로운 내용이 없더라도 기관의 성과를 매년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2011년에 간단하게라도 발간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예탁 결제 업무의 특성상 SI 업체에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리가 아직까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뇌물 수수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약 해지와 같은 윤리 경영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인권이나 노동까지는 아직 고려되지 못하였다. SI 업체를 협력사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1차 협력사로 인식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중소형 기관과 금융업에 적합한 모델을 정하기 위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하였다. 노동관행의 62번 문항 “기관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는 어떤 경향인가?”에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기에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하였다. 이에 보기 A를 ‘과거 대비 하락세’에서 ‘과거 대비 하락세 또는 없음’으로 바꾸어 재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의 72번 문항 ‘기관은 독성물질과 위험물질의 양과 종류를 공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금융업 특성상 특별히 기관에서 독성 물질이나 위험 물질을 쓸 일이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자체 청사를 쓰는 기관에서는 청소나 냉난방에서 유독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조사지에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73번 “기관의 화학물질 관리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받았지만 다시 물어본 결과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4번 “기관은 최근 3년간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재질문한 결과 하락세라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의 92번 문항 “기관은 의사결정 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고려하여 반영하는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받았지만 건축물 건설 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기에 “예”로 재응답을 받았다. 95번 “기관은 제품과 서비스에 친환경 설계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받았지만 기관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예”로 재응답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 이슈 128번 문항 “기관은 안전한 디자인, 이용자를 위한 보호 장치나 정보 제공 등 제품 디자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제품을 서비스로 바꾸어 다시 질문한 결과 “예”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129번 “기관은 유해 화학품이 사용된 제품을 판매할 때 이를 표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가?”와 130번 “기관은 자발적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기관은 최근 3년간 리콜 사례가 있는가?”, “기관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한 결과 기관의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3번 “기관은 소비자가 쉽게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포장하는가?”에서 제품을 서비스로 바꾸어 질문한 결과 “예”로 답변을 얻었다. 135번 “기관은 소비자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받았지만 확인 결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136번 “기관은 제품의 기대수명에 따른 적합한 보증을 제공하는가?”에서 제품을 서비스로 바꾸어 해석한 결과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왔다. 156번 “기관의 기술 개발은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가?”에서 지역을 넓게 보아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중소형 기관과 금융업에 적합한 모델을 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적합한 개별 조사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지원사업 및 폐광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1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설립근거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이며 주무부처는 지식경제부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광해관리계획의 수립 및 광해관리대책 강구’와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광해관리기술의 선진화 주도’ 등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우수사례이기에 선정한 것은 아니다. 200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부딪쳐 중간에 포기했던 기관이다. 하지만 2011년 7월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되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 조사를 요청하였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09년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을 포기하였는지와 다시 새롭게 추진하게 된 배경, 정부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중소형 기관도 달성가능한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09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예산도 책정하고 사전 조사도 실시하였지만 중간에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업무 부담 때문이었다. 총직원이 2백명인 상황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였으나 2명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도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고 기관장 의지도 부족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추진할 동력이 떨어져 보고서 발간이 중지되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지 않고 기관자체수입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예산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1년 8월 기관장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상황에서 2011년 경영평가부터 지속가능경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관에서 인식하자 예전과 다르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광해관리라는 환경 보호에 특화된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하였다. 인권의 9번 문항 “기관의 실사 관리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리문서가 없음”이라고 답했었지만 재확인 결과 “관리문서가 있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번 “기관은 실사를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했었으나 재확인결과 ‘자체기관’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향후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 성과에서 89번 “기관은 중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기록·보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광해관리를 하는 기관의 1차 협력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공단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웃소싱을 주어 일을 수행하는 업체가 하는 주요 사업 성과는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에 반영하면서 사회적 책임의 환경 성과에 대해 회피를 한다는 것은 모순될 수 있으므로 차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소비자 이슈의 128번 “기관은 안전한 디자인, 이용자를 위한 보호 장치나 정보 제공 등 제품 디자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는가?”와 132번 “기관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133번 “기관은 소비자가 쉽게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포장하는가?”, 136번 “기관은 제품의 기대수명에 따른 적합한 보증을 제공하는가?”에서 제품을 제품이나 용역으로 바꾸어 재질문한 결과 “예”로 답변을 받았다. 134번 “기관은 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에서 소비자를 국민으로 바꾸어 재질문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에서 “예”로 재답변을 받았다.

- 공단의 주요사업이 폐광지역 복구이므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역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특화된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다.

3. 민간기업 면접 조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면접 조사를 추진하였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SKT와 KT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두 기업은 오랫동안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CEO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기업은 통신업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도 상대 기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서로 겨루고 있는 상황이다.

가. SKT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무선호출 업무를 인수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무선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 영업수익

12조원, 당기순이익 1조 4천억원의 기업으로 시장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06년에 발간한 바 있다. 이후 2007년에는 발간하지 않고 2008년부터는 매년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할 때 담당 부서는 윤리경영팀이었지만 현재는 CSR팀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환경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처음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시장 동향 파악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보고서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검증에 6천만원과 디자인에 6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책자로 4천부를 발행하고 있다. 4천부 중에서 2천부는 우편으로 배포되고 있었으며 600부는 내부 직원용으로 배포되었다. 외부로 배포되는 책자는 대부분 외국계 투자기관과 학생, 시민단체에게 요청받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특별히 국내 연기금에서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혀 왔다.

2006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배경에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개혁연대, 환경운동단체, 봉사단체 등에서의 요구가 있었으며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경영진의 의지로 강하게 추진되었었다. 당시 SK 그룹의 주력계열사라 할 수 있는 SKT와 SK에너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계열사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13개 계열사가 모여 환경녹색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여 2015년까지 각 회사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환경보고서, 사회공헌 백서 중 한 개 이상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그룹 전체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ISO 26000 이행수준은 800점 이상으로 응답해 왔으나 정확한 점수는 경쟁 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으므로, 공공기관

에서 달성하기 어려웠던 문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실시하였다. 인권 성과 10번 “기관은 실사를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였다. 휴대폰 제조사나 통신 장비 제조사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운영 협력사만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하지 못했다. 경비업체나 청소업체와 같은 운영 협력사를 1차 협력사로 본다면 인권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소비자 이슈 141번 “기관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서비스 중단 전에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다고 답변해 왔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50번 “기관은 지역사회 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는가?”에서 기지국 건설 시 문화재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대기업 중에서 전 계열사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기업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이었으나 한국 사회의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문제이다.¹⁰⁾

나. KT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설립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민영화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선이동통신과 초고속통신망, 유선통신, IPTV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매출액은 20조원으로 통신업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SKT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에 처음 발간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10) 그룹 회장 및 부회장의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2011. 12. 17 참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외부의 요구보다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SKT와 다르게 자발적인 면이 좀 더 강한 상황이었다. 보고서 발간 부서도 처음에는 기획전략을 담당하던 혁신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여 SKT와는 차별성을 보였으며 자체 인원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기관장의 교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홍보실의 CSR팀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담당할 정도로 그 위상이 약해진 상황이었다.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었을 때 정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연구·개발비를 보다 더 지원해주거나 또는 무선 주파수 배정 때 고려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개별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체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면 경영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현재 최대 주주인데 정관 개정이나 임원 임명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언급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 투자 등이 수반된다면 좀 더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ISO 26000 이행수준은 800점 이상으로만 답변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취약한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다. 인권 성과 10번 문항 “기관은 실사를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2차 협력사까지 동반 성장 프로그램과 인권 실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정운영관행 117번 “기관의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수준을 어떠한가?”에 대하여 6개 요건 중 6개를 전부 충족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이슈 143번 “기관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권리와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와 144번 “기관은 소비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아동 대상의 친환경 소비 촉진 교육을 운영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최근 주무부처가 사회공헌활동만 권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가.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은 2011년 6월 24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산별노동조합이다. 공공부문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부출연연구소, 국립대학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업에서도 참여하고 있기에 공공부문 노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에는 노동조합의 정책을 맡고 있는 박준형 정책실장이 응해주었다.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노동조합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었고 공공기관 일반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회하였다.

우선 공공기관이 공공성 추구의 방법으로 설립 목적상의 주요사업을 잘하는 것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공성 추구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두 가지 모두 공공성 추구의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노조에서는 ISO 26000의 공공기관 도입에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공공기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이 선정되고 있기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정부권장정책지표와 ISO 26000 중에 어떤 것이 보다 더 공공성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ISO 26000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공공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었으며 정부권장정책 지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권장 정책 지표는 사회적 책임 지표로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표준인 ISO 26000에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망 사슬에서 1차 협력사나 2차, 3차 협력사에 대한 인권과 노동기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에 노조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력사 근로자의 인권이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협력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원가를 부풀리기 위하여 인건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월급은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은 일이 비일비재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소위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특별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파업을 하고 난 뒤에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설명해 주었다. 공공기관에서 외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으며 위탁업체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정 기준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설문문항 중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취약한 문항을 중심으로 타당성 의견을 물었다. 인권 문항 중 10번 “기관은 실사를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필수 문항이라고 답변했다. 노조가 파악하는 바로는 공공기관의 1차 협력사에 대하여 협력사에 대해 인권 실사를 하는 곳은 거의 없는데 실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사업의 하청이나 외주위탁을 할 때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다. 민간위탁이나 외주화를 할 때에 외주업체는 공공기관보다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인권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 메카니즘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거나 적극적인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 노조가 아닌 다른 민간위탁업체 노조와의 협력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나 노조 입장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현재 철도 매점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이 아니나 노조는 같은 철도조합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협력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산별노조에 들어가 있어 협력업체와 계약체결 시 노조가 간접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¹¹⁾

노동관행 성과 55번 “기관은 하청업체, 임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11)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근로조건요구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법적인 교섭사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도의적 책임과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편이고, 실제로 하청업체의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개입한 실제 사례는 없다.

에게도 보건과 안전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노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병원의 간병노동자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간호사들처럼 감염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나 병원에서 관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유해약품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있기에 청소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철로보수 용역업체 직원은 철도공사 직원에 비하여 위험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철로보수는 기차가 안 다닐 때 보수를 하게 되는데, 항상 신호체계와 설비보수하시는 분과 연계가 되어야 기차를 피할 수 있다. 같은 직원끼리는 통신이 원만하여 기차를 피하기가 용이한데 외주 사업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외주를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신 연계가 어려웠다. 사고의 위험이 많고 실제로 인명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¹²⁾ 재하청문제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특정업무의 외주불가나 특정부분의 2·3차 하청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조에서 제시하였다.

노동관행 성과 64번 “기관은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노조는 필요할 것 같으나 현재 노조의 관심사는 정년연장에 있음을 밝혔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시 본인이 원해서 할 경우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년연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퇴사 후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노조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었다.

공정거래 관행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광명사고 이후

12) 2011년 12월 9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철도 보수공사를 하던 인부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조원이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외부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있다. 노조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위해서 내부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공공기관의 조직보호 본능이 앞섬으로써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한 행동의 공익적 목적을 망각한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¹³⁾

노조와 공공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 프로그램 개발은 현정부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있기에 공공기관 내부에서 노조가 어떠한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노동조합이 무엇인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화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어서 외부적으로 사회운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외부의 사회운동단체하고만 결합한 공공성 강화 운동 수준에만 그치고 있기에 공공기관 내에서도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식이었다. 현재는 공공기관 내부 역학관계상 논의가 불가능하지만 노조에서는 공공기관과 같이 사회공헌프로그램, 윤리경영 확대 방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직장 내 따돌림, 여성의 성추행 문제에 대하여 사측에 문제제기, 법적 보호 및 심리치료 등 보호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하는 사측의 일방적, 전시성 사회공헌활동은 근로자의 자발적 봉사의 의미보다는 또 다른 노동의 일환으로

13) 철도공사의 KTX 사고원인 언론보도 협조한 직원의 징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도공사는 오히려 철도의 안전대책 강화에 힘써야 한다. 참여연대 논평. 2011.8.29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기에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에서 갑자기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각종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자 근로자를 강제 동원하여 보여주기식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만족도와 자발성을 감소시키고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를 퇴색시키게 한다는 의견이었다.

ISO 26000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려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노조는 기꺼이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나 시민 단체와의 소통 없이 정부에서 갑자기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라는 식의 정책은 일시적인 정책이기에 지지할 의사가 없으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아직 노조 내부에서도 간부급에서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하여 전체구성원들과 생각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2011년 8월 1일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상임임원 후보로 1/3 이상 추천되도록 한 것과 공공성 평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노조의 의견이 기관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어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도 직원대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공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는데, 현재의 경영효율화 측면만 강조된 경영평가에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 성과급을 차등 배분하는 것은 근로자의 무한 경쟁만을 야기하고 직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조직 화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영효율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공공성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이 공공성 추구의 방법으로 설립 목적상의 주요 사업을 잘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는 것도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나.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2007년 3월 2일 창립한 노조로 건설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7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건설노동자는 3차 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기에 건설노조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에는 송주현 정책기획실장이 응해 주었다. 앞서 인터뷰 대상인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포함되지만 건설노조 가입자 중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없기에 건설노조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바라는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였다.

건설산업은 선생산 후판매를 하는 일반제조업과 달리 선판매 후 생산을 하는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장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근로관계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정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 비가 많이 오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일을 못 한다는 특성도 있다. 더불어 건설 산업은 경기 변동과 국가 정책에 민감하여 다른 산업의 근로자에 비하여 건설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공사 발주처와 원청업체·하청업체·시공참여자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발주처에서 시공참여자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막기 위하여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도급계약서와 유사한 형태의 성과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건설회사에서는 건설 근로자의 숙련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이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건설 노조 입장에서는 하도급 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라면 당연히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할 운전자금도 없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 제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45일에서 60일 뒤에 유보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은 공사 전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발주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청업체는 발주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하청업체는 다시 원청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기에 건설노조에서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지역주민 우선 고용, ② 체불(유보)임금과 어음 근절, ③ 불법하도급 근절, ④ 표준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⑤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사업 추진 등을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하청업체에서 요구안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공공기관이 입찰 심사 때 감점을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을 하고 나서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과 입찰에 제한이 걸리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입찰 제한이 하청업체에게 더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을 하청업체에 요구하면서 하도급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건설 노조에서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처럼 불법하도급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조건이 일반화되게 되면 다른 민간 건설사는 공공기관을 따라가기에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 건설산업에서는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공생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999년 9월 9일 창립하여 예산감시, 주민참여제도, 정보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페어라이프(Fair Life)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를 창립하여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향신문에서 발표하는 공기업 지속가능지수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였기에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다. 인터뷰에는 좋은예산센터 최인옥 팀장과 좋은기업센터 신태중 팀장이 응답해주었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공공기관들이 내부구성원의 이익(고임금·특혜성·복리후생)만을 추구하고 있기에 언론에서 문제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사회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인식되며 정부조직보다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었다.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항상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내부경영에서의 효율성·사회적 도덕성 규율을 강화하고, 자체 자정에 관한 논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항상 타율적인 방향의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상부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공적 시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공공기관을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어디가 더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에 곤란하다는 의견이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의 기대치가 좀 더 높아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쉽게 비판적이 된다는 분석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공기관이 법에 규정한 고유목적 사업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공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까지도 수행해야 공공성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예를 들어 KTX 사고와 선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경영 전반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예로 국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및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대형 평수의 아파트 건설과 같이 이익이 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닌지,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평수 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서민주택공급이라는 공적 책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다른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적인 사업 대신에 상업적 이익만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내부 직원의 임금 및 복지 혜택만을 높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라면 고유사업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SOC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환경파괴를 최소화거나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기에 환경보호 비용은 예방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면 관철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ISO 26000 제정때 참가하여 소비자 이슈를 검토하였기에 소비자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ISO 26000의 소비자이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B2B 성격을 가진 기업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해 왔다. POSCO나 삼성 SDI 등과 같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은 소비자이슈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답해 왔다. 하지만 삼성 SDI는 직접 소비자와는 상관은 없지만 라벨을 붙여 인증 현황을 공시한다고 알려졌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직접 소비자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에 소비자이슈를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SRI)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영향력이 강한 연·기금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수익성만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연·기금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었다. 만약 연·기금에서 기업 경영진에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주식을 처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업 경영진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연·기금에서 주식을 매각하게 되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었다. 연·기금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할 때 해당기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요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경영 프로그램으로는 감시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서 함께하는 시민운동에서는 도로공사와의 청렴옴부즈만 참여경험이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건설 입찰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경영에 관련된 논의를 한다거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익위원들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익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운영을 한다면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전문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그만한 인력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옴부즈만 역할에 참석하는 것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던가 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이 공공기관에서 확산이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그렇지 않은 정치인에 비해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 준정부기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SRI)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여성 인권과 노동을 위한 시민단체로 출범하였다. 현재는 여성인권만이 아닌 양성 평등을 추구하고 있기에 여성 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회원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9개 지부에서 1,500여 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본부에는 성폭력 상담소와 미디어 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어, 인권에 특화되어 있는 단체라 할 수 있기에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인터뷰에는 여성 노동 담당자인 최진협 활동가가 응해 주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을

먼저 수행해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기 쉽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현재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이었으며 정규직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부득이하게 아웃소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협력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업체 선정 시 인권이나 노동 항목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협력사에 대한 관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만약 협력사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공공기관이 협력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다.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끝나도 직장 상사가 근무하고 있으면 정시 퇴근이 어렵기에 업무시간이 길어지고 퇴근이 늦어져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했다. 가사 노동을 여성이 담당해야 하니까 여성근로자는 일찍 퇴근해야 한다거나 여성만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은 양성 평등에 어긋나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남성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시퇴근이나 육아휴직의 확산을 위해서는 직원 구성원 중에서도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솔선수범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현재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인식이었다. 만약 공공기관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공공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은 충분히 있으나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공공 보육시설이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민간 보육시설에 비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족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공공기관 여성 승진에 대해서는 유리 천장이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할당 승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여성 인력의 채용이 증가하면서 채용에 있어서는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었다.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 여성할당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지만 그보다는 여성승진 할당제도가 정착되어 여성 신규입사자가 10년 뒤 중간관리자가 되고 그 중에서 상임 이사가 나오는 정책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 관행상 충성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여성에게도 강요되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중에서도 인사팀장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 여성단체로서 공공기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며, 최근 여성 인력의 채용이 증가하면서 채용에 있어서는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중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었다.

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인력은 60명으로 경제학과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의 전공자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는 중소기업 규제법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센터가 있다.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모델이 만들어져 공공기관들이 거래 협력 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경영을 전파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ISO 26000이 규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센터를 찾아 중소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현재 정부가 공정거래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 중소기업 관련해서 납품단가, 현금 결제 등 공정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중소기업에게도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운영관행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도 아직까지 중소기업 간 공정운영관행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건설사가 1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만 논의가 되었지 1차 하도급 업체가 다시 2차와 3차 하도급 업체까지 현금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직원 인권과 노동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에 대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ISO 26000에서 권고하는 인권과 노동 지침은 이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이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직장보육시설과 체육시설 등 복지혜택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되기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의 기업을 지칭하므로 그 경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에 직원 복지 후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 환경이나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항목들이 있기에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었다.

우선 ISO 26000에 대하여 현재 중소기업들은 규제로 느껴지고 무서워하지만 법령과 중복되는 지표문항이 많아 법만 잘 지켜도 ISO 26000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ISO 26000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여 더 힘든 상황이었다. 컨설팅회사에 맡기면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이 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기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추세였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SO 26000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저렴하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 CEO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이 있으면 중소기업들에도 보다 수월하게 지속가능경영이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은 ISO 26000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더 힘든 상황이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ISO 26000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바. 국회의원(1)

민주당 박선숙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2010년 7월 1일 기업 경영공시 때 사회 책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기에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인터뷰에는 법률 개정안을 작성한 이상원 비서관이 응해 주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지배구조·근로조건·노사관계·지역사회 참여·환경·반부패·인권·법규위반 등이다. 공시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박선숙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현재는 보류 상태이다. 민간기업에서 사회 책임 정보를 공시하는데, 경영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박선숙 의원 입장은 찬성이었다.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단순한 사회봉사활동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민간기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은 단순한 사회봉사활동에만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 금융회사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을 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에 산하 공공기관도 인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금융감독원¹⁴⁾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일한다는 인식이 없고 우월한 감독자만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기에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인 정부권장정책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지표 선정방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ISO 26000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추출하여 정부권장정책 이행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ISO 26000은 추상화되어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인 정부권장정책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지표 선정방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ISO 26000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추출하여 정부권장정책 이행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사. 국회의원(2)

이종걸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 상임위로서 「공운법」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1년 8월 1일 공공성 평가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이종걸 국회의원이 제출하였기에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이에 법률개정안을 작성한 김상일 보좌관이 응답해 주었다.

14) 금융감독원은 2008년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09년부터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종걸 의원(2011)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평가 독립성이 떨어지고 경영효율화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단순화 및 공공기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기구 변경, 공공서비스 성격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독립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면접 조사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는데 우선 국가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약화되어 근본적인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평이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외부에서 지적되자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게 경영효율화만 강조하여 본말이 전도된 행동을 공공기관들이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과 주택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수익극대화를 위한 땅장사와 대형아파트 건축에만 몰두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ISO 26000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일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성 평가만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법개정안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ISO 26000의 모든 지표를 가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ISO 26000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만을 선별하여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었다.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ISO 26000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ISO 26000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만을 선별하여 정부권장 정책이행실적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었다.

5. 소결

공공기관 개별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주요 요인 또는 동기로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는 데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기관장의 잦은 교체, 인력·예산상의 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소규모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에 예산 지원의 문제보다는 인력을 보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예산이 아닌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 전문 담당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만 지속가능경영이 이루어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아웃소싱·구매·공사 발주·R&D 지원·주식 투자시에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감안한다면, 그것은 민간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더 강하게 할 유인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조사 대상

이었던 민간기업인 SKT와 KT가 이런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지원이나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감안한 것이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소관 주무부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추진과 의지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 3사인 SKT, KT, LG U+ 등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의 수준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지속가능경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통신 회사들에 대해 산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횟수나 기부금액 등만을 물어보기보다는, 전사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을 조사하고 권장·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2011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준비하였으나, 기관장이 교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간을 포기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다. 통신 3사나 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확인하고 연구 개발비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수행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인센티브 설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유사하게 다른 부처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한다면 결국 공공기관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수준도 떨어지고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일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강조될 수는 있으나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기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 주무부처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이해할 수 있게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각 주무부처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공시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접 조사 결과 현재의 「공운법」에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력사와의 인권을 실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계약조건으로 내걸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8월 1일 이종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는 공운법 제48조에 공공성을 측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이보다는 제15조 1항의 경영혁신을 지속가능경영으로 바꾸고, 제 50조 1항에 4호를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항에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추가하는 입법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한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용 체크리스트로 질문 문항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보다는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질문지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소비자 이슈에서 소비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표시하는 것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 문항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 집행에 있어서 외주 및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에 한정해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하도록 설문지를 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V-1〉 이해관계자 면담 요약

대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입장	공공기관 취약성	ISO 26000 지지
공공기관	- 사업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지속가능경영 필요	- 경영진의 의지, 인식 취약	지지
민간기업	- 대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	-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취약성 - 수동적 사회공헌 활동 강조	지지 (경제단체는 새로운 규제로 봄)
노동조합	- 공공성 추구 모델로 이해	-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협력과 공생발전 문제	지지
시민단체	- 공공성 강화 모델로 이해	- 정부의 지원 부족	지지
국회의원	- 공공성 강화 모델로 이해	-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의 문제점	지지

V. 공공기관 경영의 통합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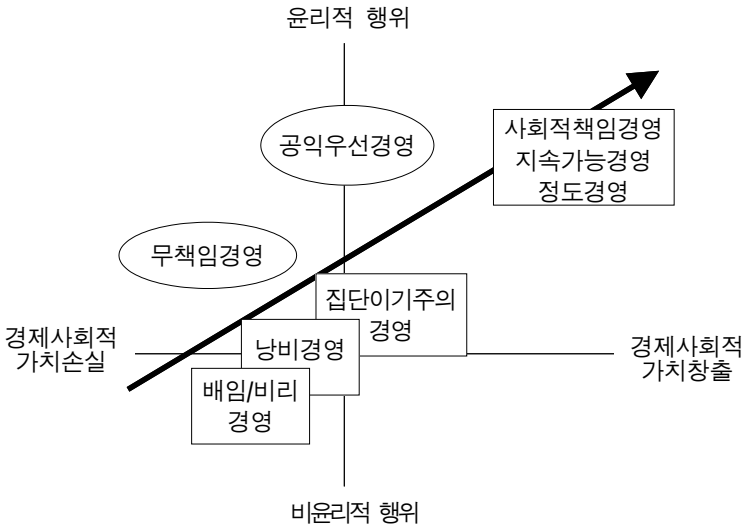
1.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현황과 단계별 추진

현재 공공기관은 정책적 목적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수단으로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성이나 영리 추구가 존립의 목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다. 즉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소유권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고 공적 책무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의 통제기관으로 주무부처가 있고,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통제하는 정부부처로서 기획재정부가 있다.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PSO(public service obligation)와 공공재 요금과 같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손실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업 성격이 국가 정책적으로 재정확보가 목적이거나 사행성 사업과 같이 사회적, 도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경영진의 대리인 행위가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윤리적·비윤리적 행위의 경계선에 존재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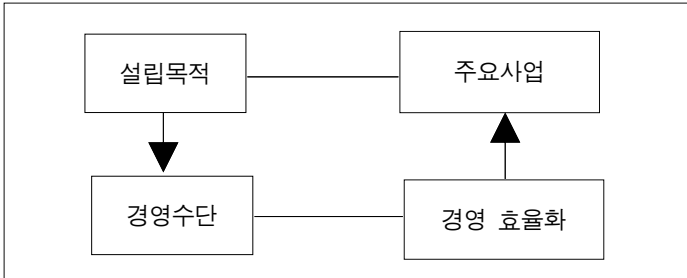
있으므로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와 경영진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의 모델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림 V-1] 공공기관 책임경영 범위



만약에 정부가 위탁자로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적 공익성 확보와 수단적 가치로서 경영효율화 통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보듯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영리조직까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경영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좁은 의미의 경제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정책을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공기관 법·제도 중에서 공적 책무성이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제도·규정을 조사해 보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적·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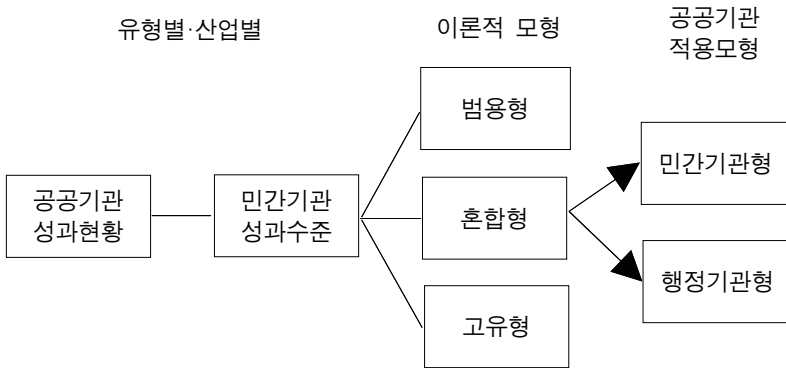
[그림 V-2] 공공기관 경영추구 방향



공공기관의 내부 성과관리 모형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 보면 다양한 성과평가 및 관리 모형이 개발되어 있다(Guerra-Lopez, 2008;39-43). 실제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관리 모형은 민간기업의 성과평가, 성과관리에서 영향을 받았으므로 행정기관 조직과 민간기업 조직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모델에서부터 혼합형, 고유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Radin, 2006). 공공기관의 유형구분도 기업성·수익성의 성격과 조직규모를 기준으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공익성을 갖는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두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고 있다. 공운법의 공공기관 유형과 업종의 특성을 세분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현행 성과평가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영평가와 경영지침으로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① 민간기업의 성과평가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형 성과평가 모형과 ② 행정기관형 성과평가 모델로 구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내부성과평가 도입 수준이 편차가 심하여 ① 민간기업형, ② 혼합형, ③ 행정기관형의 세가지 모형으로 분류하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기업,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형 성과관리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특히 조직 규모가 크고 국제경쟁력이 필요한 공기업은 고유 성과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같이 조직규모도 크고 에너지, SOC와 같은 사업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기관규모도 작고 정부의 사업을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적·환경적 지표 중에서 사업의 특성과 부합하는 공통적 적용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3] 공공기관 성과관리 접근방식



공공기관의 내부 성과관리가 BSC에 근거하고 있고 외부의 정부의 경영평가도 PDCA 모델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GRI나 ISO 26000를 기준으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수준 또는 단계에 따라 적용지표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정부의 경영평가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통합하려 한다면 앞서 논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지표와 공적 책무성의 지표가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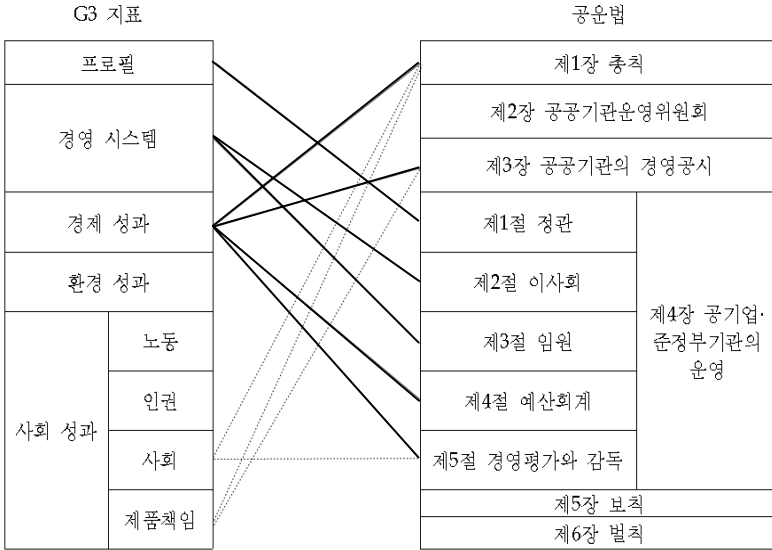
적인 것부터 적용한 후 지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우리는 공공기관 유형별, 산업유형별, 주무부처별, 조직 규모별 지속경영환경과 추진정도가 다름을 ISO 26000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부이지만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기업과 같이 조직규모가 크고 민간기업의 수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사업의 특성과 조직규모가 적은 준정부기관에게 공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준정부기관은 조직의 사업특성과 역량을 감안하여 지배구조개선과 기관장의 지속가능경영 의지의 천명, 그리고 정책수립과 같은 윤리적·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차원에서 준정부기관에서는 기본적인 기관장의 리더십 확립,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조, 주요사업 중심의 사회적 참여와 같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증적으로 국제수준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 6장과 5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운법과 G3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공운법은 경영효율화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속가능경영의 'Triple bottom line'의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사회적 성과에 대한 언급도 미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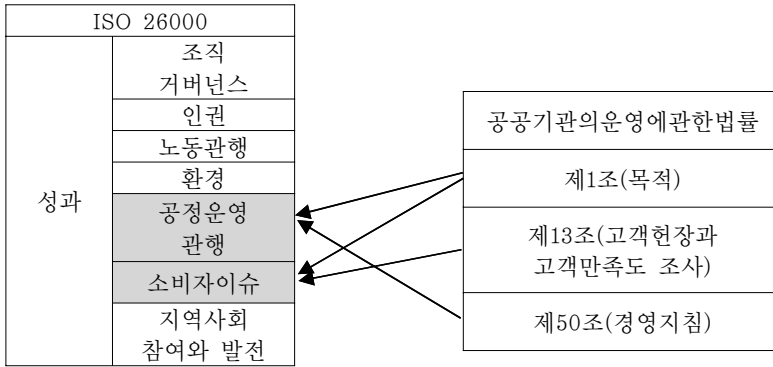
[그림 V-4] G3 지표와 공운법과의 관계



주: 실선은 강한 관계고 점선은 약한 관계를 의미

사회적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와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50조(경영지침) 등이다. 제1조(목적)에서는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1조에서는 운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기에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3조에서는 이해관계자 중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강제하는 조항이다. 제50조는 경영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윤리 경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V-5] ISO 26000 성과와 공운법과의 관계



ISO 26000과 「공운법」을 비교하면 ISO 26000의 성과 중에서 공정운영 관행과 소비자 이슈에 한정되어 법률에 명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초기단계를 윤리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행 공운법은 윤리 경영에 한정되어 있기에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초기 단계 수준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업보다 더 엄격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기업을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환경경영 단계를 지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상황에 있지만 공공기관 전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운법은 주요사업과 경영 효율화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어 있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기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이나 노동에 대한 실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나 사법기관의 조치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책임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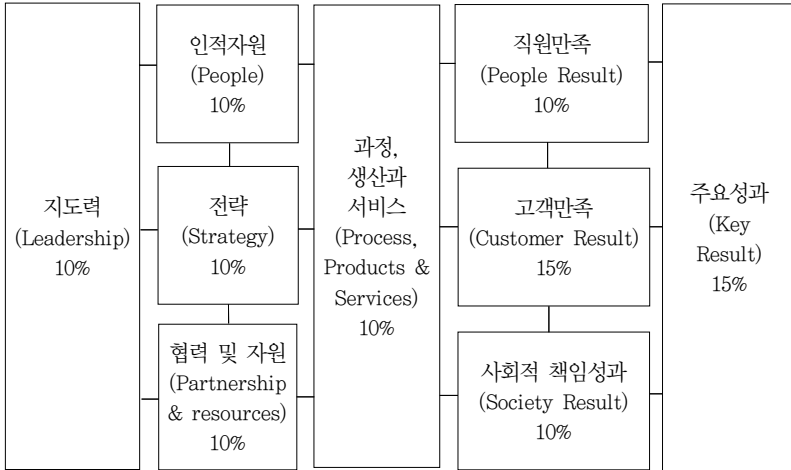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협력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운법에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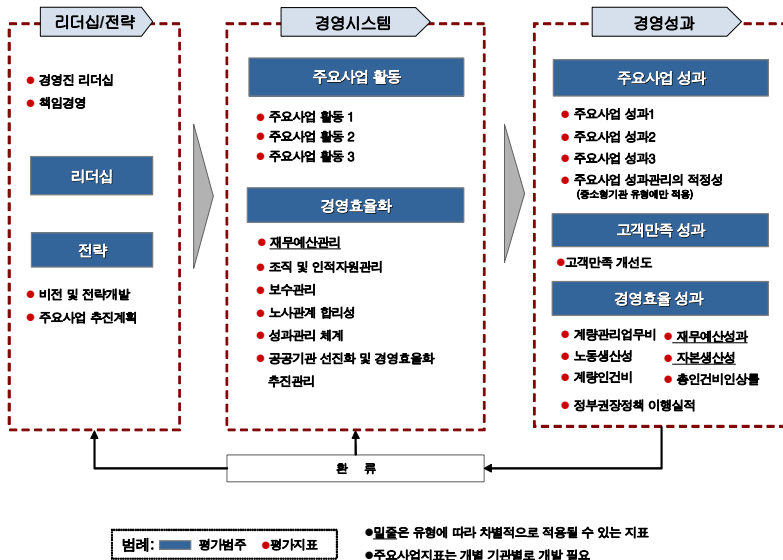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1984년부터 시작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단순히 평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 월급여의 500%까지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직원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는 2010년과 달리 지표 체계가 바뀌었다.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모델은 미국의 말콤볼브리지 모델에 기반한 평가로 경영효율성이 강조된 평가체계였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서 말콤볼브리지 모델로만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정부의 후반기 국정목표로 ‘공정한 사회’가 설정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경영평가단에서는 미국의 말콤볼브리지 모델과 유사하나 사회적 책임의 성과가 강조되는 유럽의 EFQM 모델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수정하였다.

[그림 V-6] 유럽품질재단 모형(EFQM)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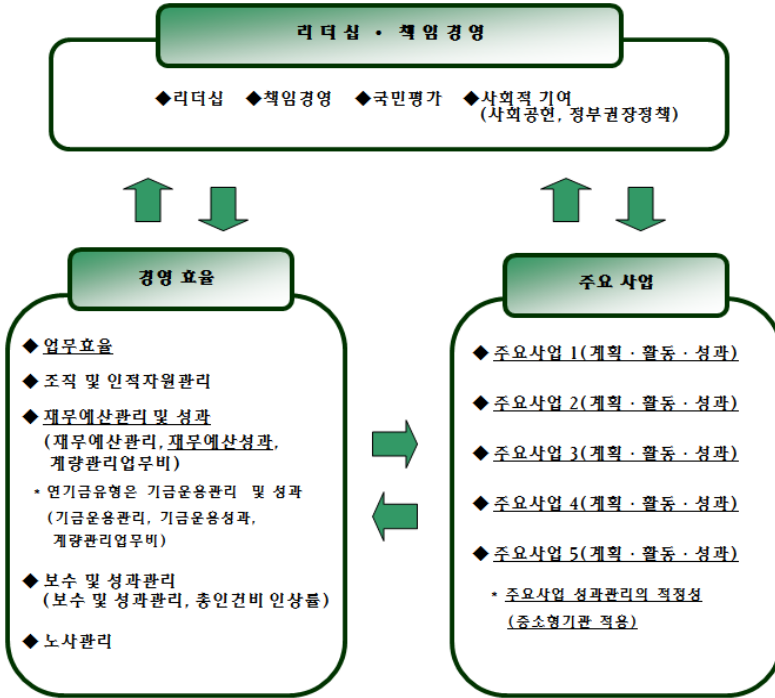


[그림 V-7]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 범주 및 구성 체계



자료: EFQM, "EFQM Transition Guide-How to upgrade to the EFQM Excellence Mode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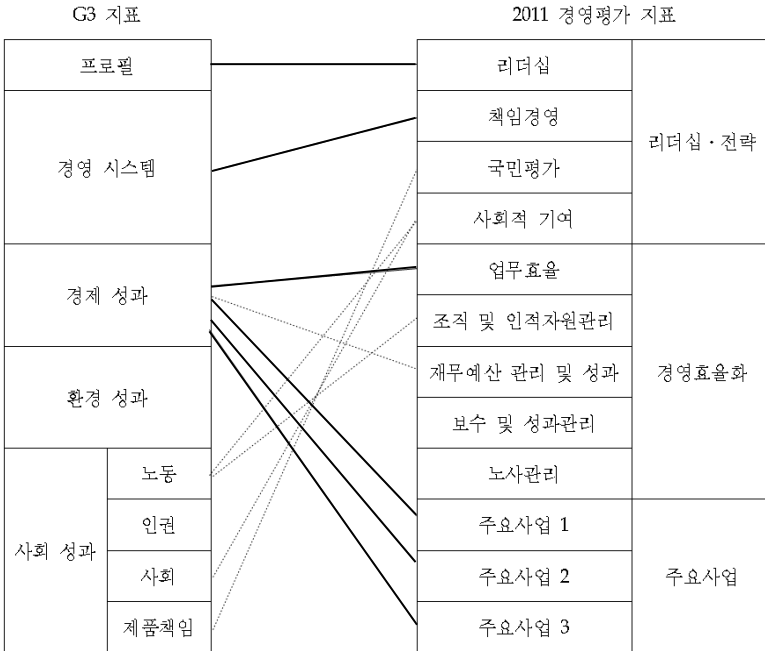
[그림 V-8]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 범주 및 구성 체계



- 밑줄은 유형 또는 기관에 따라 평가지표 또는 세부평가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는 지표
- 주요사업은 기관별로 5개 이내로 구성

라영재 · 윤태범(2010)에서는 GRI G3에 기초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지표는 경제적 성과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에 보고의 충실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2011년에 바뀐 경영평가와 GRI G3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ISO 26000은 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환경과 사회적 성과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기관의 성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림 V-9] GRI G3 지표와 2011 경영평가 지표와의 관계



주: 실선은 강한 관계고 점선은 약한 관계를 의미

GRI G3의 프로파일은 경영평가의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GRI G3의 프로파일은 좀 더 넓은 범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이 좀 더 경제적인 성과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책임 부분이 빠져 있다. 마찬가지로 GRI G3의 경영시스템과 경영평가의 책임경영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경영평가의 목표가 경제적 성과에만 치중되어 있기에 책임경영 지표에서 기관의 시스템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 있기에

연관성이 있는 편이다. 업무 효율과 주요사업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중장기 재무계획을 제외하면 큰 상관은 없으며,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지적을 받은 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GRI G3 경제성과 중에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많지 않다. 비교적 상세한 경제적 성과와 달리 Triple Bottom Line의 한 축인 환경적 성과를 보여주는 경영평가 지표는 없는 상황이다. ISO 26000 충족률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부분이 환경 성과였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환경 지표가 없었기에 충족률이 낮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성과 중에 노동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연계성이 있으며 사회는 '사회적 기여'에서 일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책임은 '국민평가'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다. 경영효율화 지표 중 보수 및 성과관리와 노사관리는 GRI G3와 거리가 있는 지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표적인 활동과 성과로 측정해야 하는 지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서 공정한 사회가 중요한 국정목표로 설정되면서 2011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성과의 반영률이 높아졌지만 그것이 공정성이나 사회적 책임성을 대표하는 지표인지는 의문이다. 2010년까지의 평가에서는 사회적 책임 성과를 단순히 정부권장정책으로 규정하고 계량적인 방법으로만 측정하였으나 2011년 평가모델부터는 사회적 기여라는 항목으로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가중치도 2점에서 7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기여에서 계량지표인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지표 타당성은 좀 더 검증해야 할 것 같다.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지표는 경영평가단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적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표이므로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활동의 지표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ISO 26000 이행수준 체크리스트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대표성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사회적 책임 성과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과의 비교 분석은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얼마나 세계적 표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크게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목표부여로 평가를 하게 되어 가이드라인만 충족하게 되면 만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51% 구매하게 되면 만점인 0.8점을 받게 된다.

정부권장정책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ISO 26000 체크리스트에서도 물어보는 항목이 있으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에서 11개 지표 중에 5개 지표가 ISO 26000지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1.0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0.3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0.8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0.3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생산품 우선구매(0.3점) 등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5개 지표의 합산 가중치는 2.7점으로 계량평가 5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권장정책의 세부항목은 세계적인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표준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부권장정책 항목이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사회공헌활동이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관련성이 있는 6개 지표 중에 우선 단시간 근로제 운용 실적은 ISO 26000 체크리스트의 노동의 성과 45번과 46번 문항과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은 ISO 26000 체크리스트의 인권 성과 22번 문항과 연관성이 있다. 동반성장 실적은 체크리스트의 공정은행관행 109번과 11번 문항과 연관성이 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와 ⑩ 에너지이용 합리화는 체크리스트 환경의 성과 79번 문항과 연관성이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53번과 154번 문항과 연관성이 있다. 정부권장정책 6개 지표가 ISO 26000 체크리스트와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 항목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에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 볼 수 없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정부권장정책들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사회적 책임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11개 성과지표만 잘 달성하도록 하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부정적 결과로 인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만 수동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공공기관이 노력하고 달성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단순히 정부 주무부처를 위해서 추진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영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현재의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국제적인 기준인 GRI나 ISO 26000 등 국제적 표준을 참고하고 기관의 고유사업을 고려하여 재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1〉 2011년 정부권장정책 지표와 ISO 26000 체크리스트와의 관계

세부평가 항목	ISO 26000 체크리스트
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1.0점)	해당사항 없음
② 단시간근로제 운용 실적(0.5점)	노동 45번, 46번
③ 장애인 의무 고용(0.4점)	인권 22번
④ 국가유공자 우선채용(0.3점)	해당사항 없음
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0.8점)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포함)	해당사항 없음
⑥ 동반성장 실적(0.5점)	공정운영관행 109번, 110번
⑦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0.3점)	해당사항 없음
⑧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생산품 우선구매(0.3점)	해당사항 없음
⑨ 친환경상품 의무구매(0.3점)	환경 79번
⑩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0.3점)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153번, 154번
⑪ 에너지이용 합리화(LED조명 보급 포함)(0.3점)	환경 79번

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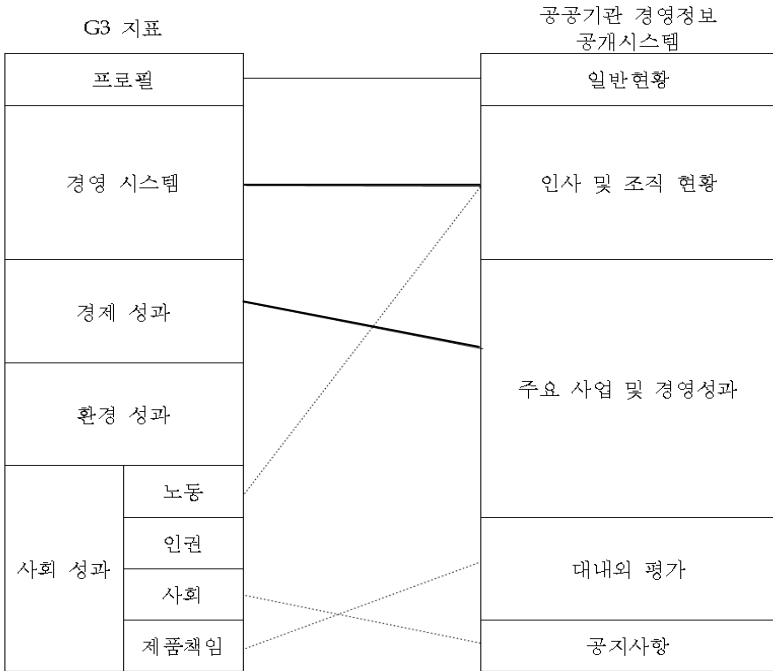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12조에 따라 주요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누구나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수 외(2010)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2009년 9월 까지 총 457건의 신문보도가 있었고 정부와 학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공시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에 GRI G3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공시 수준을 분석하려고 한다.

GRI G3의 프로필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일반현황은 유사성이 있으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일반현황은 단순 나열식이라 기관의 비전이나 목표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서술할 뿐이다. GRI G3의 경영 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인사 및 조직 현황을 비교하면 지배구조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이 보인다. 임원 임면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시를 하고 있지만 GRI G3에 비해 정보 공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경제적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상세하게 공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 재무정보만이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공시되고 있다. 환경적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는 국가 CO₂ 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전 발전자회사처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환경 정보를 미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GRI G3의 사회적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의 성과에 비해 많이 공시되어 있지 않다. 인사 및 조직 현황과 공지사향, 대내·외 평가에서 사회 성과와 유사한 공시 항목이 있지만 일부만을 공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V-10] GRI G3 지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의 관계



주: 실선은 강한 관계고 점선은 약한 관계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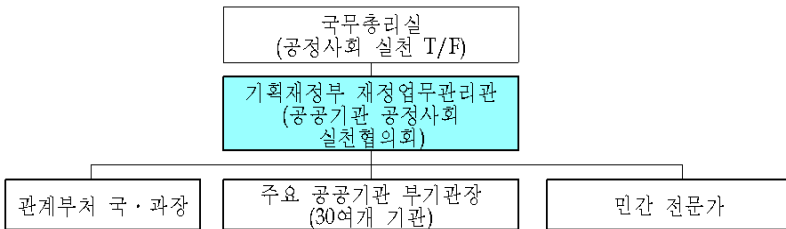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환경이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공시가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후반기 국정지표인 ‘녹색 성장’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국제적 추세를 보면 공시항목의 대상을 넓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로 핵심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데, 성과연봉제 확산·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있어 불공정거래 개선 등 동반성장 대책을 이행하고, 균등한 기회·나눔의 문화 확산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림 V-11]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자료: 기획재정부(2011) 인용

실천과제별 실적을 보면 첫째,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전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을 추진하였고, 둘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단체협약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및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였고, 셋째, 불공정거래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등으로 민간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높은 편이나 자발적 노력은 아직 부족하며, 넷째, 공공기관의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은 최근 4년간 정체상태이고, 다섯째,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민간기업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비체계적이며 단발적 행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9). 정부의 실천

과제 중에서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직결되는 것으로 첫째, 불공정 거래 개선은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 등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였고, 동반성장협약은 한전 등 4개사 외에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신규 도입하고 체결하였다. 둘째, 균등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장애인·청년인턴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나눔의 문화 확산 활동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고 사회공헌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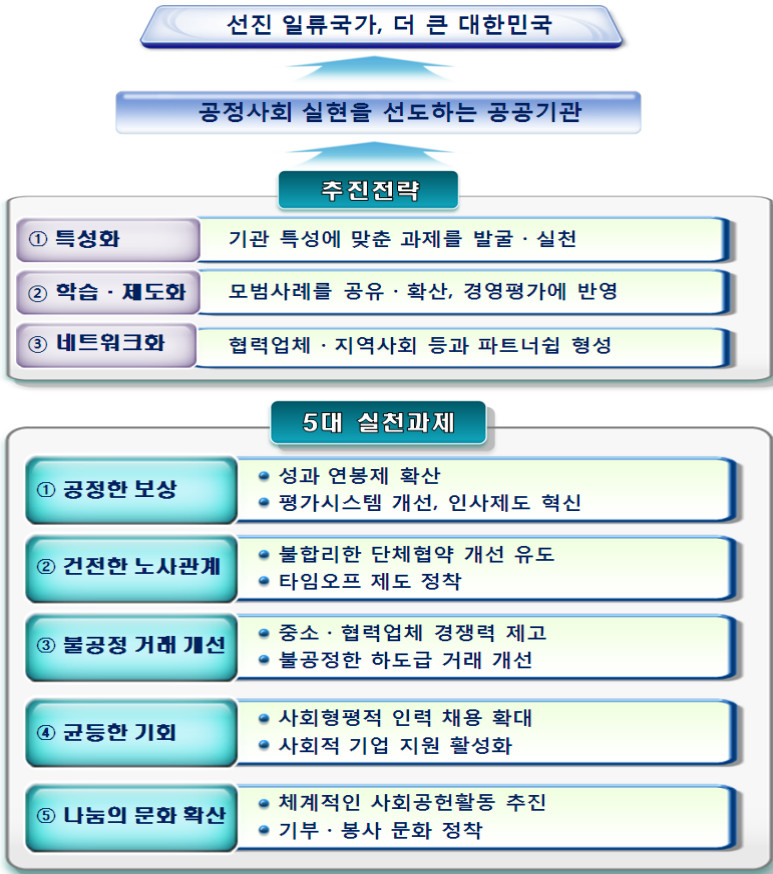
〈표 V-2〉 나눔 문화 확산 제도 현황

프로그램	2010년	2011년(11월)	증가율
사회공헌위원회	44개	76개	72.7%
직원 인센티브	53개	65개	22.6%
매칭그랜트 운영	53개	62개	16.9%
사회공헌지출액	1,785억원	2,682억원	50.2%
사회적 기업 물품용역 구매	169억원	289억원	71.0%

주: 기획재정부(2011) 인용

현 정부의 공정사회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보다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신중섭, 2011). 그런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수사례를 서로 학습하고 공유했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시혜성의 자선과 기부 활동에서 시작하여 중소기업과 협력·사회적 기업의 지원·직원의 참여 확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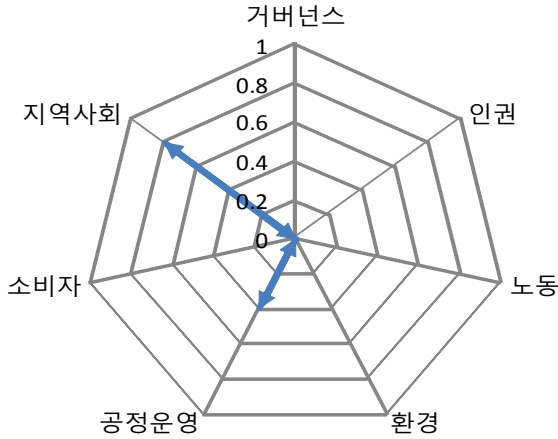
[그림 V-12] 공공기관 공정사회 추진전략



자료: 기획재정부(2011)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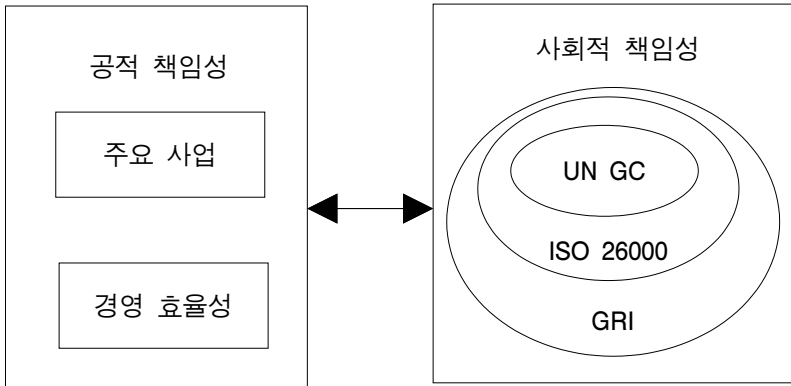
그렇지만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의 정책 방향은 ISO 26000 성과 중에 공정운영관행과,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정책 방향은 아직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V-13] 공정사회 실천협회의 정책 방향



2.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통합 모델

[그림 V-14]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통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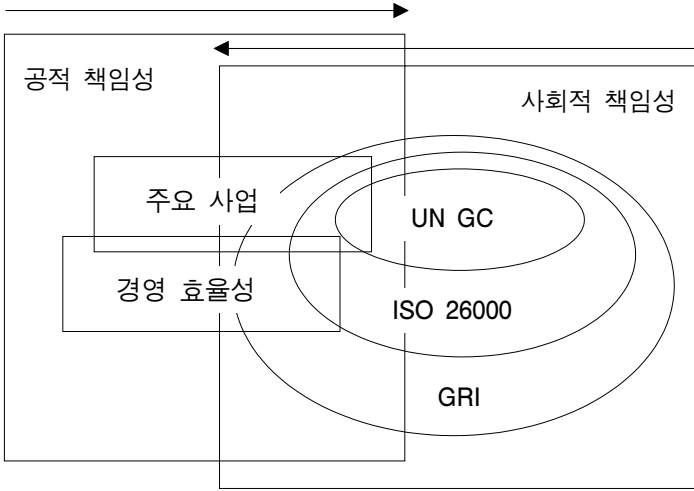


공운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경제적 성과인 주요사업과 경영

효율화에만 치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인 주요사업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며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는 경영효율화도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무시 못할 가치로 국제적인 추세나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사회적 책임 경영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없이는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시민단체와의 소통과 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소홀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주무부처하의 관계만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개선되기 어렵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절감만을 생각하여 환경오염이나 인권 침해, 근로환경 악화 등이 이루어지고 사업 수행에 따른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면 사회 후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여기서는 기존 공공기관의 경영모델을 발전시킨 공공성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수요사업과 경영효율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여 주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고려를 하는 것을 모델의 기초로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성 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공운법 개정안과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항목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겠다.

[그림 V-15]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통합 모델



위 그림에서와 같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공적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장치와 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 관리정책이 국제적인 추세인 사회적 책임성을 수용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론적·이념적 통합모형은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무성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적 요인이나 기관의 내적 요인 등에 의하여 공적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일치화 또는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은 주요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영재 외, 2010).

여기에서 개별 공공기관은 설립부터 주어진 정책적 목적을 수행함과 동시에 대리인으로서의 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며, 또한 조직으로서 환경으로부터 상호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UN Global Compact를 이행하는 것

으로부터 2010년 11월 발효된 ISO 26000을 준수하는 것, 더 나아가서 GRI 수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영능력과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공기업은 GRI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행해도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으며, 다만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적 특성과 기관의 역량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운법은 크게 목적(제1조)과 고객(제13조), 혁신지침(제15조), 경영지침(제50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의 목적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법구조적인 타당성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공운법에서 고객을 직접 소비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중에는 대국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보다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소비자를 직접 소비자에게만 한정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최종 소비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⁵⁾ 즉 공공기관의 생산재화와 용역의 공공재적 성격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기본법상 소비자보호 이외에 공운법 등 공공기관 관련법규에는 1, 2차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대표의 경영참여와 감시를 규율하는

15) 공공기관의 재화와 용역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 일반 소비자와 다른 특수성을 갖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비자도 소비자기본법 제2조 소비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공운법 등 공공기관 관련 법규 등에서 규율하는 집단성, 공익성, 강행법규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당사자간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이해관계도 존재한다(김성천, 『공기업 서비스 체계와 소비자 보호』, 1994. 참조).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공운법에 근거한 혁신지침과 경영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운법 체계에 대하여 기존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를 위한 일부 부분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고, 가치 일반기업까지 포함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 G3에 비하여 환경과 사회적 성과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정부권장정책은 ISO 26000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성이 없거나 대표성이 없는 지표가 다수다. 국제적인 표준과 비교하여 대표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단순 봉사활동에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 봉사활동이나 구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의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선 공공기관 면접조사에서 보듯이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없이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에서 기관장의 사회적

16) 지난 정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산업발전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새로운 기업규제로 받아들여 반대한 경험이 있으므로, 공공·민간부문을 불문한 새로운 지원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책임 경영이 포함된 지속가능경영의 의지와 목표·방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물론 2010년말 경영평가제도 개편에 의하여 2011년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부터 리더십과 책임경영부문의 ① 리더십(가중치 10), ② 책임경영(가중치 3), ③ 국민평가(가중치 2), ④ 사회공헌활동(가중치 5)들을 평가할 계획이다(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ISO 26000 충족률에서 공공기관은 성과보다 프로세스의 충족률이 낮았으며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책임경영에서 기관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를 얼마나 참여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안은 기존 경영평가 체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효율화와 주요사업 평가 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고, 2안은 기존 경영평가 체계와 달리 사회적 책임 활동을 따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1안과 2안 모두 리더십·전략은 동일하게 평가되나 경영효율화와 주요사업에서 차이가 있다. 1안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경영효율화에서도 평가하고 주요사업에서도 평가하게 된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를 통합하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로 통합하고 기존 측정 세부지표에 ISO 26000의 인권과 노동, 공정운영관행 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에는 기존 세부지표에 ISO 26000의 환경과 공정운영관행을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환경 경영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기본인데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재무예산 성과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평가’에서는 ISO 26000의 소비자이슈와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해 함께 평가할 수 있다. ‘주요사업’에서도 ISO 26000의 인권·노동·환경·공정운영관행·소비자이슈·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을

포함시켜 평가 가능하나 기관별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표가 있기에 차별화의 필요성이 있다.

기존 지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별개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기존 경영 모델에서 발전되었다는 인식을 주기 쉽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 성과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개별적인 성과측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도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지표에 따라 사회적 책임 성과를 묻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으며 개별 지표에서도 세부항목에 노동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세부지표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표 V-3〉 공공성 모델 평가 강화방안 제1안

평가 범주	세부 지표
리더십·전략	리더십 (사회적 책임 의지)
	책임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경영시스템과 성과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ISO 26000 인권과 노동, 공정운영관행)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ISO 26000 환경과 공정운영관행)
주요사업 (ISO 26000)	국민평가 (ISO 26000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주요사업1
	주요사업2
	주요사업3

통합형 모델인 1안과 달리 2안에서는 경영효율화와 주요사업, 사회적 책임을 따로 평가하게 된다. 기존의 경영효율화와 주요사업은 지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중치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 지표를 추가

하게 된다. 경영효율화 지표 중에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지표에서는 ISO 26000의 핵심적인 활동과 성과지표를 뽑아내서 평가할 수도 있으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을 전부 사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2안에서는 경영효율화와 주요사업, 사회적 책임을 따로 평가하기에 어떤 기관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용이하며 평가도 수월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기존 경영 모델과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고 기관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십·전략에서는 1안과 동일하게 기존 지표에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V-4〉 공공성 모델 평가 강화방안 제2안

평가 범주	세부 지표
리더십·전략	리더십(사회적 책임 의지)
	책임경영(이해관계자 참여)
경영효율화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주요사업	주요사업1
	주요사업2
	주요사업3
사회적 책임(ISO 26000)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시장성이 다르다. 공은 법상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 50%가 넘고 준정부기관은 50%가 넘지 않는다. 자체수입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독점적 권한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입을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 생존을 해야 하는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하기에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민간기업과 유사한 GRI G3나 ISO 26000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이용강제성이 강한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이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도 보았듯이 공기업보다는 준정부기관의 ISO 26000 충족률이 낮게 나오는 상황이다. 준정부기관을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기관 수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할 유인이 있기에,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는 다른 사회적 책임 성과 지표를 설정해 주고 ISO 26000 충족률 목표 수준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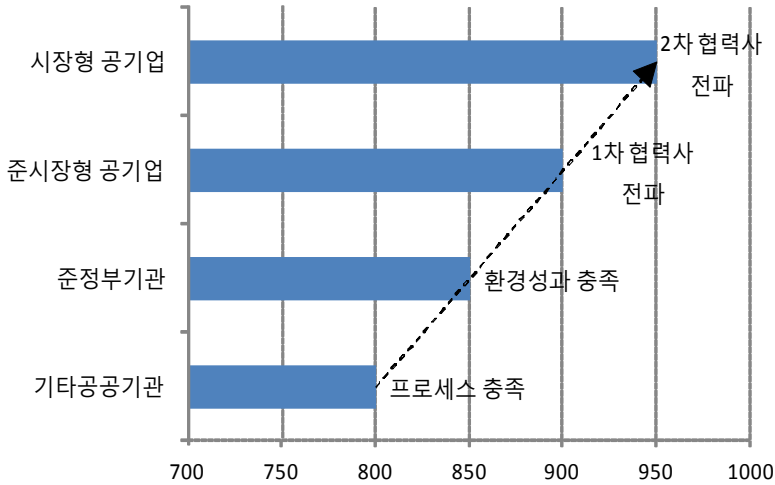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강조될 이유가 없기에 업무효율 가중치를 줄이고 주요사업에서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준정부기관 중 산업진흥형 기관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산업진흥형 준정부기관이 자금 지원 기준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게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연·기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더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에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얼마나 더 확산되게 하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형 공기업의 ISO 26000 충족률은 933점이었으므로 시장형 공기업의 ISO 26000 목표 수준은 950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950점을 맞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도 같이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충족률은 904점이었으므로 목표수준으로 900점을 제시한다. 90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 협력사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 협력사도 같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충족률이 848점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충족률은 853점이므로 준정부기관의 목표 수준을 850점으로 정할 수 있다. 85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프로세스와 환경 성과 충족률을 높이면 달성 가능하다. 기타 공공기관은 796점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목표 수준은 800점으로 할 수 있다. 800점은 구성원들만의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며 프로세스 충족률이 높으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표 V-5〉 공공기관 유형별 지속가능경영 목표 수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ISO 26000	현 수준	933	904	848	853	796
	목표 수준	950	900	850	850	800

[그림 V-16] 공공기관 유형별 ISO 26000 가이드라인



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개선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경제적 성과만이 아닌 사회적 성과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관별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UN GC 가입 여부를 공시하고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1안과 통합 공시항목을 늘리는 2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UN GC 가입여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게 되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UN GC 가입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리고 세부항목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외부 검증을 받은 보고서를 올리게 되므로 자료의 신뢰도도 얻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게 된다. 대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자료가 입력되지 않기에 언론이나 학계에서 활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성과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소규모 공공기관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보고서 발간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영재, 윤태범(2010)에 의하면, 다수의 공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기에 시장형 공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격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준정부기관은 아직 발간 경험이 적기에 3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을 검토하고 정원이 500명 미만인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보고서 발간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V-6〉 공공기관 유형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가이드라인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주기	1년	2년	3년	3년(중소형 기관 선택)	선택

통합 공시항목에 사회적 성과를 포함시키게 되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언론이나 학계에서 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공시항목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시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외부 검증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표 V-7〉 사회적 책임 성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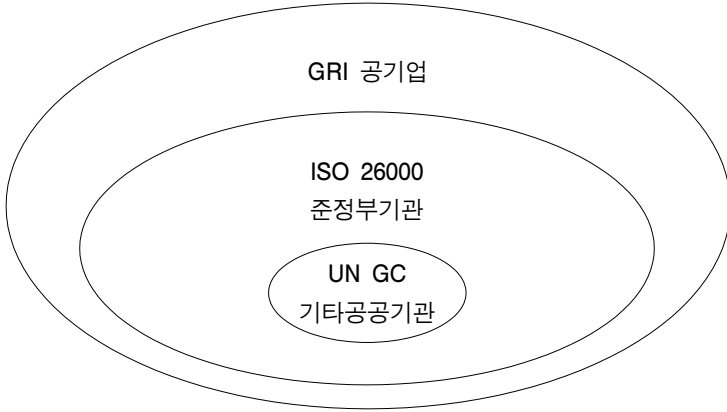
항목	세분류
I.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II. 인사 및 조직 현황	2. 임직원수
	3. 임원현황
	4. 신규채용현황
	5. 임원연봉
	6. 직원평균보수
	7. 기관장업무추진비
	8. 복리후생비
	9. 임원 국외출장정보
	10. 노동조합 관련현황
	11. 취업규칙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3. 요약손익계산서	
14. 수입·지출현황	
15. 주요사업	
16. 공공기관 투자집행현황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19. 투자 및 출자현황	
20. 연간 출연 및 증여	
21. 경영부담비용 추계	
22. 납세정보현황	
IV. 대내외 평가	23. 국회 지적사항
	24. 감사원 지적사항
	25. 경영실적 평가정보
	26. 경영평가 지적사항
	27.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8.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 실적평가결과
	29.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
V. 사회적 책임 성과	30. 인권 성과
	31. 노동 성과
	32. 환경 성과
	33. 공정운영관행 성과
	34. 소비자이슈 성과
	35. 지역사회참여와발전 성과

〈표 V-7〉 사회적 책임 성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계속)

항목	세분류
VI. 공지사항	36. 창의경영사례
	37. 채용정보
	38. 입찰정보
	39. 연구보고서
	40. 기타정보공개

통합공시에 사회적 책임성과를 공시하게 된다면 공공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GRI G3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공기업과 정원 50명 미만의 기타공공기관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은 좀 더 자세히 공시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미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GRI G3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항목을 정하고,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ISO 26000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항목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UN GC의 10가지 항목을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V-17] 공공기관 유형별 공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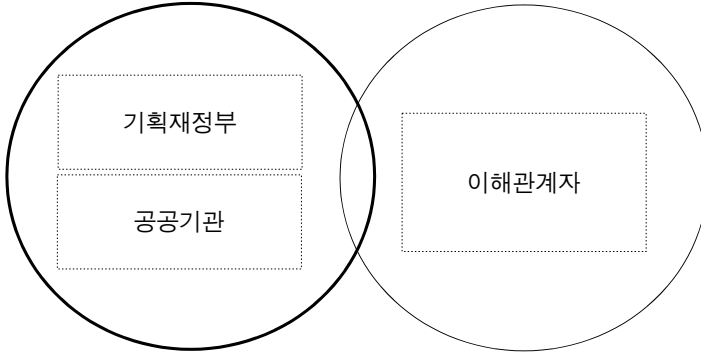


라.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정책 방향

현재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의사소통이 없기에 파악이 어렵다. 민간기업 사례와 전문가 강연만으로는 공정사회 실천협의회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정사회 실천협의회가 시작이 된 지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이해관계자를 한 번에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소비자부터 시작하여 관련된 국민권의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 건설협회와 같은 산업별 협회 대표,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2차 협력사 대표, 시민단체, 지역사회 대표, 근로자 대표, 언론, 학계 등으로 참가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단계적인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V-18]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구성



〈표 V-8〉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단계별 이해관계자 참여단계안

단계	이해관계자	예시
1단계	정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
	1차 협력사	산업별 협회 대표, 전경련 등
2단계	2차 협력사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인권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3단계	지역사회	지역사회 대표
	근로자	공공운수노조 대표
	언론	신문사 논설위원, 방송사 기자
	학계	산업별 CSR 연구자

Ⅵ. 결 론

최근 정부의 국정지표가 공정사회로, 공생발전으로 전환되고 있고, 언론이나 서점가에서는 공정성, 정의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경제위기에서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정의의 개선 문제는 이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정부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일국의 사회문제에서 국제적 이슈가 된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부처와 공직자들은 전통적으로 공적 책무성을 통제하면 되고 민간기업과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혼합조직이면서 다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복대리인 문제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부터 경영평가,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을 통해 직·간접적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많은 관리 정책과 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모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05년 이후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경영공시 등의 흐름을 보면 일면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조직

으로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은 단지 국민에 대한 소극적인 공적 책무성만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응성이 강한 공적 책무성이나 적극적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확대가 공공기관에 씌워져 있는 방만경영의 오명을 벗고 공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것인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가치들이 통합되고 수렴되고 있지만 국가적·사회적·지역적 여건과 기관의 사업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경영이 모든 가치를 다 충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국민 모두가 국민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공공서비스를 감안한다면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조화·균형·통합적 접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추구하기 위한 경영 전략과 방향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런 자율적 경영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연구가 처음 의도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유형·조직 규모·산업 특성별 고유의 지속가능경영 모델이나 측정 방안을 만들어 내는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도입하기 시작한 ISO 26000 체크리스트를 공공기관용으로 완벽하게 전환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는 시범적 조사에 머물러 있고,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로 아직 확장되지 못했기에 이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기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토 보고서』, 2010.
- 금명기,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인지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2010.
-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기업·중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2010.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자료집」, 2011. 9; 2011. 12.
- 김성천, 「공기업 서비스 체계와 소비자 보호」, 소비자정책보고서, 한국소비자원, 1994.
- 김진수·허경선·김태훈·문창오,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라영재·윤태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한계』, 한국조세연구원, 2010.
- 라영재, 『공공기관 성과평가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 미발간, 2011.
- 라영재 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교육자료집』, 2011.
- 박 준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CEO Information』, 제710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2007.
- 에코프론티어,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2006.
- 유 훈·배용수·이원희, 『공기업론』, 법문사, 2010.
-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회보』, 제44권 제2호, 2010.

- 이동원, 「사회적 책임의 기준에 관한 연구 - ISO 26000 Committee Draft를 중심으로」, 2009.
- 이종서, 「유럽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과 전망」, 2010.
- 이종걸, 「공공기관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 『2011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011.
- 한국표준협회,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0.
- 한국생산성본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Korea Guide Book version 2.1」, 2009.
- BSC연구회, 「한국형 BSC 성공사례 11」, 삼성경제연구소, 2006.
- Adriana R., “Balanced Scorecard Revisited: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spective,” 2006.
- AEP, “2011 American Electric Power Corporate Accountability Report,” 2011.
- Beven. M., *Public Accountability*, 2005.
- Ferlie 외.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Management*, OXFORD Univ. Press, 2005.
- EFQM, “EFQM Transition Guide-How to upgrade to the EFQM Excellence Model,” 2010.
- Elkington, J. “The Triple Bottom Line”, in M. J. Epstein and K. O. Hanson (eds.), *The Accountable Corporaton*, vol. 3, Westport, CT., 2006.
- Eptein, Marc j. *Making sustainability work: best practices in managing and measuring corporat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British Library Cataloguing in Pub, 2008.
- Eptein, Marc j. and M. J. Roy. “Strateg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rojects in SMEs,”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vol. 9(3), 2000.

- Guerra-Lopez, Ingrid J, *Performance Evaluation - Proven Approaches for Improving Progra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ssey-Bass, 2008.
- Jones, Leroy P. (eds), *Public Enterprise in Less-developed Countries*, Cambridge Univ. Press, 2009.
- Niven, Paul R., *Balanced Scorecard Step-by-step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gencies*, John Wiley & Sons, 심일PwC컨설팅 율김, 『정부와 공공부문 BSC: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법론』, SIGMAINSIGHT, 2003.
- Radin, Berly A. *Challenging the Performance Movement*,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 Werther, William B. and David Chandler, *Strateg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keholders in a global environment*, SAGE Pub, 2011.
- GRI,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tistics Publication year 2010," 2011.
- Stuart Cooper,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 Stakeholder Approach*, 최준혁 외 율김, 『스тей크 홀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UN,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 Anniversary Edition," UN GCO, NY, 2010.

〈부록 1〉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성과1) 부문

- 1) 원래는 프로세스를 먼저 물어보고 성과에 대해 질문해야 하나 공공기관 중에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기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프로세스의 난이도가 높은 설문문항을 답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먼저 답하는 것이 응답 기관 입장에서 수월하다고 판단하여 성과부터 질문하였다.

성과 체크리스트



1. 기관 거버넌스

기관²⁾ 거버넌스는 기관이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거버넌스는 공식, 비공식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데, 기관 거버넌스는 모든 기관의 핵심 기능이며 기관 내 의사결정의 프레임워크이다.

거버넌스 시스템은 기관 규모와 유형, 환경,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 기관 거버넌스는 기관 스스로가 기관의 결정과 활동의 영향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통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관 거버넌스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인 동시에 다른 핵심 주제에 대한 기관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사회적 책임 원칙을 의사결정과 실행에 통합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효율적인 기관 거버넌스에 중요하다. 리더십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기관 문화 내로 통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2) 이 조사에서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직이라는 표현 대신 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예	아니오
9. 기관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함		
10. 검토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기관 전반에 변화를 의사소통함		

- A. 5~10개 해당 B. 1~4개 해당
C. 안 하고 있음

4. 기관은 사회적 책임 목표와 성과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가?
A. 예 B. 아니오

5.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A. 예 B. 아니오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4		
B	2		
C	0		
합계			

19. 기관은 인권 고충처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당사자가 간섭할 수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		
2. 피해당사자가 고충처리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3. 처리절차와 일정, 결과 진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4. 피해당사자가 고충처리에 필요한 정보, 조언을 이용할 수 있음		
5. 처리결과와 구제방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함		
6. 고충처리 프로세스와 결과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함		
7. 양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대화와 중재에 기반함		

- A. 4~7개 해당 B. 1~3개 해당
C. 안 하고 있음

20. 기관은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A. 예 B. 아니오

21. 기관은 취약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진하고 있는가?

취약그룹 예: 여성, 여자어린이, 장애인, 아동, 토착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고령자, 난민, 빈곤층, 문맹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환자 등

- A. 예 B. 아니오

2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차별금지 규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인종, 피부색		
2. 성별		
3. 종교		
4. 출신국가와 사회 출신성분		
5. 정치적 견해		
6. 나이		
7. 장애		
8. 결혼 여부		
9. 가족 상태		
10. 개인의 성(性)취향 (동성 여부)		
11. 건강상태(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		

A. 5~11개 해당

B. 1~4개 해당

C. 안 하고 있음

23 기관은 임직원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규정이나 정책이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24 기관은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나

정책이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34. 기관은 기관의 활동이나 영향권 내에 불법적인 아동노동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가?

구 분	선진국	개도국
일상 업무	최소 15세	최고 14세
위험한 업무	18세	18세
가벼운 업무	13세	12세

A. 예

B. 아니오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4		
B	2		
C	0		
V	계산하지 않음		
합계			

37. 기관은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실행하는가?
- A.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임시 고용을 자제하고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지 않음
 - B.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지만 형식적이어서 임시 고용이 자주 있음
 - C.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38. 기관은 임시직보다는 정규직 채용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 A. 예
 - B. 아니오
39. 기관은 자의적·차별적 해고 관례를 제거하고 있는가?
- A. 예
 - B. 아니오
40. 기관은 근로자의 신상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가?
- A. 예
 - B. 아니오
41. 기관의 근로조건은 국내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A. 예
 - B. 아니오

46. 기관의 복지 운영 수준은 어떠한가?

	예	아니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2.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4. 우리사주제도		
5. 퇴직연금제도(DB, DC) 운영		
6. 직장보육시설 운영		
7. 체육시설 운영		
8. 종합검진 실시		
9. 질병 치료비 지원		
10. 상해보험 가입		
11.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12. 탄력 근무제도 운영		
13. 육아휴직제도 운영		
14.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창업 등의 퇴직 프로그램 운영		

- A. 7~14개 해당 B. 1~6개 해당
 C. 실시하지 않음

47. 기관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 동일가치 노동: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함

- A. 예 B. 아니오

60. 기관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기관 내에 상담요원 상주		
2. 외부 전문기관 무료 이용 기회 제공		
3. 고충처리 상담센터 운영		
4. 병가 인정		
5. 업무변경·조정		

- A. 3~5개 해당 B. 1~2개 해당
C. 실시하지 않음

61. 최근 3년 동안 기관 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A. 아니오 B. 예
V. 해당사항 없음

62. 기관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는 어떤 경향인가?

- A. 과거 대비 하락세 B. 과거 유사 수준
C. 과거 대비 상승세 V. 해당사항 없음

63. 기관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예	아니오
1. 보건과 안전 관련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함		
2. 피고용인의 안전 절차 준수를 확인함		
3. 안전시설 구축 및 안전장비를 제공함		
4. 사고를 조사하고 기록함		
5. 안전교육을 실시함		
6. 작업장 유해요인을 제거함		
7. 보건안전시스템을 구축함		

- A. 4~7개 해당 B. 1~3개 해당
 C. 안 하고 있음 V. 해당사항 없음

64. 기관은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A. 예 B. 아니오

65. 기관은 개인의 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 A. 예 B. 아니오

66. 기관은 개인의 역량 제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인적 개발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		
2. 기능개발, 훈련, 견습제도와 승진 기회를 제공함		
3.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훈련과 상담을 제공함		
4. 노사합동의 건강안녕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함		

- A. 3~4개 해당 B. 1~2개 해당
 C.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4		
B	2		
C	0		
V	계산하지 않음		
합계			

73. 기관의 화학물질 관리 수준은 어떠한가?

	예	아니오
1. 국내법에서 정의한 금지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사용을 피함		
2. 국제협정에 수록된 원치 않는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그 사용을 피함		
3. 과학기구나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그 사용을 피함		

- A. 3개 해당 B. 1~2개 해당
V. 해당사항 없음

74. 기관의 최근 3년간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 A. 하락세 B. 유사 수준
C. 상승세 또는 측정하지 않음

75. 기관은 환경 사고예방과 준비,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76. 기관은 위험 식별, 평가 및 의사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87. 기관은 운영상의 용수를 보호하고 영향권 내의 용수 보호를 촉진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88.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근원을 식별하고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89. 기관은 중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 기록, 보고하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90.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고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91. 기관의 최근 3년간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어떤 추세인가?

A. 하락세 B. 유사 수준

C. 상승세 V. 해당사항 없음

99. 기관의 환경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A. 기관 구성원, 협력사 등 공급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 B.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 C. 실시하지 않음

100. 기관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A. 예
- B. 아니오
- V. 해당사항 없음

101. 기관의 자연서식지 보호 수준은 어떠한가?

	예	아니오
1. 자연생태계 손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후에 생태계를 복구함		
2. 토지, 수자원과 생태계 관리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		
3. 고유종,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존함		
4. 기관의 토지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5. 기관의 건물개발과 건축 시 자연서식지를 보호함		
6. 야생동물과 서식지를 중시하고 보호함		
7. 재생가능한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이용 비중을 늘림		
8. 환경영향 비용을 내부화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참여함		

- A. 4~8개 해당
- B. 1~3개 해당
- C.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4		
B	2		
C	0		
V	계산하지 않음		
합계			

117. 기관의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수준은 어떠한가?

	예	아니오
1. 구매, 유통, 계약정책에 보건, 안전, 윤리, 사회, 환경, 성평등 기준을 통합함		
2. 다른 기관이 이와 유사 정책을 채택할 것을 장려함		
3. 기관과 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 실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		
4. 인식제고, 우수사례 및 기술구축, 역량 구축 등을 지원함		
5. 기관과 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인식 제고에 적극 참여함		
6. 가치사슬 내에서 기관의 역량을 강화		

- A. 3~6개 해당 B. 1~2개 해당
C. 안 하고 있음

118. 기관은 재산권과 전통 지식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재산권이란 물리적 재산과 지적 재산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와 기타 실물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 저작권, 특허권, 펀드, 도덕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말함. 보다 광범위하게는 토착민 같은 특정 집단의 전통 지식이나 근로자 등의 지적 재산권도 포함함

- A. 예 B. 아니오

123. 기관은 최근 3년간 부당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A. 없음 B. 1~2회
C. 3회 이상 V. 해당사항 없음

124. 기관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 외에 세금, 조건과 상태, 부대비용과 배송비용을 공개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25. 기관은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 정확,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26. 기관은 자신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하지 않는가?

예: 법적 책임의 불공정한 배제, 가격과 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권리, 지급불능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 등

-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27. 기관은 최근 3년간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A. 없음 B. 1~2회
C. 3회 이상 V. 해당사항 없음

135. 기관은 소비자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36. 기관은 제품의 기대수명에 따른 적합한 보증을 제공하는가?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37. 기관은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38. 기관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39. 기관은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가?
 A. 예 B. 아니오 V. 해당사항 없음
140.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대비 대책 또는 유출 후 재발방지 대책
 을 수립하였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응답)
 A. 예 B. 아니오
141. 기관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는가?

필수 서비스: 전기, 가스, 식수, 하수처리, 배수, 오수, 통신 등
--

- A. 서비스 중단 전에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
 B. 이용 요금 미지불시 서비스를 중단
 V. 해당사항 없음

160. 최근 3년간 기관의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은 과거 대비 어떤 추세인가?

- A. 상승세
- B. 과거 유사
- C. 하락세 또는 실시하지 않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4		
B	2		
C	0		
V	계산하지 않음		
합계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프로세스 부문**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1. 사회적 책임 인식

1. CEO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정의 : 기관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지는 기관의 책임	예	아니오
1. 사회의 보건과 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2.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		
3. 해당되는 법을 준수하며 국제행동규범에 일치		
4. 기관 전반에 걸쳐 통합하며 기관의 관계(영향권 내의 기관 활동) 속에서 실행		

- A. 4개 해당 B. 3개 해당
 C. 2개 해당 D. 1개 해당 E. 모르고 있음

2. 기관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 A. 임원과 전 구성원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B. 전담 기관과 중간 관리자 이상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 C. 전담 기관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 D. 구성원 일부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 E.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없다.

3. 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A. 기관의 지속가능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 B. 기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 C. 기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이다.
- D. 기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긴 하나 투입자원 대비 비효율적이다.
- E. 기관 발전과 상관관계가 없는 요소이다.

4. 기관은 업무 관련 사회적 책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업무분야별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2. 요구사항 파악 주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3. 파악한 요구사항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		
4. 업무에 실제 활용하고 있음		

- A. 4개 해당
- B. 3개 해당
- C. 2개 해당
- D. 1개 해당
- E. 안 하고 있음

5. 기관은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경영철학과 방침에 반영하고 있음		
2. 전담기관을 설치함		
3. 경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음		
4. CEO가 업무를 직접 관장함		
5. 인식 제고 활동에 직접 참여함		

A. 4개 해당

B. 3개 해당

C. 2개 해당

D. 1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2.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6.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가?

1. 주주/투자자 2. 근로자/노조 3. 협력사/공급자 파트너 4. 소비자/고객 5. NGO/지역사회/미래세대

- A. 5번까지 B. 4번까지
C. 3번까지 D. 2번까지 E. 1번까지

7. 기관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식별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기관이 누구에게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지를 파악		
2. 누가 기관의 결정이나 활동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		
3. 누가 기관의 결정이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파악		
4. 유사 사항이 다루어질 때 누가 과거에 관여했는지를 파악		
5. 누가 특정 영향을 다루는 기관을 도울 수 있는지를 파악		
6. 누가 기관의 책임을 충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7.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를 파악		
8. 누가 가치사슬* 내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 * :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제공하거나 받는 전체 연속된 활동 또는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제공하는 당사자: 공급자, 하청업체 근로자, 계약자 및 기타 · 가치 제공받는 당사자: 고객, 소비자, 의뢰인, 회원 및 기타 이용자 		
--	--	--

- A. 7~8개 해당 B. 5~6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8. 기관은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예	아니오
1. 기관의 경제 성과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음		
2. 기관의 사회 성과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음		
3. 기관의 환경 성과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음		
4. 미래에 기관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것임		

- A. 4개 해당 B. 3개 해당 C. 2개 해당
 D. 1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9. 기관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어느 수준에서 실시하는가?

- A. 전사적 차원 B. 부서 차원 C. 담당자 차원
 D. 필요시 E. 안 하고 있음

10. 기관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기관의 결과를 잘 이해하도록 함		
2. 긍정 영향은 늘리고 부정 영향은 줄여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게 함		
3. 기관의 사회적 책임 주장이 믿을만한지를 결정함		
4. 기관이 성과를 제고하도록 검토를 지원함		
5. 기관, 사회,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을 조정함		
6.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대한 기관의 책임 관계를 다룸		
7. 기관의 지속적 학습에 기여함		
8. 법적 의무사항을 실행함		
9. 기관과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상충 이해관계를 다룸		
10. 기관의 결정과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11. 상호호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함		

- A. 10~11개 해당 B. 7~9개 해당
 C. 4~6개 해당 D. 1~3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11. 이해관계자는 다음 중 누구의 의사결정 단계에 영향을 주는가?

- A. CEO B. 임원
 C. 부서장 D. 담당자
 E.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함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3. 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12. 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고 있는가?

1. 조직 거버넌스 2. 인권 3. 노동관행 4. 환경 5. 공정운영관행 6. 소비자 이슈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A. 7개 모두 해당 B. 5~6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13.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예	아니오
1. 기관의 유형, 목적, 운영의 본질 및 규모		
2. 기관이 운영되는 장소(사회적 책임 관련 법, 지역의 사회·환경·경제적 특성포함)		
3.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관의 역사적 성과 정보		
4. 계약직을 포함한 기관의 인력이나 피고용인의 특성		
5.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 기관(업종 기관이 한 사회적 책임 활동 포함)		
6. 기관의 사명, 비전, 가치, 원칙 및 행동강령		
7.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8. 기관 내 의사결정 구조와 본질		
9. 기관의 가치사슬		

- A. 9개 모두 해당 B. 6~8개 해당 C. 3~5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14. 기관은 기관의 핵심 주제와 쟁점을 분석할 때, 사회적 책임 원칙을 알고 적용하는가?

	예	아니오
1. 설명책임 : 기관은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책임을 짐		
2. 투명성 : 기관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결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함		
3. 윤리적 행동 : 기관은 윤리적으로 행동함		
4. 이해관계자 이익 존중 :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고려하며 대응함		
5. 법치 존중 : 기관은 법치 존중을 강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임		
6. 국제행동규범 존중 : 기관은 법치 존중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행동규범을 존중함		
7. 인권 존중 : 기관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인식함		

- A. 7개 모두 해당 B. 5~6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4.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15. 기관은 실사*를 할 때,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역의 맥락을 고려하는가?

*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나 기관 활동의 전 과정에 걸친 기관의 결정과 활동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식별하려는 포괄적인 사전 대책 강구 프로세스임.

실사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기관이 연루될 수도 있는 인권이나 다른 위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는 것임

	예	아니오
1. 기관 활동의 실제적 영향		
2. 기관 활동의 잠재적 영향		
3. 기관과 아주 밀접한 다른 독립체의 활동이 주는 잠재적 부정적 결과		
4. 기관과 아주 밀접한 다른 사람의 활동이 주는 잠재적 부정적 결과		

A. 4개 해당

B. 3개 해당

C. 2개 해당

D. 1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16. 기관은 실사 프로세스에 다음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핵심 주제와 관련된 기관 정책		
2. 기관의 기존 활동과 제안 활동이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		
3. 기관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 핵심 주제를 통합하는 방법		
4. 우선순위 설정과 접근에서 시간을 두고 성과를 추적하는 방법		
5. 기관의 결정과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활동		

- A. 5개 모두 해당 B. 4개 해당 C. 3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17.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관련성 있는 사회적 책임 쟁점을 정하는가?

	예	아니오
1. 기관 활동의 모든 범위의 목록을 작성함		
2. 이해관계자를 식별함		
3. 기관 활동과 영향권 내의 기관 활동을 식별함		
4.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서 기관과 영향권/가치 사슬 내의 다른 기관들이 이런 활동 활동을 수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핵심 주제와 쟁점을 결정함		
5. 기관의 결정과 활동이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검토		
6.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책임 쟁점이 기관의 결정, 활동 및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7. 일상/비일상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쟁점을 식별함		

- A. 7개 모두 해당 B. 5~6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20. 기관의 사회적 책임 쟁점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하는가?
- A.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식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한다.
 - B. 전담 기관과 관련 임원이 결정한다.
 - C. 전담 기관과 관련 부서장이 결정한다.
 - D. 관련 담당자가 결정한다.
 - E.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5. 실행

21. 기관은 사회적 책임 인식 제고와 역량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전 구성원의 의지와 이해를 구함		
2. 기관 임원진이 의지를 표명함		
3. 기관의 기존 가치와 문화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함		
4. 새로운 접근방식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동기부여를 촉진함		
5. 사회적 책임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개선함		
6. 사회적 책임 교육을 실시함		

- A. 6개 모두 해당 B. 4~5개 해당 C. 3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22. 기관은 사회적 책임 실행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사회적 책임을 기관의 포부, 비전에 포함		
2. 사회적 책임의 중요 요소에 대한 언급을 기관의 목적, 사명선언서에 포함		
3.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의지를 구체화한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약을 채택		
4. 사회적 책임을 시스템, 정책, 프로세스, 결정에 통합해 전략 요소로 포함		
5. 핵심주제와 쟁점 우선순위를 전략, 프로세스, 시의성과 함께 기관 목표로 전환		

- A. 5개 해당 B. 4개 해당 C. 3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23. 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기관 내에 통합하는가?

	예	아니오
1. 사회적 책임 원칙을 기관의 거버넌스에 적용함		
2. 사회적 책임 원칙을 기관 구조와 문화, 가치에 반영함		
3.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절차와 프로세스를 검토함		
4. 핵심 주제 관련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향을 모니터링함		
5. 신규 사업 관련 결정 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6. 필요한 자원과 계획을 고려함		

- A. 6개 모두 해당 B. 4~5개 해당 C. 3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24. 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기존 경영관행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이를 다루고 있음을 보장		
2. 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식별		
3. 관련 부서나 그룹을 설립		
4. 기관을 위한 활동을 할 때 사회적 책임을 고려		
5. 구매, 투자, 인적자원관리 및 기타 기관 기능에 사회적 책임을 통합		

- A. 5개 모두 해당 B. 4개 해당 C. 3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6. 의사소통

25. 기관은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책임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함		
2.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실행함		
3.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꾸준히 유지함		
4.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에 대응함		

- A. 4개 해당 B. 3개 해당
 C. 2개 해당 D. 1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26. 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 활동을 보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 사회적 책임 핵심 주제와 관련 쟁점에 대한 목표		
2. 이해관계자 참여 시기와 방법		
3. 사회적 책임 운영 성과, 제품 및 서비스		
4. 성과의 부족한 점과 이에 대한 처리방법		
5. 쟁점의 결정 방식과 처리방법		

- A. 5개 모두 해당 B. 4개 해당
 C. 3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27. 기관의 사회적 책임 정보 제공의 수준은 어떠한가?

	예	아니오
1.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활동과 영향을 다룸		
2. 이해관계자들이 언어와 데이터 표현방식을 이해할 수 있음		
3.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대응함		
4.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며 상세히 제공함		
5.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부정적인 정보도 생략하지 않음		
6. 해당하는 기간을 명기하고 시기가 오래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7. 특정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		

- A. 7개 모두 해당 B. 5~6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28. 기관은 사회적 책임 의사소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예	아니오
1. 기관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함		
2. 기관의 사회적 책임 원칙 존중을 증명함		
3.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조성을 지원함		
4.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법과 요구사항에 부응함		
5.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기대에 대응하는지를 보여줌		
6. 기관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7.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함		
8. 기관 간 성과 비교를 쉽게 함		
9. 기관의 명성을 제고함		

- A. 8~9개 해당 B. 6~7개 해당 C. 4~5개 해당
 D. 1~3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7. 검 증

29. 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예	아니오
1.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		
2.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함		
3. 특정 쟁점 관련 인증을 획득함(예: 제품안전, 프로세스 인증, 환경, 노동 등)		
4. 독립당사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위원회를 활용함		
5. 관련 협회에 가입함		
6. 기관의 영향과 관련한 의지를 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		
7. 성과를 평가하고 진척사항과 부족한 점을 보고함		

- A. 6~7개 해당 B. 4~5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30.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 보고서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가?

	예	아니오
1. 시계열로 비교 또는 타 기관의 보고서와 비교함		
2. 주제가 생략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함		
3.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함		

4. 독립된 검증 프로세스를 실시함		
5. 검증 의견서를 보고서 내에 통합 발행함		
6. 이해관계자 참여 및 요구에 대응함		
7. 정보의 종류와 형태를 타인의 검증이 쉽도록 제 공함		
8. 외부 기관의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보고함		

- A. 7~8개 해당 B. 5~6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31.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가?

	예	아니오
1.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논의		
2. 서면 정보 제공		
3.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을 개최		
4. 공식 불평처리 절차		
5. 알선, 중재 절차		
6. 부정행위 보고 시스템		
7. 기타 고충 해결 절차		

- A. 7개 모두 해당 B. 5~6개 해당 C. 3~4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8. 개 선

32.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가?

	예	아니오
1. 주기적 검토		
2. 벤치마킹		
3. 이해관계자 피드백 입수		
4. 타 기관의 활동과 비교		
5. 지표에 의한 측정		
6. 인터뷰, 관찰 및 행동과 의지를 평가하는 기타 기법		

- A. 6개 모두 해당 B. 4~5개 해당 C. 3개 해당
 D. 1~2개 해당 E. 안 하고 있음

33. 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 성과를 모니터링할 때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가?

- A.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B. 중요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C.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D. 필요 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E. 지표를 활용하지 않는다.

34. 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 성과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있는가?
- A. 모든 미흡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
 - B. 중요한 일부 미흡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
 - C. 일부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
 - D. 개선 계획은 있으나 사정상 개선조치를 하지 못했다.
 - E. 개선 계획이 없다.
35. 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 성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A. 수집·관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고 전 구성원이 준수하고 있다.
 - B. 수집·관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고 일부 구성원이 준수하고 있다.
 - C. 수집·관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성원이 준수하고 있다.
 - D. 수집·관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 시 정한다.
 - E. 수집·관리 절차가 없다.
36. 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 성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있는가?
- A. 전 임직원에게 반영하고 있다.
 - B. 전담기관과 관련 임원에게 반영하고 있다.
 - C. 전담기관과 관련 부서장에게 반영하고 있다.
 - D. 전담기관에게 반영하고 있다.
 - E. 반영하지 않는다.

■ 응답결과

단계	점수	응답수	소계
A	10		
B	8		
C	6		
D	4		
E	0		
합계			

〈부록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표 부록-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p>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p>	<p>제1조(목적) _____ _____ _____ <u>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① _____ _____ <u>직·간접</u> _____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p>② _____ <u>직·간접 서비스를</u> _____ _____ <u>최종적으로 제공받는</u></p>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지속가능경영을 -----

제50조(경영지침)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 사회적 책임 경영을 -----

<국문 요약>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라영재

공공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정, 지배구조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시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제적, 정책적 역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목표를 공생발전으로 설정한 이후 정책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 260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ISO 26000 이행수준 조사결과 평균 82.88%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여 시장형 공기업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타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시장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에 민감하고 정부의 사업을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이 낮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른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조직 규모가 클수록 높은 득점률을 보였고 조직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규모에 따라 득점률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모델 개발 시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별 공공기관의 이행수준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는 각각 '공정운영 관행'과 '소비자 이슈', '인권', '노동' 지표와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이지만 사업관리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의 중요 공공기관에서 응답율이 낮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SO 26000 이행수준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대표성 있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선정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공공기관 개별 면접 조사 결과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주요 요인 또는 동기로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추진과 의지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접 조사 결과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기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력사와의 인권을 실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계약조건에 넣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운법에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가 균형적으로 평가받고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항목의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에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le Level and Model Development

Ra, Young Jae

According to increasing in size and influence of public institutions, the government pushes various policies for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not only economic and political role, but also a diversity of social responsibility. Lee Myung-bak government especially has set ecosystemic development in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and then its policy has been strengthened. However,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has not been confirmed whether what level. In this study, we measured sustainable management of country-level public institutions considerably based on ISO 26000.

Public institutions' ISO 26000 implementation level was high(82.88%). However, it depends on the type of situations. The highest score market-based SOE(State-owned enterprise), the lowest score other public institutions. Analysis based on a scale of public institutions was resulted that also, larger size of the organizations were scored high and smaller organizations were scored low.

Therefore, the government of would-sustainability model considers public institutions' type and size in order to set up a guideline.

ISO 26000 implementation level analysis could be limited, thus we interviewed with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multiple stakeholders. Personal interview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will of directors to promote sustainability. Interest of the competent ministries was also a major factor. Because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focused on the public agency's major business and economic efficiency,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institutions. For example, human rights due diligence with partners need to put the terms of the agre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quire public agencies of private companies because of not using having legal grounds. Having legal grounds to require public agencies to private companies is difficult.

In order to support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by the following policies.

First, government and parliament need to revise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basi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Second, public institution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evaluated in balance, so the system of management evaluation would be reorganized.

Third, the government might extend the items of public disclosure in the public institution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ourth, various stakeholder groups migh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uncil of public institutions for fair society”.

〈著者略歷〉

라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박사
협성대 도시행정학 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하태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홍영주 한국조세연구원 인턴연구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2012년 3월 23일 인쇄
2012년 3월 30일 발행

저 자 라영재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3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주)정인 I&D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79-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0,000원

